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701-01

수탁보고 2019-18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이정림·김희선·이재희·구자연·엄지원·박규희·서보림·송채원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2701-01

수탁보고 2019-18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연구책임자 **이 정 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김 희 선** (인제대학교일산백병원 교수)
 이 재 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구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원)
 박 규 희 (고려대학교안산병원 교수)
 서 보 림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송 채 원 (육아정책연구소 위촉연구원)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2701-01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발 행 일 2019년 11월

발 행 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전 화 044) 202-2118

팩 스 044) 202-3910

인쇄처 (주)승립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1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백 선 희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5
3. 연구의 범위 및 특성	8
II.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 개발 배경 및 관련 법령	11
1.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배경	13
2.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 관련 법령	17
III.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29
1.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31
2.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원칙	33
3. 델파이 조사 결과	36
4. 평가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및 수정내역	53
IV. 산후조리원 교육자료 개발	65
1. 교육자료 콘텐츠 개요 및 내용 구성	67
2. 교육자료 개발 과정	68
3. 교육자료 예시	76
V. 향후 활용 방안	81
1.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활용 방향	83
2.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활용 방안	84
참고문헌	86
부록	87
1. 2019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	89



표 목차

〈표 I-2-1〉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6
〈표 I-2-2〉 산후조리원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7
〈표 II-1-1〉 모자보건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03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14
〈표 II-1-2〉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	14
〈표 II-1-3〉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역	15
〈표 II-1-4〉 산후조리원 평가 조항(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16
〈표 II-1-5〉 모자보건법 개정 내용(신구대조표)	17
〈표 II-2-1〉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관련 법령 체계	18
〈표 II-2-2〉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기준	19
〈표 II-2-3〉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20
〈표 II-2-4〉 감염·질병 예방 조치(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2020.1.16. 신설예정	21
〈표 II-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및 법령 체계	24
〈표 II-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25
〈표 II-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27
〈표 II-2-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 피난 안내도 관련 법령 내용	27
〈표 II-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28
〈표 III-1-1〉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내용	31
〈표 III-1-2〉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33
〈표 III-2-1〉 감염안전 일반원칙	34
〈표 III-3-1〉 규정 및 서식에 대한 전문가 및 필요도와 중요도 인식 및 차이	36
〈표 III-3-2〉 1차 델파이 조사 규정 및 서식별 수정 및 개선 의견	39
〈표 III-3-3〉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50
〈표 III-4-1〉 평가가이드라인 수정 내역	54
〈표 III-4-2〉 최종 확정된 규정 및 서식 목록	62
〈표 IV-1-1〉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사이버교육 및 조리업자 집체교육 자료 콘텐츠 개요	67
〈표 IV-1-2〉 미화·조리·행정 인력 등 기타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요	68
〈표 IV-2-1〉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 현장검토 및 동영상 시연회 검토 내용과 수정사항	69
〈표 IV-2-2〉 기타 종사자 교육자료 현장 검토 내용 및 수정사항	76
〈표 IV-3-1〉 교육자료별 예시	76
〈표 IV-3-2〉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 차시별 예시	78



그림 목차

[그림 III-2-1] 소방안전 일반원칙	35
[그림 IV-2-1]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절차	68
[그림 IV-2-2] 산후조리원 조리업자 집체교육 가이드라인 PPT 제작 개요	75
[그림 IV-2-3] 기타 종사자 교육자료 PPT 제작 개요	75

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 내용 및 방법

03 연구의 범위 및 특성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사업을 주축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첫 번째는 산후조리원 평가(혹은 컨설팅 등)를 위해 필요한 규정 및 지침, 관련 서식을 국가적 수준에서 개발하여 현장에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두 번째는 최근 모자보건법의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대상자가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확대됨에 따른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동영상 교육 자료 등을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다음에서 두 개의 각기 다른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에 관하여 사업별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가.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사회가 핵가족화 됨으로 인하여 자녀를 출산한 산모들이 노부모와 친인척으로부터 받던 전통적 방식의 산후조리를 받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수행했던 2018년도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 2017년도에 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산후 6주간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한 장소는 산후조리원이었고 이용 비율은 75.1%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8). 이러한 산후조리원의 이용 증가와 더불어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과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산후조리원 서비스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2015년도에 모자보건법 시행령('15.12월 공포, '16.6월 시행)을 개정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만들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 돌봄에 따른 감염·안전사고 규제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2018년도에 걸쳐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기준 및 방안 마련, 현장 수용성 등의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포함한 일련의 용역과제가 수행된 바 있다. 2016년도에는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지표가 개발(정인숙 외, 2016) 되었고,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개발된 평가지표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이 수행(정연이, 이운규, 이경림, 2017) 된 바 있으며, 2018년도에는 2017년도 시범사업 후의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에 대한 수정 보완 및 공공산후조리원(3개소)을 포함한 전국의 산후조리원 총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연구가 진행(이정림, 손인숙, 최병민, 엄지원, 조미라, 김희선, 2018) 되었다.

가장 최근에 수행되었던 2018년도 연구 결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평가 실시 주체(국가 혹은 위탁기관)에서 평가에 관한 일련의 지침과 규정을 확정지어 산후조리원에 배포할 필

요성을 제기하였다(이정림 외, 2018). 부연하면,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규정 및 지침 등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본 평가 진행시 평가자와 피평가자 간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평가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이정림 외, 2018). 더 나아가서 규정과 지침에 따라서 산후조리원이 운영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적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하였다(이정림 외, 2018).

제1차 시범평가 시(2017년) 현장에서 평가를 위한 규정 및 지침, 공통 서식 등이 없어 해당 항목 점수가 부여되지 못하여 참여 기관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가중치로 사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다(정연이 외, 2017). 또한, 현장에서 평가 규정 및 지침, 관련 서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평가 시간이 하루 이상 요구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고하였다(정연이 외, 2017). 2차 시범평가(2018년) 시 일부 지침과 규정만 제공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었고, 이에 산후조리원에서의 규정 및 서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해당 서류 준비 미비로 인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 수행이 어려웠음을 보고하였다(이정림 외, 2018). 현장에서도 평가 준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로 평가를 위한 지침 마련, 관련 서식 등이 없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이정림 외, 2018)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향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본 평가 준비를 위하여 평가 규정 및 지침 개발, 공통 서식 등을 개발하여 이를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요약된다. 현장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한 평가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공통 서식 제공을 통하여 현장에서 평가 준비가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평가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는 궁극적으로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필요성을 토대로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후조리원 평가 전에 용어, 규정 및 지침, 관련 서식 등을 사전에 제공하여 평가의 가장 주요 요건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함과 더불어 평가 진행 자체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평가를 위한 지침, 공통된 서류 작성 양식 등이 없어 산후조리원의 평가 자체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둘째, 산후조리원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정과 지침, 서비스 내용, 감염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2016년도에 수행되었던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연구(정인숙 외, 2016)에서는 산후조리원내 감염 예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후조리원 종사 인력의 전문성 수준 제고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2018년도에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실시했던 연구(이정림 외, 2018)에서도 산후조리원 운

영자 뿐 아니라 간호사·간호조무사와 같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도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감염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산후조리업자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으로도 기본적인 안전과 감염에 대한 지식과 이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등을 촉진 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반면, 현실적으로는 산후조리원이 민간 차원에서 운영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종사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채널 및 컨텐츠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는 모자보건법 개정(‘19.1.)으로 산후조리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대상자가 산후조리원 운영자뿐 아니라 ‘산후조리원 종사자’까지 확대됨으로 인하여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산후조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 종사자에 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산후조리원이 24시간 연중 휴무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이 집체 교육 방식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영상 자료를 통한 교육이 보다 효과적 인 매체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산후조리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와 같은 건강관리 인력 이외에도 미화부, 취사부(조리원), 세탁·행정인력과 같은 기타종사자 교육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상에서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의 주된 목적은 최근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감염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2020년도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에 활용하고자 함이다.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내용 중심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감염 예방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가.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하여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별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규정 및 지침 마련하며, 이에 따른 서식 등을 개발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유관 기관 규정 및 지침 수집 및 검토

어린이집 평가인증 및 의료기관 평가인증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한다. 또한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침 및 규정,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규정 등을 검토하였다.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하여 다음 <표 I-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계 및 현장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부처와의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표 I-2-1>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구분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1차	6.13	산부인과 교수 1인	연구방향 및 연구내용 논의
2차	6.14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과제 척수보고
3차	6.24	산업안전보건연구원 1인 안전공학과 교수 1인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의 시설 및 소방안전관리 분야 검토
4차	7.18	산부인과 교수 1인 산후조리원 관계자 2인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서식 검토 및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회의
5차	7.22	산부인과 교수 1인 한국산후조리업협회 1인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1차 원고 검토
6차	8.5	한국산후조리업협회 1인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중간점검
7차	11.9	산후조리원 컨설팅 5인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 지침 및 서식 검토
8차	11.12	산부인과 교수 1인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	산후조리원 평가지침서에 관한 전문가 및 현장의견 조사결과 공유 및 향후 평가지침서 수정방향 논의
9차	11.29	산부인과 교수 1인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 지침 및 서식 수정본 검토

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VS 산후조리원 운영자 대상 델파이 조사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이후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하여 학계/현장 전문가 집단과 현장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17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하였고, 15명의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참여하였는데 참여 산후조리원은 지역 및 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되었다.

델파이 조사를 통하여 개발된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의 현장 필요도와 향후 중요도 조사, 기 개발된 평가가이드라인에 관한 수정 및 개선의견, 추가개발 관련 의견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라) 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과의 연계 적용

2019년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했던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에서 기 개발된 규정/사례, 서식 등을 현장에서 사용하도록 한 후 보완점에 관하여 컨설팅 참여 기관 및 컨설팅 트로부터 의견을 들어 최종본을 완성하는데 반영하였다.

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

1) 연구 내용

산모·신생아 감염예방 및 관리, 안전관리,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사례 등에 대한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및 산후조리업자 교육자료 개발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대상 동영상 교육 자료를 4시간(30분×8회) 분량으로 시험문제(문제은행식, 차시별 4문항 개발)와 함께 개발하였다. 둘째, 산후조리업자 교육(8시간용) PPT를 제작하였다. 셋째, 미화부, 취사부(조리원), 행정 인력과 같은 기타인력 종사자(1시간용) 교육 PPT 자료를 개발하였다. 산후조리업자 및 기타인력 PPT 자료와 건강관리인력 동영상 교육 자료 모두 감염예방/관리 및 안전관리를 주제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산후조리업자 교육 자료의 경우, 건강관리인력 동영상 교육 자료와 유사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하되 강사진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을 고려하여 각 주제별 중점사항을 선정한 후 그 사항들을 중심으로 PPT 교육 자료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기타인력 PPT 교육자료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해당 종사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고, 교육 대상이 감염과 안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많이 없을 수 있음을 감안하여 그림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이해하기 쉬운 교육자료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어 개발하였다.

2) 연구 방법

가)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육자료 개발을 위하여 연구진, 연구협력진,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와 간담회 개최하고 부처와의 협의를 위하여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다음 <표 I -2-2>에 개최 내용이 제시되었다.

<표 I -2-2> 산후조리원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구분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1차	6.14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	산후조리원 평가기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과제 착수보고
2차	8.20	교육자료 개발업체 2인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대상 사이버교육자료 개발방향 및 세부사항 논의
3차	8.20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주무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인, 인구보건복지협회 3인, 교육자료 개발업체 2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사이버교육자료 구현방안 논의

구분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4차	8.27	소아청소년과 교수 1인 산부인과 교수 2인 소방방재학과 교수 1인 전 병원신생아간호사회 회장 1인 교육자료 개발업체 2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사이버교육자료 개발 진행과정 협의
5차	10.16	교육자료 개발업체 3인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사이버교육자료 중간검토 및 추후일정 논의
6차	10.2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 인구보건복지협회 2인 한국산후조리업협회 사무국장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 관련 논의 -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과정명 논의 - 산후조리업자 교육자료 구성 방향 논의 -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동영상 시연회 개최 논의
7차	10.29	소방방재학과 교수 1인 산부인과 교수 1인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 관련 논의 - 산후조리업자 교육자료 구성 방향 논의 - 사진, 삽화, 동영상 삽입 관련 논의 - 동기부여 구성 방식 논의
8차	11.22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사무관, 산후조리원 원장 3인, 교육자료 강사진 2인, 교육자료 개발업체 1인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교육 1차 동영상 시연 및 논의

나)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한 동영상 교육 자료 개발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대상의 동영상 교육자료 개발은 관련 전문 업체와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3. 연구의 범위 및 특성

가. 연구의 범위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해당 평가 지표에서 요구하는 규정 및 지침, 관련 서식 등을 가능한 모두 개발하고자 하였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의 경우, 2020년도 개발 교육 내용은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 2개 주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산후조리원에서 가장 필수적인 감염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자료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향후 이에 더하여 모자동실 운영 및 모아 애착, 신생아 건강 및 산모 정신건강 관리, 모유 수유 및 부모교육, 산후조리원 경영관리 등의 내용이 추가적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의 특성

본 연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먼저, 2018년도에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매뉴얼 개발에 참여하였던 각 연구진을 본 연구의 공동연구진 등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전년도의 중요 개

발 내용이 2019년도 연구와 연계 및 적용되도록 하였다. 전년도 연구자를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 관련 규정 및 지침, 서식 개발에 대한 중요 자료 협조 등을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토대로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작성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한편, 앞에서 언급했던 전문가들이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이외에도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발에도 참여하도록 하였다.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의 주된 교육 내용이 감염과 안전이라는 2개 영역임을 감안할 때 전년도 관련 연구진이 교육 동영상 제작에도 참여하도록 하여 강사로써 강의 촬영뿐 아니라 교육 내용에 관한 협의도 함께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현장과의 겹음을 통하여 산후조리원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9년도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수행했던 또 다른 연구였던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진행 단계마다 산후조리업자 및 건강관리인력의 의견을 적극 청취 및 수용할 수 있었다. 또한, 전국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2019년도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의견 이외, 컨설턴트 의견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등에 관한 자료 수집 기관으로써 장점을 활용하였다. 즉, 산후조리원 평가 관련 규정, 지침, 서식 등에 관한 현장의 요구 및 원하는 교육 내용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할 수 있었다.

II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 개발 배경 및 관련 법령

- 01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배경
- 02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 관련 법령

II.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과 교육자료 개발 배경 및 관련 법령¹⁾

1.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배경

가.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배경

출산 후 산후조리는 여성과 신생아의 평생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와 역할 변화, 산후관리의 중요성 인식 강화에 따른 수요 강화 등으로 인해 산후조리원이 탄생하게 되었다. 최초의 산후조리원은 1996년에 10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3년 300개, 2008년 402개, 2018년도에는 584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다(이정림·손인숙·최병민·엄지원·조미라·김희선, 2018; 한국경제매거진, 2008. 12).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1%로 2015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 발표되었던 59.8%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9.1.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더불어 감염과 안전의 취약성은 과거에도 꾸준히 지적받아왔다. 1996년 산후조리원이 최초로 설립된 이후에는 시설기준이나 인력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숙박업이나 자유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후 2001년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돌연사 문제가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 규제 요구가 사회적으로 크게 증대되었다(매일경제, 2001. 10. 31). 이후 2002년 12월에 보건복지부는 최초로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기 시작하였고(데일리메디, 2005.5.17.), 이후 주기적으로 수정 배포되고 있다. 또한 소방 안전에서도 관리 사각 지대였던 산후조리원은 2004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04. 5. 30., 법률 제6895호, 2003. 5. 29., 제정)이 제정되면서 동법 시행규칙(시행 2004. 7. 7., 행정자치부령 제240호, 2004. 7. 7., 제정)에 산후조리원업이 다중이용업에 포함되면서 관리의 영역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5년 모자보건법(시행 2006. 6. 8., 법률 제7703호, 2005.12.7., 일부개정)이 개정되면서 산후조리원 제2조 정의에 산후조리원업이 추가되었고, 제15조에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다양한 규제 법령 등이 추가되었다. 모자보건법개정과 함께 소방시설법에서 산후조리원업이 삭제되었다.

1) 2020년 1월부로 시행될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받아 반영하였음.

〈표 II-1-1〉 모자보건법 [시행 2006. 6. 8.] [법률 제7703호, 2005. 12. 7., 일부개정]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후조리업의 신고(법 제15조 신설)

산후조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15조의4 신설)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감염 또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시정명령 및 산후조리원의 폐쇄(법 제15조의8 및 제15조의9 신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인력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종사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산후조리업자가 당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후 산후조리원을 포함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문제가 지적되면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07. 3. 25., 법률 제7906호, 2006. 3. 24., 제정\)이 제정되었으며 산후조리원이 대상으로 포함되고 있고 현재까지 시설과 소방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http://www.law.go.kr/LSW//lsInfoP.do?lsSeq=72058&ancYd=20051207&ancNo=07703&efYd=2006060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hk=0#0000(2019.11.28 인출)</p></div><div data-bbox=)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산후조리원의 감염 및 안전사고 발생은 끊임없이 지적되었다. 특히 산후조리원 내 감염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감염 피해자는 2015년 414명, 2018년 525명으로 증가했으며 피해자 수는 5년간 평균 470여명에 달했다(메디게이트, 2019.10.17.). 특히, 대상별 감염현황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는 90% 이상이 신생아들이었다. 산후조리원 내 주요 감염원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이하 RS 바이러스) 30.5%, 로타바이러스(Rotavirus) 24.1% 등이다(보건복지부, 2019: 59).

〈표 II-1-2〉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

감염대상자	2015	2016	2017	2018	2019.6	총합계
신생아	404	445	411	475	163	1,898(90.9%)
산모	3	43	38	42	38	164(7.9%)
종사자	7	0	5	8	5	25(1.2%)
계	414	488	454	525	206	2,087

출처: 메디게이트(2019.10.17.) 산후조리원 감염피해 증가 추세…지난해 320곳, 525명 집단 감염(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현황, 기동민 의원실). [https://www.medicatenews.com/news/2030757591\(2019.10.1. 인출\)](https://www.medicatenews.com/news/2030757591(2019.10.1. 인출))

이러한 이유로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 된 내용이 2015년 이후로 모자보건법 중심으로 크게 강화되었다.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사고에 대한 산후조리원업

자 및 보건소의 책임강화가 주를 이루었다.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사고에 대한 산후조리원업자 보상책임,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 교육 강화, 산후조리업자의 감염이나 질병예방을 위한 조치 및 소독, 환경관리 등의 책임 명시 등의 내용이었다.

〈표 II-1-3〉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강화 주요 내역

일자	내용
1996.10	- 최초의 산후조리원 설립 ¹⁾
2002.12	-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지침 배포(보건복지부) ²⁾
2004.7.7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³⁾ 시행규칙 제5조 다중이용업에 산후조리원 포함
2005.12.7	- 모자보건법 ⁴⁾ 에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 신설
2006.3.24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신설)에 산후조리원업 포함 ⁵⁾
2009.1.7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질병, 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에 대한 보고 체계의 구축(모자보건법 제15조의4 개정)
2015.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업 신고 시 책임보험 가입을 그 요건으로 함(제15조제1항 개정) -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사고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모자보건법 제15조의15 신설) -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산후조리원 이용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요금체계를 그 산후조리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제15조의16 신설)
2015.12.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에서 영유아나 임산부가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및 종사자는 건강검진 외에 예방접종을 반드시 함(모자보건법 제15조의5 개정) -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제고를 위한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신설)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실시(모자보건법 제15조의20 신설)
2018.3.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또는 감염 예방 등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산후조리업자의 성명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신설) - 질병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의 상한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함(모자보건법 제27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2019.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소독 등의 환경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등으로 열거하고, 실제 감염이나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임산부나 영유아가 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확인하고 확산 방지조치를 하도록 함(제15조의4 개정) - 산후조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격리 등 근무제한 조치를 하고,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그 사실을 자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모자보건법 제15조의5제2항, 제15조의5제3항 신설) - 산후조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반드시 함(모자보건법 제15조의6제1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질병이나 감염으로 의료기관 이송 시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및 격리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산후조리업의 정지·폐쇄 요건으로 추가함(모자보건법 제15조의9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모자동실을 적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모자보건법 제15조의21 신설)

출처 1: 한국경제매거진(2008.8.), 산후조리원 과연 안전한가. http://magazine.hankyung.com/money/apps/news?popup=0&nid=03&nkey=2008112600031000133&mode=sub_view (2019.10.1. 인출)

2: 데일리메디(2005.5.17.).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지침 대폭강화.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657566&thread=22r01>(2019.10.1. 인출)

3: 국가법령정보센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9.10.1. 인출\)](http://www.law.go.kr/LSW//lsInfoP.do?lsSeq=210074&lsId=009694&chrClsCd=010202&urlMode=lsE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000)

4: 국가법령정보센터, 모자보건법 [\(2019.11.28. 인출\)](http://www.law.go.kr/LSW//lsInfoP.do?lsSeq=125554&lsId=000183&chrClsCd=010102&viewCls=lsPtnThdCmp&ancYnChk=0#0000)

5: 국가법령정보센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19.10.1. 인출\)](http://www.law.go.kr/LSW//lsInfoP.do?lsSeq=204788&lsId=010235&chrClsCd=010202&urlMode=lsEInfoR&viewCls=thdCmpNewScP&ancYnChk=0#0000)

특히 2015년 12월 22일 모자보건법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평가는 산후조리원내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산후조리 서비스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016년도부터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서비스수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7년과 2018년에 시범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이정림 외, 2018).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 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장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산후조리원 평가 준비의 첫 단계는 기관의 규정 및 계획 수립이지만 산후조리원 대부분이 이러한 규정과 관련서식, 근거서류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고 이를 준비하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이정림 외, 2018). 산후조리원 평가이전에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규정 및 서식이 절실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른 교육 또는 컨설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2019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산후조리원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본 연구를 통해서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표 II-1-4〉 산후조리원 평가 조항(모자보건법 제15조의19)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 · 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lId=000183&chrClsCd=010202&lsRvsGubun=all> (2019.11.28. 인출)

나. 종사자 교육 의무화 배경

전술하였듯이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법률에서는 감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 대상이 산후조리업자로 한정되어 산모와 신생아를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은 실정이었다.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이정림 외, 2018)에서도 산후조리원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건강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에 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며²⁾ 발의된 법률안은 2019년 1월 15일 개정안으로 공포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와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다(제15조의6제1항, 표 II-1-5 참조). 모자보건법 개정과 더불어 이후에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될 예정인데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

2)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안, 의안번호 2014865)

람을 교육받도록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150만원(모자보건법 시행령 제22조 관련 별표 3)을 지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보건복지부공고제2019-733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9.10.2.).

〈표 II-1-5〉 모자보건법 개정 내용(신구대조표)

모자보건법 [법률 제15444호, 2018. 3. 13.,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법률 제16245호, 2019. 1. 15., 일부개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 감염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 .
〈신설〉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183&chrClsCd=010202&lsRvsGubun=all>(2019.10.1. 인출)

2.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 관련 법령

가.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2조 10호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즉, 출산 직후에 산모와 신생아 대상으로 산후조리 및 요양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곳이다.

산후조리원과 관련된 법령은 제15조 이후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모자보건법에는 산후조리업신고, 결격사유, 승계,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건강진단,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보고·출입·검사 등 기본적으로 산후조리원이 갖춰야할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준수사항 등은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재하고 있다.

〈표 II-2-1〉 모자보건법 산후조리원 관련 법령 체계

모자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절차 등) 제15조의2(변경신고)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2(결격사유)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 · 방법)	
제15조의3(산후조리업의 승계)		제15조의3(산후조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20조(업무의 위탁)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7(보고 · 출입 · 검사 등)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7조(행정처분기준)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 · 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의3(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제15조의11(과징금)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제17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5조의12(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5조의13(청문)		제18조의2(행정처분대장 등)
제15조의14(명칭 사용의 제한 등)		
제15조의15(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17조의5(책임보험의 가입금액 등)	
제15조의16(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9조(이용요금 등의 공개)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제17조의6(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 등)	
제15조의19(산후조리원 평가)	제17조의8(산후조리원 평가 업무의 위탁)	제19조의2(산후조리원의 평가)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제17조의9(실태조사의 내용 · 방법)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		

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2020년에 1월부로 시행될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된 자료 등으로 반영하였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183&chrClsCd=010202&lsRvsGubun=all\(2019.11.28. 인출\)](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00183&chrClsCd=010202&lsRvsGubun=all(2019.11.28. 인출))

우선 산후조리원의 기본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 기준)와 시행규칙 [별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산후조리원 인력은 건강관리인력과 그 밖의 인력으로 구분된다. 건강관리 인력은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구분되며 그 밖의 인력은 취사

를 담당하는 조리원, 영양사, 미화원이 포함된다.

시설기준으로는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위치는 1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 방지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는 것, 방문객을 위한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일반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임산부 실은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영유아실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영유아실에 손 씻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II-2-2〉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기준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 1)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3) 간호조무사 :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 4) 근무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한다.

나. 그 밖의 인력

- 1)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방문객을 위한 손 씻기 시설(싱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5) 목욕탕은 샤워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8)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산부실

임산부실의 면적(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다.

- 1)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p>2) 임산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p> <p>다. 영유아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한다)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신규로 입원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사전관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p>라. 급식시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 세척·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p>마. 세탁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따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lId=000183&chrClsCd=010202&lSrvsGubun=all>(2019.11.28. 인출)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의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 방지 등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과 소독 등 환경 관리,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 등을 이행해야 한다.

〈표 II-2-3〉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내용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p>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9. 1.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2.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독 등의 환경관리 나.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다. 종사자·방문객의 위생관리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제3호에 따라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및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제4호에 따른 조치내역을 자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p>[전문개정 2009. 1. 7.]</p>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 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

법	내용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주)	<p>개정 2020. 1.16></p> <p>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1. 16.></p> <p>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16.></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 1. 16.></p> <p>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 16.></p> <p>[전문개정 2009. 7. 8.]</p> <p>[제목개정 2020. 1. 16.]</p>

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2020년에 1월부로 시행될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된 자료 등으로 반영하였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lId=000183&chrClsCd=010202&lslRvsGubun=all>(2019.11.28. 인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법 제15조의4의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감염·질병 예방을 위한 내용으로 소독 등 환경관리 및 결과표 작성, 의료기관 이송에 대한 교육, 모유 보관법, 손 위생법,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위생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였다.

〈표 II-2-4〉 감염·질병 예방 조치(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2020.1.16. 신설예정)

감염·질병 예방 조치(제16조 제2항 관련)

1. 소독 등의 환경관리

- 1) 영유아실의 벽면 및 바닥 등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2) 사용 중인 영유아 요람은 매일 깨끗한 물걸레로 닦고, 퇴원한 영유아 또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영유아의 요람은 국내외에서 그 효과성을 인증 받은 소독제로 소독한다.
- 3) 기저귀, 물티슈, 비누 및 보습제 등 영유아 용품은 영유아별로 보관·사용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욕용 대야는 사용 후 소독하여 보관한다.
- 4) 세탁·소독된 영유아 의류와 침구류는 청결한 곳에 보관·관리하고, 필요할 때 즉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갖추어 두어야 한다.
- 5) 젖병, 젖꼭지, 유축기, 수유쿠션 및 수유쿠션 덮개 등 수유물품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않고, 끓는 물이나 소독제로 소독 한 후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한다.
- 6) 공동으로 사용하는 임산부 좌욕기의 본체는 100 ~ 500배로 희석한 염소계 소독제 또는 4급 암모늄 소독제에 3분간 담그는 방법 등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 7) 세탁물 수집 장소 및 용기는 매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세탁물 수집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8) 조리장의 식기 및 조리기구 등 주방용품은 소독한 후 건조하여 전용함에 보관한다.
- 9) 에어컨, 히터 및 공기 청정기의 여과지는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교환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10) 1)부터 9)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영유아실 관리								
2	영유아 요람 관리								
3	영유아 용품 관리								
4	영유아 의류 및 침구류 관리								
5	수유물품 관리								
6	공용 좌욕기 본체 관리								
7	세탁물 수집 장소 및 용기 관리								
8	주방용품 관리								
9	냉난방 및 환기 시설 관리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 'x'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2.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 1) 임산부와 보호자가 새로 입원한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가 지켜야 할 위생수칙, 소방안전·대피계획, 방문객 관리, 감염 예방,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에 관한 계획(이송여부 결정기준, 이송절차 등)을 교육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확인을 받는다.
- 2) 영유아가 새로 입원한 경우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다목3)에 따른 사전관찰실에서 관찰하고, 새로 입원한 날에는 모자동실탈 것을 권장한다.
- 3) 유축한 모유는 냉장 보관하고, 유축 후 72시간 이내에 수유하며, 분유는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수유 중 영유아 혼자 젖병을 문 채로 있게 해서는 안 된다.
- 4)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근무 시작 전 손 위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5) 입원 중인 임산부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 6) 입원 중인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임산부실에서 모자동실탈이나 별도의 분리된 공간에 격리한다.
-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입원 관리								
2	영유아 관리								
3	영유아 수유관리	냉장 보관 모유 분유 유통기한 수유 방법							
4	손 위생 관리								
5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람에 대한 격리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 'x'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3. 종사자 위생관리

- 1) 일상적인 활동, 임산부·영유아의 간호·돌봄 전후 손을 깨끗이 하고, 영유아를 돌보는 중에는 손톱을 짧게 유지하며 인

조손톱 등을 부착하지 않는다.

- 2) 영유아실 근무 중에는 전용 근무복을 착용하고, 반지, 팔찌 및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 3) 취사 중에는 위생복, 위생모 및 위생화를 착용하고, 급식 준비 및 급식 중에는 반지, 팔찌 및 시계 등 장신구를 착용하지 않는다.
- 4) 근무 전 설사, 고열, 호흡기 질환 및 피부 질환 등이 있는지 확인한다.
-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손 위생 관리								
2	영유아실 전용 근무복 착용								
3	취사자 위생 관리								
4	질병 확인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 'x'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4. 방문객 위생관리

- 1)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문객이 취해야 할 조치를 방문객에게 안내한다.
- 2) 영유아를 만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고, 손을 씻은 후에는 물건이나 기구를 만지지 않도록 방문객에게 안내한다.
- 3)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이 유행 중이거나 방문객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한다.
 - 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상기도(上氣道) 감염을 포함한 급성 열성 질환, 활동성 결핵 및 B형 간염, 설사 등의 증세를 동반한 위장 관계 질환, 개방성 상처, 전파될 우려가 있는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 다)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등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최근 1개월 이내 흉역(紅疫)·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풍진(風疹) 예방접종, 수두(水痘) 예방접종 및 폴리오 예방접종 등을 받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 4) 방문객이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 5) 1)부터 4)까지의 사항을 방문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게시한다.
- 6) 1)부터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 결과를 매일 아래 표에 기록한다.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날짜	시간	방문객 이름	임산부 이름	관계	방문객 연락처	안내사항		방문객 서명	확인자
						질환 유무	인지 여부		
월/일									
월/일									

작성 시 참고사항

[작성인] 임산부 또는 영유아와 접촉할 사람이 작성합니다.

[날짜, 시간, 방문객 이름, 임산부 이름, 관계, 방문객 연락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등을 위해 작성합니다.

[안내사항 및 방문객 서명] 호흡기 질환 등의 유무와 방문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 또는 'x'로 표시하고, 방문객이 안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인지 여부를 작성하여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을 발생하게 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주: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2020년에 1월부로 시행될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된 자료 등으로 반영하였음.

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해서는 2004년 이전에는 포괄하는 법령이 없어 안전의 관리 사각지대였다. 이후 2004년 소방시설법 제5조(다중이용업)의 2에 산후조리원업이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비의료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 규정되고 제6조 소방시설 등의 설치완공신고 등으로 포함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소방시설법에서 산후조리원업에서 삭제된 이후 2007년에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다중이용업소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산후조리원 주요 안전관리는 다중이용업소법에서 포괄하고 있다.

주요 법령 내용은 소방안전교육, 안전관리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방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이다.

〈표 II-2-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및 법령 체계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안전시설등) 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 제11조(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제9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제11조의2(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방지 기준)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0조의2(영업장의 내부구획)		제11조의3(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3조(다중이용업소 인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제14조(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제9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lInfoP.do?lslSeq=204788&efYd=20190417#0000>(2019.10.1 인출).

우선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에서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에 다루고 있는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

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추가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면제된다. 또한 제8조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안전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및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제시하였다.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소방안전교육 대상자는 다중이용업주 및 소속 종업원이 해당하면 신규 교육을 받은 이후 보수교육을 2년 이내에 1회 이상 반복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소방안전 교과과정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리 요령이다.

〈표 II-2-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이하 "소방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이하 "교육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4. 22.>

1.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
2.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3.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업주가 직접 소방안전교육을 받기 곤란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의 종업원 중 소방청장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다중이용업주를 대신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대상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입원해 있는 등 정해진 기간 안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의 범위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1. 13., 2016. 10. 19., 2017. 7. 26., 2018. 3. 21., 2019. 4. 22.>

1. 신규 교육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 또는 2)에서 정한 시기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 허가관청이 해당 신고를 수리하기 전까지
- 2)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완공신고를 하기 전까지

나. 교육대상 종업원: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2. 수시 교육: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법 제14조를 위반한 다중이용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보수 교육: 제1호의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에 1회 이상

④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일시 및 장소 등 소방안전교육에 필요 한 사항을 교육일 30일 전까지 소방청·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기에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9. 4. 22.>

1. 신규교육 대상자 중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또는 영업장 내부구조 변경신고를 하는 자: 신고 접수 시
2. 수시 교육 및 보수 교육 대상자: 교육일 10일 전

⑤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다중이용업과 관련된 「직능인 경제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직능단체 및 민법상의 비영리법인과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다중이용업 관련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⑥ 소방안전교육 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⑦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또는 다중이용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⑧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⑨ 제8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어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재발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이전에 발급받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첨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즉시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재발급) 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방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15.]

제7조(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 · 관리 및 사용방법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②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내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lInfoP.do?lslSeq=204788&efYd=20190417#0000>(2019.10.1 인출).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제시되어 있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도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다. 제11조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있고, 다중이용업주도 다중이용업소법 따라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유지 · 관리 하여야 한다.

〈표 II-2-7〉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로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8. 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lInfoP.do?lslSeq=204788&efYd=20190417#0000>(2019.10.1 인출).

또한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위해 피난 안내도를 비치해야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또한 시행규칙 별표 2-2에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 안내 영상물 상영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II-2-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내 피난 안내도 관련 법령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5. 3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제12조(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피난안내도 비치 대상,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대상, 피난안내도 비치 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시간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3. 1. 11.>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주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등을 점검할 때에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5.>

[제목개정 2013. 1. 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lInfoP.do?lslSeq=204788&efYd=20190417#0000>(2019.10.1 인출).

또한 마지막으로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구체적인 점검 내용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점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화기 점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경보시설 작동기능 점검,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비상과 관리상태 확인, 영업장 내부 관리상태확인, 창문관리상태 확인, 누진차단기 작동여부 확인 등이다.

〈표 II-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상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용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계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밸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을 상영 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목재 방염성능확보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⑬ 방염 소파·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InfoP.do?lSeq=204788&efYd=20190417#00002019.10.1> 인출).

III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 01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 02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원칙
- 03 델파이 조사 결과
- 04 평가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및 수정내역

III.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1.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2018년도 시범평가 내용과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을 검토한 결과 개발이 필요한 규정과 서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인력의 적정성의 종사자 근무표, 종사자 관리대장, 건강관리책임자 지정확인서, 인력의 전문성의 인사관리규정, 연간교육계획서, 시설의 안전성의 시설 및 환경관리 규정 및 계획, 운영관리의 입·퇴실관리규정, 의료기관 연계이송 등을 개발 후보로 선정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개발이 필요한 규정 및 지침은 아래 <표 III-1-1>에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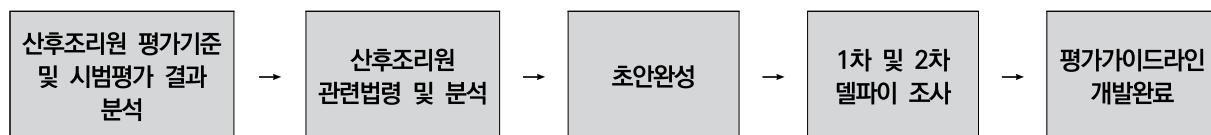
<표 III-1-1>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내용

종영역	소영역		개발이 필요한 규정 및 지침(안)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자 근무표 및 관리대장-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신생아 입실자료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관리 규정- 인사정보 관리 서류- 종사자 명부, 임용서류- 자격/면허 간접 관리 서류- 직무기술서
	2.2	종사자 교육·계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교육계획서- 교육 이수 증명서
	2.3	종사자간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후조리원 도면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규정, 계획-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서류-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4.2	소방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방안전관리 규정- 소방계획서(화재예방점검계획)- 안전점검 근거서류- 비상대응조직(자위소방대)- 소방안전 교육 이수 증명서- 소방훈련 근거서류-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4.3	낙상예방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낙상예방 규정- 낙상예방 교육 근거서류

중영역	소영역		개발이 필요한 규정 및 지침(안)
5. 운영 관리	5.1	입퇴실관리	- 입·퇴실 관리 규정 - 책임보험가입증서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절차) - 연계의료기관 협약서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자료
	5.3	문서관리	- 문서관리 규정
	5.4	방문객관리	- 방문객 관리 규정 - 방문객 명부(관리대장) - 방문객 감염예방 교육자료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 질 관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계획서 -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7. 경영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 리더십 및 조직문화 지침
8. 감염예방	8.1	손 위생	- 손 위생 규정 -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서
	8.2	개인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8.3	세탁물 관리	- 세탁물 관리 규정
	8.4	물품 소독·관리	-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 - 신생아 요람 소독일지
	8.5	환경관리	- 환경위생 관리 규정 - 공용시설 관리 점검표 - 소독관련 기록대장
	8.6	급식관리	- 조리장 위생관리 규정 - 식재료 검수일지 - 냉장/냉동고 온도 관리 기록지
	8.7	종사자 관리	- 직원안전 규정 - 건강검진, 예방접종 확인서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병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교육 근거자료
9.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 감염성 질환 발생 시 관리지침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자료 - 신생아 건강기록부
10. 산모 건강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 산모 건강기록부 (평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 퇴실한 산모)
11. 모아애착	11.1	모자동실·모유수유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서 - 모자동실 촉진 교육 근거자료 - 모유수유 촉진 교육 근거자료
12. 부모교육	12.1	부모교육	- 산모 교육 계획서 - 교육자료 - 교육이수 기록지(이수 관리대장)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 신생아 식별 규정
14. 신생아 건강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 신생아 건강평가 지침
15. 신생아관리	15.1	위생관리	-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15.2	신생아 수유	- 수유관리 규정
	15.3	안전관리	- 신생아 안전관리 규정

평가가이드라인 개발은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및 2018년도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결과 분석을 시작으로 산후조리원 관련법령,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 분석, 평가가이드라인 초안 작성, 1차 및 2차 델파이조사를 거쳐 개발하였다. 산후조리원 관련 법령은 2장에서 소개한 모자보건법, 다중이용업소법을 비롯하여 건축법,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수도법, 하수도법,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 매뉴얼,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매뉴얼, 의료 기관평가인증 서식 및 규정 사례집 등을 참고하여 초안을 개발하였다.

〈표 III-1-2〉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절차



델파이조사는 2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조사는 총 32명이 실시하였으며 의사 및 수간호사(전문가) 17명, 산후조리원 운영자(산후조리원장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1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개발된 각 규정 및 서식 초안의 구체적인 수정 요구사항과 전문가와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생각하는 각 규정 및 서식의 중요도와 필요도에 대한 인식차 이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의견을 반영 후 수정한 사항에 대한 검토와 추가 수정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조사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총 14명의 산후조리원 운영자가 조사에 참여하였다.

2. 평가가이드라인 개발 원칙

평가가이드라인 개발은 선행 감염관리 및 안전과 관련된 매뉴얼에 제시된 원칙을 기준으로 개발하였다. 감염관리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배포한 산후조리원 감염 관리 매뉴얼에 제시되어 있는 원칙을 따라서 개발하였으며 소방안전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2014년 배포한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매뉴얼을 따랐다.

가. 감염안전 일반원칙

감염안전에 대한 일반 원칙 내용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에 적합한 감염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감염관리책임자는 감염 전파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산후조리업자는 감염관리에 적합한 시설 환경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산모와 신생아를 비롯하여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사자가 감염관리 방법에 대해서 숙지해야 한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감염안전 일반원칙을 평가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개발하였다.

〈표 III-2-1〉 감염안전 일반원칙

1.1 감염관리매뉴얼의 일반원칙

- ① 산후조리원에 적합한 감염관리체계를 갖추고 감염관리책임자는 감염 전파의 위험을 파악하고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 ② 감염관리체계의 구성은 산후조리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감염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은 다르지 않다.
- ③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내 감염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감염 관리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을 갖춘다.
-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모와 신생아 그리고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1.2 감염관리의 조직 및 인력

- ① 감염관리책임자는 산후조리업자 혹은 건강관리책임자로 하며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에 대한 역량을 갖추도록 한다.
- ② 모든 종사자는 업무에 맞는 감염관리매뉴얼을 숙지하고 이행하며 특히 건강관리인력은 신생아 감염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숙지하여 이행한다.

1.3 감염관리규정 및 매뉴얼

- ① 규정 및 매뉴얼은 관련법과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다.
- ② 규정과 매뉴얼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모든 종사자는 교육을 받는다.
- ③ 감염관리규정 및 매뉴얼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신생아 감염관리
 - 산모 감염관리
 - 종사자 감염관리
 - 수유 관리
 - 급식 관리
 - 환경 및 시설관리
 - 세탁물 및 폐기물 관리
 - 물품 관리
 - 감염병 발생 시 대응체계

1.4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

- ① 종사자에게 각각의 업무에 부합하는 감염관리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 ② 산모와 보호자에게 산후조리원 내에서 신생아 돌봄 시 필요한 감염관리매뉴얼을 교육하고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 ③ 산모, 가족, 방문객에게 손 위생, 기침예절 등 감염관리 주의사항을 안내한다.

1.5 감염 관리 규정 및 매뉴얼 이행도 점검

- ① 감염 관리 규정 및 매뉴얼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종사자들에 피드백한다.

출처: 보건복지부(2019).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 pp. 9~10.

나. 소방안전 일반원칙

산후조리원 소방안전관리 운영체계는 기본적으로 PDCA 모형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크게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절차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예방은 시설이용자교육, 안전시설물 유지, 대비는 비상대응계획 수립 및 조직 구성과 운영, 대응은 사건 발생지 통보연락, 피난, 복구는 영업재개준비와 안전진단이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가이드라인도 이러한 원

칙을 충분히 반영하여 개발하려고 노력하였으며 다만, 복구 부분에 있어서는 평가기준 영역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평가가이드라인에는 다루지 않았다.

[그림 III-2-1] 소방안전 일반원칙



출처: 소방방재청(2014).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매뉴얼, p. 3.

3. 델파이 조사 결과

가. 1차 델파이조사 결과

1차 델파이조사에서는 각 영역별로 각각 규정과 서식에 대한 필요도와 향후 중요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초안으로 개발된 규정 및 서식의 필요도와 중요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개발된 규정 및 서식의 중요와 필요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문가는 대부분의 규정 및 서식에 대해 5점 만점 중 4점 이상으로 응답하였다. 유일하게 4점 이하로 응답한 서식은 산후조리원 만족도 조사였다. 반면 산후조리원 운영자(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직원 고충처리 신청서 방문객명부, 산후조리원 만족도 조사, 고객의 불만 및 고충내용 처리내역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필요도가 모두 3.5 이하로 응답하여 필요도와 중요도를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규정 및 서식에 대한 전문가 및 필요도와 중요도 인식 및 차이

영역	규정 및 서식	필요도			중요도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t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t
I. 인력의 적절성과 전문성	산후조리원 종사자 근무표	4.82	4.53	1.35	4.94	4.53	2.03
	종사자 관리대장	4.71	4.13	2.02	4.76	4.20	2.09*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4.53	4.00	1.66	4.53	4.07	1.43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4.29	4.00	0.81	4.53	4.07	1.43
	신생아 입실자료	4.88	4.33	2.08	5.00	4.40	2.81
	인사관리 규정	4.76	3.53	5.32***	4.88	3.60	4.80***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88	3.80	3.72**	4.94	3.80	3.78**
	종사자보안각서	4.76	4.00	3.27**	4.94	4.07	4.08**
	직무기술서	4.65	3.73	3.67**	4.82	3.73	4.41***
	신규 채용 직원경력사유 조회 신청서	4.71	3.87	3.12**	4.82	3.87	4.06**
	직원교육 지침	4.76	4.07	3.41**	4.82	4.13	3.22**
	연간 교육 계획서	4.53	3.13	4.27***	4.65	3.27	3.96**
	신규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내용예시	4.47	4.00	1.81	4.71	3.93	3.14**
	근무교대 지침	4.41	4.13	1.02	4.41	4.27	0.51
	근무교대 일지	4.53	4.40	0.50	4.82	4.40	1.81
II. 시설의 적절성과 안전성	설비 및 환경 안전관리 지침	4.65	4.07	1.88	4.88	4.27	2.36*
	시설 및 환경 안전 자체점검표	4.65	3.93	2.42	4.71	4.13	2.02
	설비 및 환경 관리계획	4.65	3.60	3.26**	4.71	3.67	3.28**
	산후조리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4.53	4.40	0.47	5.00	4.47	2.78*
	(소방)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4.71	4.13	2.13*	4.88	4.13	3.00**
	낙상예방 지침	4.76	3.80	2.77*	4.76	3.87	2.52*

영역	규정 및 서식	필요도			중요도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t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t
III. 운영과 질 관리	입·퇴실 관리지침	4.88	4.47	2.26*	4.88	4.53	1.90
	퇴실교육 체크리스트	4.76	4.20	2.84**	4.76	4.20	2.84**
	의료기관 이송연계 지침	4.88	4.07	3.68**	4.94	4.13	3.62**
	의료기관 이송보고서	4.94	4.00	3.55**	4.94	4.07	3.20**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4.94	3.87	3.84**	4.94	3.80	4.00**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조치 및 점검표	4.82	3.87	2.66**	4.82	4.00	2.71*
	문서관리 지침	4.59	3.40	3.64**	4.65	3.53	3.58**
	방문객관리 지침	4.65	3.47	3.59**	4.71	3.53	3.59**
	방문객 명부	4.35	3.27	3.24**	4.53	3.33	3.66**
	산후조리원 만족도조사	3.88	3.27	1.62	4.00	3.33	1.73
IV. 감염 예방관리	고객의 불만 및 고충내용 처리내역	4.18	3.27	2.51	4.24	3.27	2.65*
	직원 고충처리 신청서	4.00	2.80	3.61**	4.24	2.87	4.09***
	손 위생 지침	4.76	4.60	0.72	4.82	4.60	1.00
	개인보호구 착용지침	4.59	4.27	1.38	4.71	4.33	1.61
	세탁물관리 지침	4.76	4.07	3.12**	4.82	4.13	3.06**
	물품 소독·관리 지침	4.82	4.20	3.14**	4.82	4.27	2.71*
	환경관리 지침	4.71	4.13	2.43*	4.82	4.20	2.81*
	급식관리 지침	4.76	4.13	2.97**	4.76	4.20	2.58*
	종사자관리 지침	4.71	4.13	2.64*	4.76	4.27	2.15*
	소독 등의 환경관리 조치표 및 점검표	4.71	4.00	2.35*	4.71	4.00	2.39*
V.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종사자 위생관리 조치 및 점검표	4.53	3.80	2.27*	4.53	3.87	2.01
	감염관리 지침	5.00	4.40	3.15**	5.00	4.40	3.15*
	신생아 건강기록부	5.00	4.60	2.10	5.00	4.60	2.10
	산모 건강기록부	4.88	4.40	2.34*	4.88	4.33	2.70*
	산후우울증 설문지	4.12	3.47	1.99	4.35	3.53	2.41*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모자동실 운영지침	4.53	3.80	2.95**	4.65	3.87	3.05**
	부모교육 지침	4.53	4.00	1.92	4.76	4.00	2.58*
	신생아 확인 지침	4.94	4.73	1.27	5.00	4.80	1.38
	신생아 건강평가 지침	5.00	4.60	2.45*	5.00	4.67	2.09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4.94	4.73	1.27	4.94	4.80	0.94
	신생아 수유 지침	5.00	4.67	2.09	5.00	4.73	1.74
	신생아 안전관리 지침	5.00	4.67	2.09	5.00	4.73	1.74

주 1. 필요도는 '① 전혀필요하지 않다 ~ ⑤ 매우 많이 필요하다'로 측정함

2. 중요도는 '① 전혀중요하지 않다 ~ ⑤ 매우 중요하다'로 측정함

*p<.05, **p<.01, ***p<.001

1차 델파이 조사는 보건전문가 및 산후조리원 현장 실무자 의견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력의 적절성과 전문성 부분에서는 소규모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간호사 인력이 둑티마다 근무하기는 힘든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건강관리책임자(간호사)의 책임 하에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간호조무사라도 신생아실 5년 이상의 경력이면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등 인력 기준 변경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또한 건강관리자 책임자 지정확인서 등 보건소 실사에 포함된 내용은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 등이 있었다.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부분에서는 시설의 적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보건소 및 소방서에서 점검하시는 내용을 보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신생아 실 하나에 신생아수가 16명 이상인가라는 기준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또한 소방 안전관리에 신생아를 대피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 5kg되는 아기들을 동시에 성인 한명이 아무런 기구 없이 4명씩 안고 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방 훈련 대피 기구에 대한 기준이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운영과 질 관리 영역에서는 퇴실교육 체크리스트는 따로 작성하는 하는 것보다 퇴실 교육 시 산모들에게 나눠줄 퇴실교육서류에 포함시켜 교육 후 자료를 전달하고 신생아차트에 퇴실교육(+) 체크를 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일 것 같다는 의견, 이송기간 연계 지침이 최근 1년 이내의 것을 보게 되어있고 신생아 기록만 체크하도록 되어있어 산모나 신생아 다 가능하도록 하고 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산후조리원 만족도 조사 영역은 문항을 대폭 줄여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감염예방관리 영역에 대한 의견은 산모의 손 위생은 산모가 산모실에서 나오지 않아 확인 할 수가 없고 대부분 저녁 집단 교육시간에 나와 조유, 기저귀 갈기 등 교육을 하고 있어 평가를 할 수 없다는 의견, 주요물품별 관리방법소독제 농도 통일(1000ppm)에 대한 의견, 급식관리 지침에 외부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 대한 의견으로는 산후우울증 점검을 입소 내 1회는 실시 가능하나 2회는 어렵다는 의견, 모자동실 운영 시 산모가 아기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돌봐주어야 모아 애착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아버지 교육은 힘들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신생아 돌봄서비스 영역에 대한 부분은 국제 JCI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 평가도 환자 등록번호와 이름 2가지로 식별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식표가 식별정보가 1가지로 되어있어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식별 어려워 2가지 이상, 인식표는 1가지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신생아 관리 직원은 심폐소생술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구체적인 수정 및 개선 의견은 <표 III-3-2>에 제시하였다.

주로 전문가는 규정 및 서식의 일관성, 설명에 대한 보충, 주요 누락부분에 대한 보완 등에 대한 수정요구가 많았다. 전문가는 산후조리원 컨설팅에 컨설턴트로 구성되어 있어, 컨설팅 시 산후조리원 원장, 건강관리인력 등에 컨설팅 내용 전달 시 발견되었던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였다. 반면 산후조리원 운영자는 보건소에서 점검이 나오는 부분에 대한 서식은 통일성 있게 수정을 요구하거나, 평가항목과 연계하여 일부 서식 등을 제거해 줄 것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또한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서식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하였다.

〈표 III-3-2〉 1차 멜파이 조사 규정 및 서식별 수정 및 개선 의견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규정 및 서식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I. 인력의 적절성과 전문성	1. 산후조리원 종사자 근무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조당 간호사가 1인이 있어야 하므로 실제 근무가 7일 연속 근무하며, D와 E 더 블 듀티로 일하고 야근 4일 연속까지 근무 하여 총 72시간을 근무하는 근무표는 노동 법 및 신생아안전에도 위험해 보임. 휴게 시간 보장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예) D - D+E - D+E - N - N - N - N - 건강관리 책임자(간호사)가 365일 24시간 상주하며 모든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신생아와 산모의 안전을 위해 평가 방법에 대해 고려 필요함. - 서식 하단에 근무시간을 명시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함. - 법적 인력은 신생아 수에 따라 외부 인력인 PRN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PRN을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실제 문제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표는 필요하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조리원의 특성상 간호사를 근무당 한 명 충족시키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이 들. - 건강관리책임자(간호사)의 책임 하에 관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간호조무사라도 신생아실 5년 이상의 경력과 차지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갖춘 간호조무사라면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간호사의 역할을 대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음. 따라서 '듀티별 간호사가 근무한다'는 조건을 추가 상황으로 언급되면 좋을 것 같음. - 파트별로 근무표 각각 작성할 필요가 있음. - 종사자관리현황(1)에 면허신고 갱신이력 추가. - 보건소 실사에 포함된 항목이라 향후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 연 단위로 종사자 예방접종 및 교육이력 관리를 하고 있으나 평가일 기준 1년간 자료를 입력하는 것은 평가를 위한 자료정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함. 따라서 연단위로 자료 정리한 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현장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법으로 생각됨. - 종사자 관리대장 교육 관련 법정의무교육과 일반교육 구분 표기.
	2. 종사자 관리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관련 서류로 대체 확인가능. - 종사자 교육 중 산후조리원의 특성상 성희롱 예방교육과 장애인 인식 교육은 필요성이 낮다고 보임. 	-
	3. 건강관리 책임자 지정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실사에 포함된 항목이라 향후 평가항목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관련 서류로 대체 확인가능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규정 및 서식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실사에 포함된 항목이라 향후 평가 항목에서 제외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 - 평가일 기준 최근 1개월 내 - 4대보험 정보연계 시스템에서 출력 가능한 자료이므로, 서식자료집에는 필요하지 않음. 어디에서 출력할 수 있는지 안내만 있으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관련 서류로 대체 확인가능
	5. 신생아 입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업무가 되므로 산모재설명단에 신생아 재원관리대장을 포함하여 관리를 하였으면 함(대부분 신생아 이름을 '산모이름+아기'로 표기하기 때문) - 어머니 외 주요보호자 1인 추가 기재 필요 - 보호자 연락처 기재 - 신생아 확인 방법 기재(팔찌, 발찌 등, 사진촬영이면 더 좋을 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및 산모 차트와 중복되므로 필요없다고 봄
	6. 인사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적용하는 인사관리 규정사례집으로 작성된 내용이어야 하나 규정 설명집과는 내용이 약간 상이하므로 정리가 필요함 - '1의 나. 기타인력'에 시설/소방과 관련한 인사규정 추가 (직접고용, 겸임담당, 외부(간물주, 위탁 등)) - 인사관리 규정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하는 취업규칙의 형태로 제공하면 산후조리원 현장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규칙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함 - 산후조리원에 맞는 인사관리 규정필요 - 간호조무사 경력 2년 이상은 무리로 보임. 경력이 없어도 자체 교육시스템으로 근무 가능함. - 전기 소방은 전문업체에 맡겨 관리할 수도 있음. - 퇴직 및 해고 규정 중 '7일 이상 무단결근'을 '3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봄.
	7.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서류와 같이 처리하면 좋을 것임. 	-
	8. 종사자 보안각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 시 근로계약서 상에 명문화되어 있음.
	9. 직무기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업무 인지 강화 및 책임감 증대를 위해 서명하는 칸을 만들어 입사 시 받는 방법 제안. - 직무기술서 중 간호조무사 빠짐. - 개별 산후조리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직무기술서를 융통성있게 변경할 수 있다는 안내를 직무기술서 하단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음. 이대로 출력해 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원 매뉴얼 습득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 조리사의 필수자격 요건에 조리사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또는 3년 이상 조리업무 유경험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청함.
	10.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의 간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서류 시 같이 처리함이 좋을 듯함. -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겠지만 절대적인 서류는 아니라고 판단됨.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규정 및 서식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11. 직원교육지침	- 소방안전과 관련한 사항 포함	- 필수로 필요한 교육에 대한 지침을 주고 공통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음
	12. 연간교육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이 수시로 바뀌는 상황이라 연간계획서 작성이 필요. - 연간 계획서에 대한 구체적 예시 필요. - 교육방법의 경우, 필수 대면 교육과 전달 혹은 서면 교육이 가능한 교육을 나누어 예시를 제시했으면 함. - 법정의무교육과 일반교육 구분란 표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은 자체교육보다 외부교육이 있는데 더 많은데 연간계획서가 세우기가 힘들 듯함. - 필수 교육의 경우 정해진 지침대로 행하고 있고 직원의 이동이 많고 공동으로 시간을 미리 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음.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음. - 직원교육은 조리원 나름대로 하고 있으나 문서화와 교육계획서 관리 필요함. - 산후조리원의 연간교육계획을 하기엔 무리가 있음.
	13.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내용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단에 개별 산후조리원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내용으로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작성할 수 있다는 안내를 명시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원 매뉴얼로도 충분하고, 서식화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있음. - 직원교육 자침에 포함하여 문서의 간소화 필요함.
	14. 근무교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번 별 최소한 소독 물품, 소독제 유효 기간 등 확인하는 작업 필요함. -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할 내용을 서술로 적기 보다는, 필수적인 인수인계 내용을 체크하는 형태로 대표점검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편리함. 예) □ 신생아 수 이상 없음 □ 신생아 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교대 시 일정 양식으로 인수인계는 꼭 필요함.
	15. 근무교대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수인계 사항 없을 시에도 전반적인 기본 사항 알 수 있도록 즉 전체 재실 산모 및 신생아 재실 종원 등은 필요함. - White board에 기록하거나 노트에 기록하는 경우가 있어 Kadex나 Worksheet를 사용하여 누적된 기록을 1년 정도는 함께 보관하는 것이 필요함. - 근무교대 시 인수인계할 내용을 서술로 적기 보다는, 필수적인 인수인계 내용을 체크하는 형태로 대표점검항목을 구성하는 것이 편리함. 예) □ 신생아 수 이상없음 □ 신생아 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꼭 필요한 서식이라고 생각됨 - 서식 사례집의 예시는 현장에서 사용하기 어려움.
II. 시설의 적절성과 안전성	1. 설비 및 환경 안전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및 소방서에서 점검하는 내용을 보강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중복평가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함. - 산후조리원이 소재한 건물의 저수조, 정화조, 승강기, 전기 수변전의 관리 책임은 건물관리자에게 있고 건물관리자가 점검내용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려 함. 필요하면 관리소로 와서 확인하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음 - 소방서나 해당 기관 검사로 같음하는 방법 제안함(산후조리원 감염, 안전 항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 등의 항목 평가는 축소 제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과 분기별 점검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내용임.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규정 및 서식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2. 시설 및 환경 안전 자체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실 에어컨 필터 청소는 2개월마다 실시해야 하나, 시설 및 환경 안전 자체 점검표에는 에어컨 오염상태 확인이 분기별로 표시되어 있어 신생아실 에어컨 항목은 '2개월 마다'로 수정하거나 '분기별'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듯함. - 매월 점검날짜를 기입(e.g.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 전기시설에 전기누전차단기 점검 추가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국가안전대진단과 분기별 점검으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내용임.
	3. 설비 및 환경 관리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환경 안전 자체 점검표와 중복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로 따로 작성하는 것은 중복되어 필요없다고 봄.
	4. 산후조리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 안전관리에 신생아를 대피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 5kg 되는 아기들을 동시에 성인 한 명이 아무런 기구 없이 4명씩 안고 간다 하여도 5명이 31명 보면서 불가능해 보임. 실제 4명씩 안고 나간다는 것도 아기들이 서로 눌려 안전하지 않음. - 소방 훈련 대피 기구에 대한 기준이나 점검이 필요함. - 소방안전관리계획표 (3. 설비 및 환경관리 계획처럼) 작성 필요함. 예) 시설점검, 교육일정, 훈련일정, 위탁점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검표 내에 각 점검사항 기술이나 확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가로선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점검의 내용의 경우 다중이용 시설로 건물주가 실시하는 부분으로, 조리원 자체 점검 기준으로 작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세부점검의 경우 건물안전관리관이 소방서에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고 내부 점검표에는 실제 점검가능한 범위인 조리원 내부의 피난등, 대피로, 대피훈련 등의 점검표로 수정되었으면 함.
	6. 낙상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실이 없을 경우 바닥이 미끄러운 정도는 1개만 확인해도 될 듯함. - 신생아를 안고 다니지 않도록 예방 지침 추가 필요함. - 낙상 예방에 대한 정기적 점검에 대한 서식 필요함. - 낙상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가 필요함. - 화장실 등에 안전바 설치 및 필요한 장소에 스티커 부착 권고함. - 낙상예방 전에 신생아 이동에 관한 표준 규칙 마련이 필요 예) 신생아 이동에 대한 의견(카트 사용 여부, 요람에서 신생아 이동절차 등)이 간호사마다 다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상에 대한 홍보 교육은 필요함. - 포스터와 계도로 충분하다고 생각됨.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규정 및 서식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III. 운영과 질 관리	1. 입·퇴실 관리지침	- 입실할 때 교육을 다 들었는지 면담하는 것은 1명의 산모만 면담하기도 산후조리원 반별이 있어서 어려움. 산모가 직접 교육받고 사인이 있으면 그것으로 같음하여도 될 듯하고 아니면 면담은 1명만 하는 것으로 수정 필요함.	-
	2. 퇴실교육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에서 보유기간을 반드시 기입해야 함.	- 퇴실교육 체크리스트를 따로 작성하는 하는 것 보다 퇴실교육 시 산모들에게 나눠줄 퇴실교육서류에 포함시켜 교육 후 자료를 전달하고 신생아차트에 퇴실교육(+) 체크를 하는 방법이 현장에서 더 실용적으로 보임. - 목욕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목욕교육 서식을 만들어 부모에게 전달함과 동시에 목욕법, 배꼽소독법, 마사지, 기저귀갈기, 옷입히기 등 직접 배우도록 하고 신생아차트에 목욕교육(+)이라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입실 중 교육이 시행되므로 체크리스트까지는 필요 없다고 봄.
	3. 의료기관 이송연계지침	- 의료기관 이송연계 지침이 최근 1년 이내의 것을 보게 되어있고 신생아 기록만 체크하도록 되어 있음. 산모나 신생아 기록 모두 체크하고 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하면 좋겠음.	- 보건소 관할 서류로서 대체함.
	4. 의료기관 이송보고서	- 지역의 보건소마다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 지역 보건소에서 원하는대로 시행하면 될 듯함.	- 보건소 관할 서류로서 대체함. - 경우에 따라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경험에 비추어 보면 부작용이 너무 많고 조리원의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많았음.
	5.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 보건소 관할 서류로서 대체함.
	6.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조치 및 점검표	- 점검표의 내용이 다른 평가항목과 중복됨. 점검표 내용이 그날의 마지막 점검표의 성격을 띠고 있어 건강관리자의 근무일자 형식으로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근무교대 일자와 통합하여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여겨짐.	-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조치 및 점검표는 신생아차트와 산모건강기록 차트에 일괄 기록되게 하는 것이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한눈에 평가하고 관리하기가 더 편함.
	7. 문서관리지침	- '문서의 기록 및 수정 '1)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하며,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모두 기재한다.'나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는 공란인 경우가 있어 필수 항목별 사항 혹은 변화가 있을 시 기록 하는 항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 원본과 사본 분리보관 지침 마련 필요함.	- 기본적으로 보관할 서류들은 최소 3년 정도는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굳이 지침까지 문서화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드.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규정 및 서식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8. 방문객관리 지침	- 방문객 관리시설(창구 형태, 카드입출 등) 이나 담당관리자(겸임자정) 등 지정지침 마련이 필요함.	-
	9. 방문객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명부의 연락처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로 적기 어렵다고 함. 보통 배우자만 면회를 허락하여 그런 경우는 연락처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면 좋겠음. - 상시출입자를 명부에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 정할 필요가 있음 - 신분증 교환 여부 등 본인 확인란 추가 - 현장에서 방문객 관리가 원활하지 않았음.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추후 이에 대한 안내와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요 이상으로 과하다 느껴짐. - 개인정보 노출 꺼림.
	10. 산후조리원 만족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조사 항목이 너무 많은 듯함. - 10.11.12번 항목은 하나의 항목으로 통합 할 것을 제안함. - 선택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매우 불만족/약간 불만족/보통/약간 만족/매우 만족' 5점 척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임. (현재 만족과 거의 만족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떨어지며, 6점 척도는 일반적이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업에 있어서 고객의 과한 요구사항들만 과다하여 개인 성향에 따라 호불호가 나누어 처리하기 어려움. - 불만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므로 불필요함.
	11. 고객의 불만 및 고충내용처리 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만접수-고객응대-처리결과 고지-개선 활동'과 같은 일련의 절차 필요함. - 고객의 불만 및 고충처리를 따로 작성해서 보관하기에는 업무로딩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의 조리원에서 상황에 맞게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됨
	12. 직원 고충처리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은 규모가 작고 직원 수도 적어 평소 구두로 얘기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인 면대면 상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형식을 요하는지 않다고 생각함. - 산후조리원은 직원이 15~30명의 중소기업임. 직원 고충처리 신청서를 쓰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힘들거나 요청상황이 있을 시 직속상관이나 원장에게 카톡으로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신청서를 구비하는 것보다 면담요청을 하는 카톡의 내용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직원 고충처리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IV. 감염예방관리	1. 손 위생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는 시간 40~60초 이상 수행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병원에서도 15초 이상 씻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함. - 손 위생 활동 점검표에 직원용과 산모용에 	-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규정 및 서식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p>음식을 먹기 전후 손을 씻는지는 확인이 어려우므로 항목 삭제가 필요함. 산모의 경우도 코를 풀거나 재채기를 하기 전, 배변 활동 등 위생 활동을 하고 난 후의 손 위생 활동을 확인하고 체크하기 어려움. 대부분 미해당에 결과가 체크될 듯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침은 있으나 평가 할 수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모의 손 위생은 산모가 산모실에서 나오지 않아 확인 할 수가 없음. 대부분 저녁 집단 교육시간에 나와 조유, 기저귀 갈기 등 교육을 하고 있어 평가를 할 수 없음 ② 직원 손 위생은 신생아실 내에서만 손 위생 수행 확인 가능 	
	2. 개인보호구 작용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구 인증제품 및 사용가능 품목 정리가 필요함. 	-
	3. 세탁물 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기준집의 「평가항목의 이해」에서 규정에는 '~의 내용을 포함한다'로 되어있어 기준집에 명시된 내용은 규정에 모두 포함해서 작성해야 함. - 산모용/신생아용 세탁 구분 추가 	-
	4. 물품 소독·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주요물품별 관리방법(p.93)에서 A.요람, C.유죽기, E.작용용품의 로타바이러스 시 소독제 농도 통일(1000ppm) - 2.물품 관리 방법(p.96) ④번 염소 농도 측정지 사용 삭제 - 소독물품 구매인증, 구매처, MSDS 등 유해물질 혹은 위험물에 포함되는 법적 물품 관리 지침 마련(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 	-
	5. 환경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 환경소독(p.100) ③ 로타바이러스 800ppm 이상' 내용에 대한 확인 필요함. - 위탁여부에 대한 지침 마련이 필요함. 환경 관리는 세스코 등 업체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독제 등 환경 관리를 위한 명확한 공통 지침이 있었으면 함. 외부인 방문 시 덧가운 착용에 대한 내용 및 소독액 분사 금지 등과 같은 소독제에 대한 특성 및 금기 등의 지침이 동일하게 안내될 필요가 있음.
	6. 급식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관련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⑨ 외부위탁 관리에 병원에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일 경우 보통 병원에서 식사를 준비 후 배식차로 운반이 된다(p.105)에서 배식차 이동경로, 배식차 온도관리, 배식차 관리(세척)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음. 	-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규정 및 서식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7. 종사자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집 평가항목 ME3항목에 포함된 [직원은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성 질환 발생시 대처방안을 알고 있다]에서 감염성 질환 발생시 대응방안 및 근무제한 등의 내용은 있으나 근무중에 감염에 노출되었을 때 보고하고 처리 및 대응하는 절차 누락됨. - 감염성질환자나 감염 보균자(B형간염 등)의 신생아 또는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에 노출된 경우(눈에 튀었을 때) 보고체계 및 대처하는 절차(예: 건강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 시 병원 진료) 명시할 필요가 있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식 관련 전문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함. - “8. 소독 점검표”와 마찬가지로 종사자 위생관리 조치 및 점검 내용에 대한 설명이 서식 하단에 있으면 좋겠음. 	- 종사자 교육과 같이 취급 문서 간소화가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를 돌볼 때에는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한 장갑을 착용한다’에서 장갑 착용은 가능한 한이 아니라 ‘반드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감염발생 시 산모 등에 대한 감염예방교육 및 후속처리보고 등에 대한 지침 마련 필요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실시 신생아 건강평가 서식지 필요함. - 입실시 신생아 기록에 황달부분 체크도 필요함. 	- 현재 사용 중인 서식으로 충분함.
	1. 산모 건강기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집에 유방통증으로 되어있어 서식도 유방통증으로 해야 하나, 추후에는 ‘유방사정’으로 변경 검토가 필요함. 유방사정에는 유방 울혈, 통증, 유방감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유방통증 강도는 통증 지표 기준 추가하면 통증 강도 체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산모일지가 있고 보완할 부분은 참고 예정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내 1회는 실시 가능하나 2회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위험군에게 1회 더 평가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됨 - 설문지 취합 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방안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우울증의 설문조사는 필요한 업무이기는 하나 조리원에서 입소하고 있는 시기보다는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혼자서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조리원과 연계하여 조리원 퇴소 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음. - 입실시 산모 확인 시 문서의무화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수유평가표에 완전 모유수유에 대한 지침이 없으므로 추가 삽입 필요함. - 모자동실 교육에 대한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동실에 대해 현실 산모들이 원하는 추세와 조리원 운영에 따른 애로점을 생각할 때 점수화 방안을 개선 해야 할 것 같다. 8시간은 너무 많은 시간이라 생각함. - 모자동실은 필요하지만 모자동실 8시간은 산모들한테는 힘든 상황임. - 기본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침까지는 불필요함.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규정 및 서식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4. 부모교육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1 부모교육 ME1에는 [부모교육 계획을 수립한다]를 평가하는 항목이 있으나 규정에는 부모교육계획 수립절차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함. - 신생아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방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준 11.1 ME3 의 교육내용과 혼동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함. - 아기의 신호에 대해 민감하면서도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양육기술 및 아기와 간단한 몸놀이를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포함되었으면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사이트나 정보를 얻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음. - 영아의의 생존과 관련 기본 교육(기저귀 갈기, 우유 먹이기 등)은 조리원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돌연사 예방이나 피임 응급상황에 대처 및 아버지 교육은 진행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필수 서면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면, 이를 입실자나 교육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음., 산후조리원이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아닌 교육 자료의 전달하는 역할로 지침 수정이 필요한 것 같음. - 취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조리원마다 교육은 있으나 체계적인 지침서 필요함.
	1. 신생아 확인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JCI 평가나 의료기관 인증 평가도 환자 등록번호와 이름 2가지로 식별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식표가 식별정보가 1가지로 되어있어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식별 어려워 2가지 이상, 인식표는 1가지로 수정되어야 함. - 의복에 테이프로 이름을 붙이는 일은 아기가 토할 경우 의복 교환하며 분실될 우려가 있어 의복 부착은 금지 조항으로 명시가 필요함. - 아기 자리에 캠코더가 있는 경우 아기가 울면 아기를 빙자리에 아기를 옮겨다 놓으며 아기가 바뀔 가능성 커 보임. 산후조리원 평가 시 신생아 확인 관련 캠코더를 24시간 하지 않도록 규정을 넣으면 안전관리와 산후조리원 자체에도 도움이 될 듯 하고 보호자들 인식의 변화도 필요해 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돌봄에 관련한 체계적 지침은 필수로 필요함
	2. 신생아 건강평가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14.1 신생아 건강평가] ME3 [퇴실 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평가하고 기록한다]의 평가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산모 및 보호자가 보는 앞에서 신체 사정 및 건강평기를 하고 산모 서명을 받는 규정 및 퇴실 시 사정 서식 필요함. 	-
	3. 신생아 위생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장사항에 포함된 내용은 지침과 절차에 정리하여 포함해도 될 것 같음. - 위생관리 체크리스트 제공이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실천 사항을 재정비 할 수 있어서 유익함. - 신생아 돌봄에 관련한 체계적 지침은 필수로 필요함
	4. 신생아수유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보관방법(p.144): 냉장고 온도 미표기 및 온도관리 체크리스트 필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돌봄에 관련한 체계적 지침은 필수로 필요함
	5. 신생아 안전관리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폐소생술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함(년 1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돌봄에 관련한 체계적 지침은 필수로 필요함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규정 및 서식	전문가	산후조리원 운영자
추가 개발이 필요한 규정, 지침 및 서식과 개발된 규정 및 서식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자료를 부록으로 작성하여 표준화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침이 필요함. - 신생아건강기록부와 산모 건강기록부는 보건소 평가부분과 상충되는 점이 있는지 확인 후 공통서식으로 보건소 통해 배부할 필요가 있음 - '신생아 처짐'은 '신생아 활동성'으로 수정 필요함. - 연간 교육 계획서 개발 필요 - 낙상 예방 스티커 도안 개발 및 배포 개발 필요 - 소화기 있는 위치에 소화기 표시 지침 필요(구석에 있어 멀리서는 잘 안 보임) - 빌딩 비상구문과 조리원이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밖에서 문이 열 수 있어서 신생아 유괴 예방 및 안전의 위험 가능성이 있음. 이에 외부인 출입 제한 혹은 이와 관련된 지침이 필요할 듯함. - 낮시간 등 조리원에 들어와 운영하는 임대 업자(마사지 등)는 산후조리원과 무관하다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음. 산모와 접촉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서, 잠복결핵 등 관련 진단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산후조리업자의 심폐소생술교육도 필수 교육으로 포함 가능하다면 포함했으면 함 - 모자동실 운영지침이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움. 대부분 산후조리원에 입소하는 이유는 과거 친정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여 건강관리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함인데 산후조리원의 지나친 촉진 활동으로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불만족스럽다며 귀책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듯하여 염려스러움. 특히 감염예방을 위해 입소 당일은 24시간 모자동실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사료됨. - 현재 만들어진 지침은 산후조리원에 입실 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산후 조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음. - 규정, 지침 및 서식의 전달방식(채널) 확장 필요: 인터넷(모바일 포함)을 이용한 규정 및 지침의 자율 다운로드 채널 확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율과 출산율은 확연히 줄어들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산후조리원 역시 바닥을 보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보건소 분기점 검과 더불어 평가제도까지는 너무 큰 부담이 됨. 그래도 필요하다면 반드시 국가 혹은 공단의 지원이 필요한 제도이며, 기재해야 할 내용들과 항목들은 계속해서 축소시킬 필요가 있음. - 수유 물품과 관련된 젖병 및 깔때기 사용에 대한 유효기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필요함. - 문서를 통한 점검보다는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점검하여 인증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지금도 충분히 많은 지침이 있어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은 필요하지 않음. 실무자에게 모든 서류들을 작성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며 결국 근로자에게 일이 돌아가지 않고 편안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동시에 많은 일들을 해내야 함. 서류에 치중하다 보면 실제 업무는 소홀해 질 수 있음. 그러므로 과도한 지침과 규정보다는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반영하는 지침이 필요하고 평가를 위한 지침이 아닌 현장 개선과 운영의 편의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침개발에 목표를 두었으면 함. 그리고 개발된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업주의 뜻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지원과 자료제공도 동시에 이루어 졌으면 함. 	

나. 2차 델파이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는 주로 산후조리원 현장의견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1차 조사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수정 내역에 대한 의견을 받고자 하였다. 영역별 검토의견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력의 적절성과 전문성 영역에서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근무표는 건강관리책임자(RN), 건강관리인력(AN)으로 표기, 구분란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구분하여 추가해달라는 의견, 신생아 입실 자료에 신체 특이사항란 필요, 신생아 필요한 검사 유무, 이상 검사결과확인란 필요하다는 의견, 직무기술서에 필수자격요건 및 우대자격 요건 등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적절성과 안전성 영역에서는 설비 및 환경 안전관리에 관리 인원 및 필수인원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 기존 산후조리원에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운영과 질 관리 영역에서는 입·퇴실 관리 지침에 신생아 건강 사정 시에는 산모 방에서 간호사가 산모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꼼꼼하게 건강사정을 실시하고, 특이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구두확인하고 입소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견, 퇴실교육 체크리스트에 병원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서 산모들에게 요구하는 동의서 서명 등이 많아 불편해하시므로 항목 체크는 생략하고, 교육내용 게시 후 서명만으로 확인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리더십 및 조직문화 지침에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철학 및 핵심가치가 담겨있는 운영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감염예방관리 영역에서는 손 위생 지침에 손 위생 수행률 평가서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개인보고후 착용 지침에 교육자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 종합적으로 조리원의 소독점검표(환경 위생 등) 종류가 너무 많고 중복항목도 많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소모가 많으므로 함축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영역에서는 산모건강기록부에 조리원은 병원과 달리 장기 입실이므로 사용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각 조리원에서 기본틀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모아애착 증진서식에 모든 관리를 세분화시켜서 지침을 만드는 것은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기존인력은 그대로인데 업무만 늘어나면 실제적 아기, 산모 돌봄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간략화해야 한다는 의견, 부모교육 퇴실교육 입실교육 등 체크리스트가 너무 많아 산모들도 힘들어 하고 시간과 인력낭비가 많으므로 좀 더 간결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신생아 돌봄서비스 영역에서는 신생아 확인 지침에 몸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베넷저고리 어깨 쪽으로 테이프를 부착하고 팔찌보다는 발찌가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신생아 건강평가 지침에 퇴실 시 산모와 함께 옷 갈아입히면서 아기 몸의 이상 없음을 확인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입실시 신체사정 후 4시간 정도 별도의 공간에서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 신생아 수유지침에 조유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표 III-3-3〉 2차 멜파이 조사 결과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검토 의견	
I. 인력의 적절성과 전문성	1. 산후조리원 종사자 근무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책임자(RN), 건강관리인력(AN)으로 표기 - 구분란에 간호사, 간호조무사로 구분 - 건강관리책임자는 한 명이라 한 칸으로 줄이고, 요일 작성칸, 31일 날짜 뒤로 Night 개수, 쉬는 날 개수 작성칸 필요 - 건강관리자 이외 일반 종사자는 근무 변동 시에만 별도표시란 만들어 관리하는 게 나을 듯함 - 기본서식을 조리원 현황에 맞게 수정 사용 필요 -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내용과 중복됨 - 부서별로 서식을 나눌 필요가 있음(건강관리부, 주방관리부, 미화담당부)
	2. 종사자 관리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기준으로 기록하도록 수정 -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내용과 중복됨 - 건강 검진일에 잠복결핵 검사일 및 정신건강검사일 (정신건강법 제3조 제1호) 추가 삽입 - 부서별로 서식을 나눌 필요가 있음
	3.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내용과 중복됨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내용과 중복됨
	5. 신생아 입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 임신에서 출산(분만) 일수 표기란 삽입 - 신체 특이사항란, 신생아 필요한 검사 유무, 이상 검사결과확인란 필요 - 입실 시 신생아건강기록부 항목 중 입실 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체중을 체크하는 항목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며 현장에서 행하기에도 무리가 따름. 자고 있는 아기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줄 수 도 있을 것 같음. 시간 간격을 4~8시간으로 늘리면 좋을 것 같음. - 신체 사정 시 필요한 분만 지표 (C/S, N/D) 기입이 필요함
	6. 인사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채용공고 후 경력지원자가 없는 경우 무경험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 추가 - 해고란에 신생아 학대도 포함 - 간호사 1명당 신생아 7명 돌보는 것은 어려움. 인력 구하기가 힘든 지방에서는 2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자 구하기가 쉽지 않음. 예외 조항 검토 필요함.
	7.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8. 종사자 보안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밀 누설 방지 관련 내용 추가
	9. 직무기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 책임자에 프로그램 관리, 퇴실교육도 추가 - 지방의 소규모 산후조리원은 건강관리 책임자가 신생아실 실장도 겸하는 경우가 많음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검토 의견	
	10.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	- 조회화신서 수령 및 보관에 대한 내용 검토 필요
	11. 직원교육 지침	- 일반 직원교육은 연 2회로 진행
	12. 연간교육계획서	- 서식에 필수 교육과정이 안내되면 좋을 것 같음
	13.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내용 예시	- 내부 직원 민원 및 면담에 관한 사항 첨부 - 매 업무당 매뉴얼을 만들어 비치하도록 변경
	14. 근무교대 지침	- 기본 서식을 바탕으로 각 조리원 운영현황에 맞게 수정 사용이 필요함
	15. 근무교대 일지	- 건강기록지 작성과 중복됨 -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특이사항 관찰기록은 다음 근무번으로 연계되어 같은 줄에 연결 기록되어야 파악이 용이하므로 D-E-N으로 획배치 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함
II. 시설의 적절성과 안전성	1. 설비 및 환경 안전 관리 지침	- 관리인원 및 필수인원으로 인력배치 - 시설 환경 안전관리 담당자를 부속병원 관리자가 맡아도 되는지에 대한 안내 필요
	2. 시설 및 환경 안전 자체 점검표	- 난방(온풍) 점검표 추가 - 시설 환경 설비 관리 부분의 점검표가 너무 많고 중복되는 것도 있으며 한장으로 힘축이 필요함
	4. 산후조리원 소방안전관리 규정	-
	5.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 장애인에 관한 안전시설 표기 누락 - 기존 산후조리원 건물에 스프링클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추가 - 신생아실 내 cctv 설치 법제화 및 신생아실 바닥 쿠션매트 설치 의무화 추가
	6.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
III. 운영과 질 관리	1. 입·퇴실 관리 지침	- 퇴실교육으로 변경 - '신생아 건강 사정 시에는 산모 방에서 간호사가 산모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꼼꼼하게 건강사정을 실시하고, 특이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구두 확인하고 입소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한다.'에서 꼭 산모 방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둑. 장소의 선택은 병원 상황에 맞추어 하면 될 것 같음 - 입실교육 시 좌욕교육 포함
	2. 퇴실교육 체크리스트	- 퇴실 후 예방접종사항 교육 내용 추가 - 성별/나이 생략, 날짜/교육자/부모서명란 생략, 교육 수행정도는 2가지(도움필요, 충분이해)로 수정
	3. 입실 시 고객용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4. 의료기관 이송연계 지침	- 예외 사항 중에 생리적 황달로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내용 수정 - 고혈압 부종 및 임신중독 후유증도 질병에 포함
	5. 의료기관 이송보고서	- 이송방법 체크 삽입 -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내용과 중복됨
	6.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검토 의견	
IV. 감염예방관리	7.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조치 및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기록부가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특이사항란에 기록하도록 하면 되므로 불필요함
	8. 문서 관리 지침	-
	9. 방문객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실 면회지침도 포함(커튼 오픈시간 및 면회횟수 등)
	10. 방문객 명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기본소속에서 '소독체크' 삽입 - 적합하나 방문시간 기록까지 일일이 체크하기 어려움(조리원 인력부족)
	1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후 결과에 대한 분석과 수용이 필요함 -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됨
	12. 산후조리원 만족도 조사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응대 만족도, 화장실 등 체크 삽입 - 신생아실 환경, 청결 평가 내용도 질문에 포함. 식사 조사를 구체적으로 식사량 등. - 서술형으로 받던 것을 항목별로 체크리스트화 했더니 훨씬 체크하기 쉽다는 의견과 함께 통계내기가 쉬워져서 좋았음.
	13. 리더십 및 조직문화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철학 및 핵심가치가 담겨있는 운영계획이 너무 광범위함. 사내게시판도 현재 인계장 등을 이용하여 공지사항은 인계하고 있으며 설치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곳에서는 각 조리원에서 알아서 설치하도록 하고 의무규정에는 넣지 않았으면 함
	1. 손 위생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위생 수행률 평가 서식이 있으면 좋겠음 - 교육자료(PPT나 영상,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현장접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음
	2.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강조
	3. 세탁물 관리 지침	-
	4. 물품 소독·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욕대야 개별 소독하고 보관이 어려움. 겹치지 않게 보관해야 하지만 장소를 너무 많이 차지함. 목욕대야 소독 및 관리에 대한 내용 검토 필요
	5. 신생아실 소독 점검표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청정기 점검 주2회 변경 요청 - 조리원의 소독 점검표 종류가 너무 많고 중복항목도 많음(인력과 시간소모가 많으므로 합축하여 줄일 필요가 있음)
	6. 환경관리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③ '걸레 사용 후 세탁 건조 후 사용한다'로 문구 수정
	7. 소독 등의 환경관리 조치표 및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기저귀 폐기용기 소독 및 관리체크 삽입 -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통합해서 관리
	8. 급식관리 지침	-
	9. 종사자 관리 지침	-
	10. 종사자 위생관리 조치 및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사자 근무복 삽입 (머리두건 등 빠짐) - 조리원의 소독점검표(환경 위생 등) 종류가 너무 많고 중복항목도 많음(인력과 시간소모가 많으므로 합축하여 줄일 필요가 있음) - 부서별로 관리는 하되 서식까지는 필요치 않아 보임
	11. 감염관리 지침	-
	12. 입실 시 신생아 건강기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모이름 체크 삽입 - 아기의 지난정보란에 수유(모유, 분유, 수유량)추가 - 신생아 건강기록부에 포함하기 바람 - 2. 아기 관찰 : 시간대별 체크는 전담 인력이 따로 있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평가 가이드라인 영역	검토 의견	
	13.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법정서식	- 재원일 밑 칸에 출생일수 기록란 추가
	14. 신생아 건강기록부 (예시)	- 수유 횟수량이 매 근무당 5~6회도 있을 수 있으므로 횟수 추가 - 기타(여백) 란을 만들어 의사회진 및 보호자설명 증상 서술 등을 할 수 있는 칸 추가
V. 산모 돌봄서비스 및 부모교육	1. 산모 건강기록부	- 분만형태(자연, 수술, 자가분만) 등 표기
	2. 임산부 건강기록부 법정 서식	- 산모 건강 기록부(임산부 건강기록부)와 임산부 건강 기록부 법정서식 모두 중복됨
	3. 산후우울증 설문지	-
	4. 모자동실 운영 지침	- 최소 8시간 모자동실은 산모들의 반발이 심함
	5. 모아애착 증진 서식 예시	- 서식이 너무 많아 불필요함
	6. 부모교육 지침	-
	7.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 부모교육 퇴실교육 입실교육 등 체크리스트가 너무 많아 산모들도 힘들어하고 시간과 인력낭비가 많으므로 좀 더 간결하게 줄일 필요가 있음. 또 바깥 활동을 하는 아빠들의 참여도는 저조함 -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와 중복되는 교육이 많음 - 병원과는 좀 분위기가 달라서 산모들에게 요구하는 동의서 서명 등이 많아 불편해하므로 항목 체크는 생략하고, 교육내용 게시 후 서명만으로 확인하면 좋겠음
VI. 신생아 돌봄서비스	1. 신생아 확인 지침	- 몸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베넷저고리 어깨 쪽으로 테이프를 부착하고 팔찌보다는 발찌가 좋음
	2. 신생아 건강평가 지침	-
	3.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 목욕대야 개별 사용 힘듦.
	4. 신생아 수유 지침	- 조유실을 따로 두어야 한다를 명시화해야 함
	5. 신생아 안전관리 지침	-

4. 평가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및 수정내역

가. 평가가이드라인 수정 내역

델파이조사와 전문가의견과 운영자 간담회 등을 여러 번에 걸쳐 평가가이드라인을 수정하였다. 1차에서는 종사자 근무표의 주요 인력 명칭 수정, 종사자 관리 현황에 담당업무 변경 등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위주로 수정을 실시하였다. 2차에서는 법정 서식 등을 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보건소 실태조사와 형식을 유사하게 하였으며 종사자 교육 서식 부분에 법정의무교육을 추가하였으며, 현장에서 제외요청이 있었던 직원고충처리 신청과 관련된 서식 삭제 등의 수정을 실시하였다. 3차에서는 종사가 관리대장에 내용추가, 인사관리 규정에 퇴직 및 해고에 신생에 학

대관련 내용 추가, 시설 및 환경 안전자체 점검표에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점검 기준 내용 추가, 퇴실교육 체크리스트에 시범항목 삭제 등 중복항목 등의 삭제 등을 실시하였다. 마지막 4차 수정에서는 종사자 관리현황 자료를 연도별 자료로 수정, 신생아 입실자료 구체화,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법정기준으로 수정, 직무기술서 간소화, 지원교육 내용 법정교육 내용 위주 수정, 문서 관리 목록 등 현장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던 서식 삭제, 소독제 유효염소 농도 통일 등의 수정작업을 실시 한 후 최종 확정하였다.

일부 현장에서 있었던 현행 인력기준 수정요구 등은 규정 및 서식매뉴얼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라 반영하지 못하였고 시설 및 환경관리, 소방안전관리 영역은 최대한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하긴 하였지만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매뉴얼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내용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경우 현장에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어 추후 2020년에 수행될 보건복지부의 시설환경 및 소방안전관리 영역에 대한 용역결과가 완료된 이후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또한 마지막으로 산후조리원 고객만족도에 대한 필요도와 중요도가 멜파이조사 시 낮게 나왔지만, 실제 현장 면담 시 경영 및 마케팅의 이유로 고객만족도 조사의 요구가 많은 것을 확인하여 서식에 남겨두었다. 구체적인 수정 내용 목록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I-4-1〉 평가가이드라인 수정 내역

일시	대영역	소영역	변경 전	변경 후
1차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1 인력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근무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자, 간호조무사, 산모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근무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책임자, 건강관리인력으로 수정 - D/E/N: 산후조리원별 근무시간 명시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관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비/소방 ② 산모교육 ③ 감염관리 ④ 신생아 돌봄(건강관리 인력, 기타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담당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설비/소방 ② 산모교육 ③ 감염관리 ④ 신생아 돌봄(건강관리 인력) ⑤ 기타인력 - 종사자 교육 관리: 법정 의무 교육 표기
2차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1 인력 적정성	○ 법정 서식 및 일반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실태 조사 시 제출하는 서류는 보건소 실태조사로 갈음 ○ 법정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건강기록부 - 영유아건강기록부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조치 및 점검표 -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신규채용 직원 결격 사유 조회 요청서 - 의료기관 이송보고서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결과보고서 ○ 일반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종사자 관리대장 - 산후조리원 실태조사서

일시	대영역	소영역	변경 전	변경 후
3차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1 인력 적정성	○ 종사자 관리현황	○ 종사자 관리현황 - 면허신고 갱신 이력 추가 - 법정의무 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 표기
			○ 신생아 입실 자료	○ 신생아 재원 관리 대장 - 산모 재실 명단을 포함하여 관리 - '산모이름 + 아기'로 표기
		2.1 인력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 직무기술서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직무기술서를 분류 하지 않고, 건강관리책임자, 산모관리인력, 신생아관리인력으로 분류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개발	○ 연간교육계획	법정의무교육 제시
		2.1 인력 전문성: 종사자 간 의사소통	○ 근무 교대 일지	- 재실 인원 표기: 산모/신생아 - 근무교대 시 특이 사항 없을 시 '이상 없음'으로 표기 가능하다고 명시
		III. 운영과 질 관리	6.1 질 관리	○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 직원고충처리신청서 삭제 - 만족도 조사는 app 형태 개발 추진
		IV. 감염 예방관리	8.1 손 위생	손 위생 점검 50% 이상 적합 시 가산점 부여
			8.4 물품 소독 관리	'소독제의 분사는 금기한다'라는 지침 추가
		V.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0.1 산모 건강 평가	○ 임산부 건강기록부의 유방사정 - 임산부 건강기록부는 법정서식으로 이 서식에는 유방사정이 삭제되어 있음. 특 이 소견 시 기타에 표기할 것을 권고 - 임산부 건강기록부는 법정서식과 예시 를 제공
			○ 산후우울증 설문지	app 형태 개발 추진
			12.1 부모교육	○ 부모교육, 모유 수유 교육자료 개발 중
		I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적절성	○ 종사자 근무표 - 담당근무: 건강관리인력 ○ 종사자 관리대장 - 건강검진일(잠복결핵 검사일)
				○ 종사자 관리대장 - 건강검진, 잠복결핵, 정신건강 검진일 구분
			2.1 인력전문성: 종사자 채용 유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보건소 점검 시 제출 서류와 동일하여 삭 제하기로 함
			2.2 인력전문성: 종사자 교육개발	○ 인사관리 규정 라. 퇴직 및 해고 - '신생아 학대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추가 ○ 연간 교육계획서 -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필수 교육과 기 타 직무교육을 구분하여 설명을 첨가

일시	대영역	소영역	변경 전	변경 후
		2.3 인력전문성: 종사자간 의사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교대 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로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교대 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형, 세로형 추가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4.1 시설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환경 안전 자체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및 환경 안전 자체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청정기와 에어컨 점검은 제조회사의 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한다.' 내용 추가
III. 운영과 질 관리	5.1 운영관리: 입퇴실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실교육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실교육 체크리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 항목 삭제
	5.2 운영관리: 의료기관 연계, 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연계, 이송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사항: 생리적 황달로 입원하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연계, 이송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사항 수정: 황달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입원 치료를 권하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 이송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5.4 운영관리: 방문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명부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포함하는 직원으로 수정 ○ 신생아실 면회 금지 조항 추가 ○ 방문객은 원칙적 면회 금지 조항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객 명부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포함하는 직원으로 수정 ○ 신생아실 면회 금지 조항 추가 ○ 방문객은 원칙적 면회 금지 조항 추가
IV. 감염예방 관리	8.4 물품 소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실 소독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실 소독 점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청정기, 에어컨 삭제 - 시설 환경 점검표와 중복
	9.1 감염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 시 신생아 건강기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 시 신생아 건강기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명) 아기 변경
V.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0.1 산모 건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건강기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압 체온 하루 3회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산부 건강기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압 체온 하루 1회 측정 - 고위험인 경우 하루 3회 이상 측정하는 것으로 수정 ○ 임산부 건강기록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만형태: 제왕절개, 자연분만, 자가분만 구분하여 표기
	11.1 모아애착: 모자동실, 모유수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아애착 지침 ○ 모아애착 증진 서식 ○ 모유수유 촉진활동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아애착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 당일 24시간 모자동실을 할 수 있도록 강조 교육 - 모자동실 6시간 이상 권고로 수정 - 모자동실 8시간 이상 가산점 5점 - 모유수유 촉진 활동 가산점 5점 추가 ○ 모아애착 증진 서식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동실 현황 및 촉진활동'을 '모자동실 현황'으로 수정 - 모자동실의 주된 어려움(기술) 및 어려움 해결 방안 삭제 - 분만형태를 구분하여 표기
VI. 신생아 돌봄 서비스	14.1 신생아 건강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건강평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건강평가 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관찰은 산모실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추가

일시	대영역	소영역	변경 전	변경 후
4차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근무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E/N: 산후조리원별 근무시간 ○ 종사자 관리현황 (1) ○ 종사자 관리현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 '감염관리', '소방안전', '산후조리업자 교육', '성희롱 예방', '신생아 안전관리',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서비스 개선 교육', '기타 직무 교육' ○ 신생아 입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 근무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낮에 근무), 교대근무(D/E/N/Off) 구분 ○ 종사자 관리현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자료로 수정 ○ 종사자 관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할 때의 교육 내용 추가 - 입사일, 퇴사일 추가 - 교육 내용 중 '산후조리업자 교육' 삭제 및 '산모, 신생아 안전관리', '위생교육' 추가 - 법정 필수교육에 대한 설명 추가 - 연도별 자료로 수정 ○ 신생아 입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경로/분만방법'으로 수정 - 분만방법은 '제왕절개'와 '자연분만'으로 구분
	2.1 인력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간호조무사 ○ 인사관리 규정: 인사정보관리(영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건: 단체급식 가능한 자 ○ 직무기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관리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자보건법 인력기준: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로 수정 - 용어 이해를 위하여 임산부(산모)로 수정 ○ 인사관리 규정: 인사정보관리(영양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조건에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추가 ○ 직무기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 중 필요기술, 직무수행 책임, 직업 기초능력에 관한 내용 삭제 - '영유아 건강관리 업무담당자'를 '신생아 건강관리 업무담당자'로 수정 - '신생아실 실장', '구매부', '경영지원' 직무기술서 삭제 - '객실' 직무기술서를 '산모실담당 관리자' 직무기술서로 수정
	2.2 인력전문성: 종사자 교육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교육내용 2) 일반 직원 - 3)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매년 1회 8시간 이상의 감염관리교육, 매년 1회 이상의 소방안전교육 / 기타 직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교육내용 2) 산후조리원 종사자(일반 직원)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매년 1회 8시간 이상의 감염관리교육, 매 2년에 1회 이상의 소방안전교육 /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및 기타 직무 교육 - 건강관리인력: 매년 1회 4시간 이상의 감염관리교육 - 그밖의 인력: 매년 1회 1시간 이상의 감염관리교육

일시	대영역	소영역	변경 전	변경 후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3.1 시설 적정성	○ 사전관찰실 예시	삭제	
	4.3 낙상 예방관리	○ 낙상예방 지침 예시 가. 일상 생활 시 낙상예방 수칙 1) 호출장치 도움이 필요할 때 직원이 부를 수 있도록 호출장치 사용법 설명	○ 낙상예방 지침 예시 가. 일상 생활 시 낙상예방 수칙 1) 호출장치(또는 전화기) 도움이 필요할 때 직원이 부를 수 있도록 호출장치 사용법 설명	
		-	○ 낙상예방 포스터 추가	
	5.1 운영관리: 입퇴실 관리	○ 퇴실교육 체크리스트	○ 퇴실교육 체크리스트 - 퇴실을 퇴실로 수정 - 교육수행정도 삭제 - 퇴실 시 아기상태 추가	
	5.2 운영관리: 의료기관 연계·이송	○ 의료기관 이송 연계 지침	○ 의료기관 이송 연계 지침 - 이해를 돋기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를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로 각각 수정	
	5.3 운영관리: 문서관리	○ 산후조리원 근방 이송병원 및 전화번호 예시 ○ 문서 목록 예시 ○ 방문객 명부 ○ 방문객 손 위생을 위한 세면대 및 소독제 비치 예시	삭제 - 안내사항(질환유무, 인지여부) 삭제 삭제	
III. 운영과 질 관리	6.1 질 관리	○ 산후조리원 만족도 조사 예시	- 산후조리원에서 가능한 질 관리 작성 예시 추가	
	8.1 손 위생	○ 손 위생 지침 2. 손 위생이 필요한 상황 - 직원: 산모 접촉 전·후	○ 손 위생 지침 - '산모 접촉 전·후' 삭제	
	8.3 세탁물 관리	○ 세탁물 관리 지침 -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보관하는 전용 보관 장소를 마련한다	○ 세탁물 관리 지침 - 해당 내용 삭제	
	8.4 물품 소독·관리	○ 물품 소독·관리 지침 - 자불 소독 정상 신생아가 사용한 요람은 염속 소독제 100~150배 희석 또는 4급 암모늄 염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 -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사용한 요람은 염소계 소독제 (유효염소 1000ppm 이상)	○ 물품 소독·관리 지침 - '자불(열탕) 소독'으로 수정 - 소독제 희석에 대한 내용 삭제 -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사용한 요람은 염소계 소독제 (유효염소 1000ppm 이상) - '4급 암모늄 소독제는 세척제로는 우수 하지만, 면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 흡수되어 살균력이 저하된다' 삭제	
	8.5 환경관리	○ 환경관리 지침	○ 환경관리 지침 - '소독제를 분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소독제 성분을 흡입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소독제를 분무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추가 - 로타바이러스에 효과적인 소독제로 염소계 소독제(1000ppm) 제시	
IV. 감염예방 관리				

일시	대영역	소영역	변경 전	변경 후
5차	V.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8.6 급식관리	○ 급식관리 지침	○ 급식관리 지침 예시 - 소독제를 희석한다는 내용 삭제
		9.1 감염관리	○ 입실 시 신생아 건강기록부	○ 입실 시 신생아 건강기록부 - 아기의 지난 건강정보 중 수유방법(완전 모유, 혼합수유, 완전분유)에 대한 내용 추가
	12.1 부모교육	○ 부모교육 지침	○ 부모교육 지침 예시 - 부모교육 계획 수립 절차 추가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 산모 건강 관리 중 '성교 시기와 피임방법' 삭제	
	VI. 신생아 돌봄 서비스	13.1 신생아 확인	○ 신생아 확인 지침	○ 신생아 확인 지침 - 신생아 식별 방법 수정(동명 산모가 재 실할 경우 내용 추가)
		15.2 신생아 수유	○ 신생아 식별 정보 예시	○ 추가 식별 정보(테이프, 이름표 사진) 삭제
	I. 인력의 적정성과 전문성	1. 인력적절성	○ 종사자 관리현황 (2) - 작성방법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 대상으로 평가일로부터 최근 1년간 교육 이수 현황을 기재함	○ 종사자 관리현황 (2) - 연도별 자료이므로 해당 내용 삭제
		2.2 인력전문성: 종사자 교육개발	○ 연간교육계획서 1) 교육일시: 수시, 연내	○ 연간교육계획서 1) 교육일시: 수시, 연내 혹은 시행 월을 작성할 수 있음(예: 5월)
	II. 시설의 적정성과 안전성	4.3 낙상 예방관리	○ 낙상예방 지침 2. 직원교육 가. 간호 단위의 낙상예방 지침	○ 낙상예방 지침 예시 2. 직원교육 가. 낙상 예방 활동을 위한 지침
	IV. 감염예방 관리	8.1 손 위생	○ 손 위생 지침 1. 손 위생 관리체계 나.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마. 손 위생 수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한다.	○ 손 위생 지침 1. 손 위생 관리체계 나. 산후조리원 입구와 신생아실 입구에 세면대를 설치하고 직원, 산모, 산후조리원을 출입하는 방문객이 손 위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한다. 마. 직원은 정기적으로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바. 손 위생 수행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일시	대영역	소영역	변경 전	변경 후
			2. 손 위생이 필요한 상황 1) 산모 라) 모유/분유 준비 전후 2) 직원 마) 모유/분유 준비 전후 3. 손 위생 방법	2. 손 위생이 필요한 상황 1) 산모 라) 모유/분유 준비 전 (후 삭제) 2) 직원 마) 모유/분유 준비 전 (후 삭제) 3. 손 위생 수행방법 - 손 위생 수행방법의 기본원칙 및 방법에 대한 내용 추가 및 조정
			-	○ 손 위생 가이드라인 추가
	8.2 개인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용어정리: 개인보호구의 예시로 보안경 추가 1. 개인보호구 착용의 일반 원칙 - 개인보호구 착용 시점 및 관리 목록, 1회용 물품 사용 권장에 대한 내용 추가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추가
			-	○ 개인보호구 착용 가이드라인 추가
	8.3 세탁물 관리		○ 세탁물 관리 지침	○ 세탁물 관리 지침 - 세탁물 수집, 운반, 세탁, 보관 등에 대한 내용 추가 - 세탁물 취급 후 손 위생 수행 필요 추가 - 세탁물의 수집 및 운반, 세탁방법, 세탁물의 보관, 폐기물 관리 방법 수정
			-	○ 세탁물 관리 가이드라인 추가
	8.4 물품 소독·관리		○ 물품 소독·관리 지침	○ 물품 소독·관리 지침 - '소독제' 분무 지양과 관련된 내용 추가 - 각 주요물품별 관리방법 수정
			-	○ 물품 소독·관리 가이드라인 추가
	8.5 환경관리		○ 환경관리 지침	○ 환경관리 지침 - 환경관리 방법 중 환경청소 관련 내용 수정 - 환경소독제는 식약처 승인을 받은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추가 - 개인위생관리 중 산모 및 신생아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추가
			○ 환경 관리 가이드라인	○ 환경 관리 가이드라인 - 환경청소에 대한 내용 삭제
	8.6 급식관리		○ 급식관리 지침	○ 급식관리 지침 - 지침의 구성을 조리원 위생관리(건강검진 및 유증상자 관리, 복장준수, 조리원 손위), 조리원 위생상태 관리(조리원 환경 및 구연 관리, 식기 세정 및 소독 관리, 주방 물품 관리), 식재료 관리, 식수 관리로 구성 - 외부 위탁 시 관리에 대한 내용 삭제

일시	대영역	소영역	변경 전	변경 후
8.7 종사자관리	8.7 종사자관리		○ 급식 관리 가이드라인	○ 급식 관리 가이드라인 - 급식시설, 조리장 주방용품 관리, 외부 위탁 시 관리로 구성
			○ 종사자 관리 지침	○ 종사자 관리 지침 - 신규고용 및 근무 중 건강검진 내용 중 위장관 감염질환, 호흡기 감염질환, 전염성 안질환에 대한 내용 삭제 -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여부확인 내용 추가 - 신규고용 시 고용제한에 대한 내용 수정: 그 질병의 치료기간동안 근무를 제한하도록 수정 - 3. 감염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4. 감염 노출사고 및 감염병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내용 추가
			○ 종사자 위생관리 조치 및 점검표	○ 종사자 위생관리 조치 및 점검표 - '취사자'를 '조리원'으로 수정
9.1 감염관리	9.1 감염관리		○ 감염관리 지침	○ 감염관리 지침 -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문객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추가
			○ 모자동실 운영 지침	○ 모자동실 운영 지침 - 모아애착 증진활동에 모유수유와 모자동실 사용 교육이 포함되므로 3. 모아애착 증진 활동 서식 작성에 대한 내용에 교육 관련 내용 추가
VI. 산모 돌봄 서비스 및 부모교육	11.1 모아애착: 모유수유, 모자동실		○ 신생아 안전관리 지침	○ 신생아 안전관리 지침 - 신생아 안전관리 체계 중 신생아 출생 정보의 내용에서 출생 시 몸무게에 대한 내용 삭제 - 신생아 안전관리를 건강관리인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받는다는 내용 추가

나. 최종 확정된 규정 및 서식 목록

계획했던 대부분의 규정 및 서식을 개발하였다. 다만 개발할 경우 현장에서 업무과부화 우려가 있는 자위소방대 조직표, 방문객 감염예방 교육자료,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결과, 균거서류,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균거서류, 공용시설 관리 점검표 등은 현장의견을 수용하여 개발하지 않거나 최종 목록에서는 제외하였다.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서, 낙상예방 점검표, 퇴실교육 체크리스트,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내용, 입실 시 신생아 기록부 등은 전문가 또는 현장 요구로 추가 개발하였다. 최종 개발 완료된 규정 및 서식 내역, 개발여부 등은 아래 표에 제시하였다.

〈표 III-4-2〉 최종 확정된 규정 및 서식 목록

증명역	소영역	개발 계획 목록 및 개발 여부		최종 개발 규정 및 서식
1. 인력 적정성	1.1 인력 적정성	- 종사자 근무표	개발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의 인력 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법기준 제시) - 산후조리원 종사자 근무표 - 종사자 관리대장 -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 신생아 입실자료
		- 종사자 관리대장	개발완료	
		-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개발완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대보험 확인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식	
		- 신생아 입실자료	개발완료	
2. 인력 전문성	2.1 종사자 채용·유지	- 인사관리 규정	개발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관리 규정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현장요구로 추가 개발) - 종사자 보안각서(현장요구로 추가 개발) - 직무기술서 - 신규 채용 직원 결격 사유 조회 요청서(전문가 및 복지부 필요서식으로 추가)
		- 인사정보 관리 서류	종사자 근무표 및 관리대장으로 갈음	
		- 종사자 명부, 임용서류	종사자 근무표 및 관리대장으로 갈음	
		- 자격/면허 갱신 관리 서류	종사자 근무표 및 관리대장으로 갈음	
		- 직무기술서	개발완료	
	2.2 종사자 교육·계발	- 연간 교육계획서	개발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교육 지침 - 연간 교육계획서 - 교육일지 -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내용(현장요구로 추가 개발)
		- 교육 이수 근거서류	교육일지 개발	
	2.3 종사자 간 의사소통	- 근무교대 시 정보공유를 위한 규정	근무교대 지침 및 근무교대 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교대 지침 - 근무교대 일지(가로형, 세로형)
		-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부	신생아 돌봄, 산모 돌봄 영역에 있음	
3. 시설 적정성	3.1 시설 적정성	- 산후조리원 도면	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	- 산후조리원의 시설 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법기준 제시)
4. 시설 안전성	4.1 설비관리	-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규정, 계획	개발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및 환경 안전관리 지침 - 시설 및 환경 안전 자체 점검표
		- 전기, 가스, 급수설비 안전점검 근거	시설 및 환경안전 자체 점검표 개발	
		- 실내공기질 측정검사 근거서류	위탁업체가 양식제공	
	4.2 소방안전 관리	-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발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안전관리 규정 -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소방계획서 (화재예방점검계획)	현장의견 수용 미개발	
		- 안전점검 근거서류	법정서식 활용	
		- 비상대응조직 (자위소방대)	현장의견 수용 미개발	
		- 소방안전 교육 이수 증명서	다른 직무교육과 공통양식 개발	
		- 소방훈련 근거서류	다른 직무교육과 공통양식	
		-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안전점검 근거서류와 동일	

중영역	소영역		개발 계획 목록 및 개발 여부		최종 개발 규정 및 서식	
5. 운영 관리	4.3	낙상예방 관리	- 낙상예방 규정	개발완료	- 낙상예방 지침 - 낙상예방 점검표(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개발) - 낙상예방 포스터(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개발)	
			- 낙상예방 교육 근거서류	다른 직무교육과 공통양식		
	5.1	입·퇴실 관리	- 입·퇴실 관리	개발완료	- 입·퇴실 관리 지침 - 퇴실교육 체크리스트(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개발)	
			- 책임보험가입증서	보험사 제공	- 입실 안내문(현장요구로 개발) - 입실 시 고객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개인정보보호법으로 추가)	
	5.2	의료기관 연계·이송	- 의료기관 연계·이송 지침(절차)	개발완료	- 의료기관 이송 연계 지침 - 의료기관 이송보고서	
			- 연계의료기관 협약서	자체서식 활용	-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 임산부(산모)·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결과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자료	개발완료		
	5.3	문서관리	- 문서관리 규정	개발완료	- 문서관리 지침	
	5.4	방문객관리	- 방문객 관리 규정	개발완료	- 방문객 관리 지침 -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 방문객 명부	개발완료	- 방문객 명부(예시)	
			- 방문객 감염예방 교육자료	현장의견 수용 미개발		
6. 질 관리	6.1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 질 관리 활동 및 만족도 조사 계획서	개발완료	-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지침 - 만족도 조사 설문지	
			- 질 관리 조사자료, 조사 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	현장의견 수용 미개발		
			- 만족도 조사자료, 조사결과, 개선활동 근거서류	만족도 조사 설문지 개발		
			-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 절차 및 근거서류	현장의견 수용 미개발		
7. 경영 관리	7.1	리더십 및 조직문화	- 리더십 및 조직문화 지침	개발완료	- 리더십 및 조직문화 지침	
	8.1	손 위생	- 손 위생 규정	개발완료	- 손 위생 지침	
			- 손 위생 물품 구매 (입고)내역서	지침 설명으로 대체		
	8.2	개인 보호구 착용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개발완료	- 개인보호구 착용 지침	
	8.3	세탁물 관리	- 세탁물 관리 규정	개발완료	- 세탁물 관리 지침	
	8.4	물품 소독·관리	- 기구 및 물품관리 규정	개발완료	- 물품 소독 관리 지침 - 신생아실 소독 점검표	
			- 신생아 요람 소독 일지	신생아실 소독 점검표로 개발		
	8.5	환경관리	- 환경위생 관리 규정	개발완료	- 환경관리 지침 -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 공용시설 관리 점검표	미개발		
			- 소독관련 기록대장	개발완료		
			- 사용 중인 환경소독제 인증서, 사용설명서	미개발		
	8.6	급식관리	- 조리장 위생관리 규정	급식관리 지침으로 대체 개발	- 급식관리 지침	
			- 식재료 검수일지	현장의견 수용 미개발		

중영역	소영역	개발 계획 목록 및 개발 여부		최종 개발 규정 및 서식
8.7	종사자 관리	- 냉장/냉동고 온도 관리 기록지	현장의견 수용 미개발	
		- 직원안전 규정	종사자 관리지침으로 개발	- 종사자 관리 지침 -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 감염노출사고 및 감염병 질환 발생 시 대처방안 교육 근거자료	교육일지 등 활용	
9. 감염 관리	9.1 감염관리	- 감염성 질환 발생 시 관리지	개발완료	- 감염관리 지침 - 입실 시 신생아 기록부(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개발) -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법정 서식 - 신생아 건강기록부
		- 의료기관 이송 및 보고 자료	개발완료	
		- 신생아 건강기록부	개발완료	
10. 산모 건강 평가	10.1 산모 건강평가	- 산모 건강기록부	개발완료	- 건강기록부의 관리(모자보건법 시행규칙)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법정 서식 - 산후우울증 검사 설문지(전문가 의견 반영하여 추가)
11. 모아 애착	11.1 모자동실 모유수유	- 모아애착을 위한 계획서	모자동실 운영지침으로 개발	- 모자동실 운영 지침 - 모아애착 증진 서식
		- 모자동실 촉진 교육 근거자료	공통 교육양식 활용	
		- 모유수유 촉진 교육 근거자료	공통 교육양식 활용	
12. 부모 교육	12.1 부모교육	- 산모 교육 계획	현장의견 수용 미개발	- 부모교육 지침 - 부모교육 체크리스트
		- 교육자료	지침에 안내	
		- 교육이수기록지	공통 교육양식 활용	
		- 강의료 지불 영수증	해당 되는 경우	
13. 신생아 확인	13.1 신생아 확인	- 신생아 식별 규정	개발완료	- 신생아 확인 지침
14. 신생아 건강 평가	14.1 신생아 건강평가	- 신생아 건강평가 지침	개발완료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모자보건법, 법기준 제시) - 신생아 건강평가 지침
15. 신생아 관리	15.1 위생관리	-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개발완료	- 신생아 위생관리 지침
	15.2 신생아 수유	- 수유관리 규정	개발완료	- 신생아 수유 지침
	15.3 안전관리	- 신생아 안전관리 규정	개발완료	- 신생아 안전관리 지침

IV

산후조리원 교육자료 개발

- 01 교육자료 콘텐츠 개요 및 내용 구성
- 02 교육자료 개발 과정
- 03 교육자료 예시

IV. 산후조리원 교육자료 개발

1. 교육자료 콘텐츠 개요 및 내용 구성

산후조리원 교육자료는 모자모건법 개정(2019.01.15)으로 인해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이 산후조리업자에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었다. 기존 산후조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집체교육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24시간 3교대로 운영되는 산후조리원의 실정을 고려할 때 종사자 대상 집체교육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를 직접 접촉하는 건강관리인력을 위한 사이버교육 자료를 개발하였다. 건강관리인력을 위한 사이버교육은 기존 산후조리업자 집체교육의 주제인 감염관리와 안전관리를 축으로 하여 총 8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강의제목 및 강의 내용은 <표 IV-1-1>과 같다.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는 조리업자 교육 내용과 맥을 같이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IV-1-1>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사이버교육 및 조리업자 집체교육 자료 콘텐츠 개요

주제	차시	강의 제목	강의 내용
감염관리	1	감염관리체계	- 감염관리의 목적,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한 실천 등
	2	감염관리 실무 1	- 손 위생, 모자동실, 방문객관리, 감염사정, 유행관리 등
	3	감염관리 실무 2	- 급식관리, 물품관리, 환경관리, 세탁물과 폐기물관리 등
	4	신생아 감염관리 1	- 신생아 감염의 특성, 감염의 전파 경로, 위장관 감염 질환, 전염성 피부 질환 및 전염성 안질환 등
	5	신생아 감염관리 2	- 호흡기 감염 질환, 공기전파 감염 질환 등
	6	산모 감염 예방과 관리	- 산욕기 감염의 특성, 산모 교육, 유방 관리 및 회음부 관리 등
안전관리	7	안전관리 1	- 산모 안전관리, 신생아 안전관리, 낙상 등
	8	안전관리 2	- 화재안전, 비상대피요령 및 방법 등

건강관리인력 외 미화·조리·행정 인력 등 기타 종사자에 대한 감염 예방 관련 교육 또한 필요하기에 조리업자가 각 산후조리원에서 기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하였다. 본 자료의 내용은 감염의 정의 및 목적, 환경관리, 화재 및 안전관리, 급식 관리, 세탁물 관리로 구성되었으며, 해당 종사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감염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표 IV-1-2〉 미화·조리·행정 인력 등 기타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개요

주제	영역	내용
감염 및 안전관리	1	감염의 정의 및 목적
	2	환경관리
	3	화재 및 안전관리
	4	급식 관리
	5	세탁물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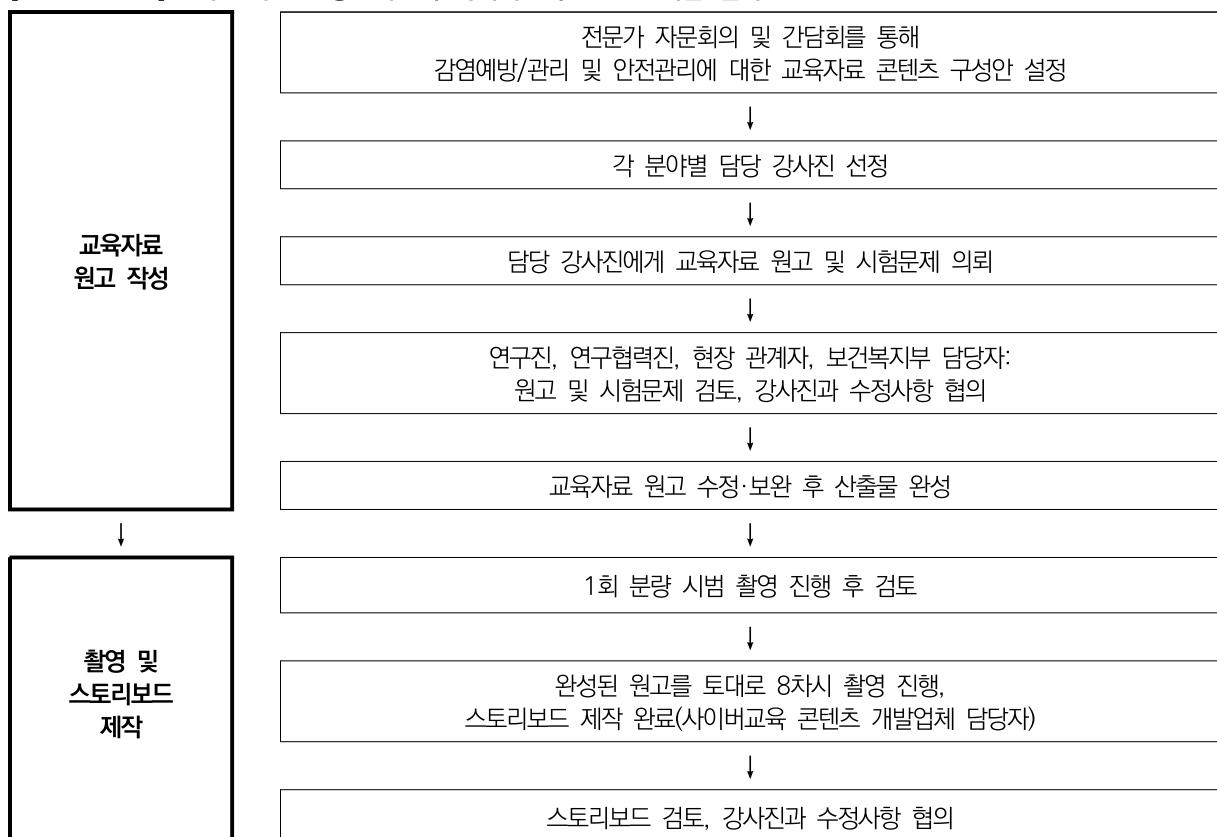
2. 교육자료 개발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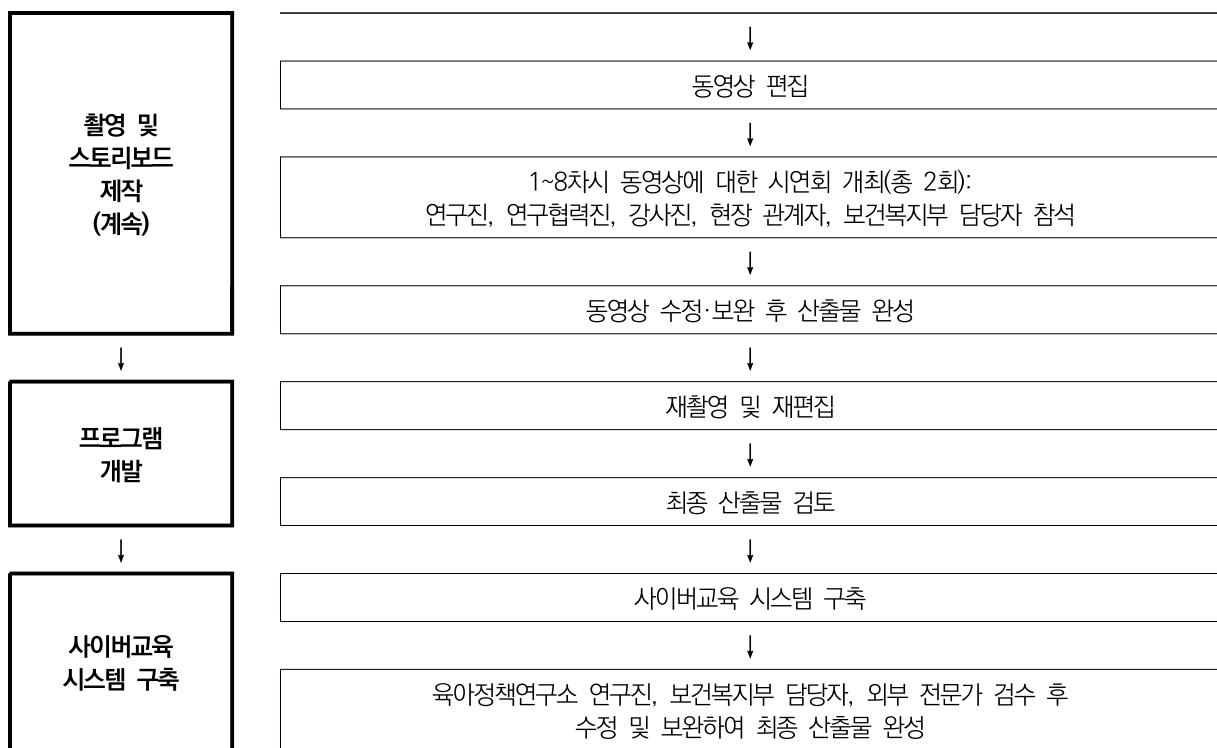
가.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 개발

1) 개발 절차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사이버교육 자료는 원고 작성, 촬영 및 스토리보드 제작, 프로그램 개발,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의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구체적인 콘텐츠 개발 절차는 〈그림 IV-2-1〉과 같다.

〔그림 IV-2-1〕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사이버교육 콘텐츠 개발 절차





2) 교육자료 차시별 추가 및 삭제사항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는 연구진과 연구협력진의 1차 검토와 현장 관계자의 서면 검토 및 동영상 시연회 검토를 통해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하였다. 구체적인 검토 내용과 수정 및 반영 사항은 <표 IV-2-1>과 같다.

<표 IV-2-1>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 현장검토 및 동영상 시연회 검토 내용과 수정사항

차시	구분	검토 의견	반영 여부	수정 및 반영 사항 (미반영 시 미반영한 사유)
1차시 감염관리 체계	현장검토	- 내용 목차 수정	반영	- 내용 목차를 ‘감염의 정의-목적-현황-관리방법’으로 수정
	현장검토	-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수정	반영	- ‘병원성 미생물의 체내 유입’을 ‘병원성 미생물에 감염’으로 수정
	시연회	- 분유수유율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을. 한국 모유수유율은 1970년대 이후 분유보급으로 감소하였지만 모유에 대한 우수성 홍보 등으로 2000년 이후 모유수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반영	- 자료는 그대로 하고 강의 시 해당 내용 반영하여 설명
	시연회	- 2018년 신생아 감염 숫자에서, 동일 연령대 전국 기준 RSV 및 로타, 감기 환자의 발병 현황과 비교해보면 산후조리원 발현 숫자가 그리 높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산후조리원에서만 발현이 많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됨	반영	- 자료는 그대로 하고 강의 시 해당 내용 반영하여 설명

차시	구분	검토 의견	반영 여부	수정 및 반영 사항 (미반영 시 미반영한 사유)
2차시 감염관리 실무1	시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인력의 역할은 모자보건법 시행 규칙에 기술되어 있는데, 모자보건법에서 정의된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오해를 줄 수 있음 - 건강관리인력과 산후조리업자의 책임과 역할 구분 필요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근거하여 내용 수정 - 산모와 가족 교육, 방문객 감염관리 교육을 '산후조리업자가 위임하여 실시하는 교육'으로 분류
	시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관리인력 신규 입사자의 경우, 위장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안과 질환에 대해서는 별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아님. 해당 질환이 발현되어 있을 시 근무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중독여부 확인 내용 추가 	반영	-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재정리함
	시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환자는 근무 자체를 제한해야 하며, 기타 질환자는 영유아, 산모와 접촉하는 근무를 제한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에서 감염병 질환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의 치료기간동안 근무 제한'으로 수정·보완함
	시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 중 건강검진 내용으로 위장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안과 질환, 잠복결핵은 잘못된 내용임 	반영	- 해당 내용 삭제
	시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가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환자로 진단 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해야 함. 종사자의 감염병 관련 진단 내용을 산후조리업자에게 미보고 시 과태료가 부가됨 설명 필요 	반영	- 해당 내용 추가
	시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보호구 착용에서 개인보호구로서 일회용 가운을 특정하고 있는데 다수의 산후조리원은 일회용이 아닌 반복 사용이 가능한 가운을 구비하고 있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용 가운을 사용하거나 반복 사용하는 가운은 반드시 소독을 해서 사용해야 하나 포괄적으로 가운으로 변경
	현장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과 동영상 추가를 통해 교육 효과 향상 가능함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 씻기 동영상 삽입 - 산후조리원 내 세면대 옆 손 씻기 홍보물 및 면회 공간 내 손 위생 홍보물 부착사진 추가
	현장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되도록', '가급적' 표현이 애매모호함. 근무자에 따라 상황 판단이 다를 경우 2차 감염환자가 발생 가능함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후조리업협회에서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다 완곡하게 표현하기를 원함
	시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사정 기록지 및 환경관리 체크리스트를 화면에 보여주면 좋을 듯함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사정 기록지와 환경관리 체크리스트 서식은 법정 서식이 아님. 예시로 보여준다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오해 가능하므로 추가하지 않음
	시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원 유입 차단을 위해 신생아, 산모, 보호자의 감염병 관리가 필요함. 산후조리원 입실 전 신생아, 산모, 보호자 건강 사정에 대한 내용 추가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의 내용과 동일 - 보호자 건강사정에 대한 서식 없음
	시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에서, 의료기관 이송 시 누가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산후조리업자, 건강관리책임자)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항은 산후조리업자가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시행해야 할 사항임

차시	구분	검토 의견	반영 여부	수정 및 반영 사항 (미반영 시 미반영한 사유)
3차시 감염관리 실무2	현장검토	- 공용쿠션 소독관리 방법 제시	반영	- 수유쿠션 세탁(주 1회) 내용 추가
	시연회	- '먹다 남은 모유는 즉시 버려야 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음. 초유는 즉시 버리지 않고 1시간 이내까지는 사용할 수 있음. 분유는 즉시 버리는 것이 맞음	미반영	- 분유보다는 덜 하기는 하지만, 먹다 남은 모유도 침과 섞이면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음. 한 시간 이내에 미생물이 증식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초유로 한정해서 말할 수 없음
	시연회	- 냉장고 온도 관리에서 정확한 온도를 언급하면 좋겠음	미반영	- HACCP 가이드라인에서도 냉장고의 적정한 온도로 10°C 이하로만 제시하고 있어 정확한 온도를 제시하기는 어려움
	시연회	- 수유 관리를 급식관리 소주제 안에 포함시켰는데, 수유관리가 급식관리 안에 들어가는 내용인지 고민 필요함	반영	- 급식관리, 수유관리 나누기로 함
	시연회	- 산후조리원에서 물품별로 소독 수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면 좋겠음	미반영	- 일반적인 소독방법이 제시되었고, 젖병 소독방법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독방법이 언급되었으므로 산후조리원에 따라 적용이 필요함
	시연회	- 낮은/중간/높은 수준의 소독제 설명 시 락스 외 제품명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함. 알코올, 염소계 소독제, 4급 암모늄제 등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함	반영	- 제품명 언급 부분 삭제
	시연회	- 물품관리 세척과정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지? 앞치마, 장갑, 마스크 필수 착용은 의료기구 세척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산후조리원의 일반적인 물품 세척을 의료기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 필요	미반영	- 세척 시 보호구 착용은 직원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차감염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감염관리학회에 질의한 결과 산후조리원에서도 신생아의 교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답변 받음
	시연회	- 알코올의 장점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음	반영	- 해당 내용 반영하여 삭제
	시연회	- 자불소독 방법 설명 시 중요한 내용(소독 시간) 누락	반영	- '물을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여 물이 끓은 후 5분간 더 끓인다.'는 내용 추가
	시연회	- 좌욕기 소독 방법 추가	반영	- 해당 내용 추가(매일 1회 이상 소독, 3분간 담그는 것 권장)
4차시 신생아 감염관리1	현장검토	- 질환별 예방방법 및 손 씻기를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좋을 듯함	반영	- 위장관 감염질환의 예방방법은 간단한 그림으로 구연 예정 - 질병관리본부의 손 씻기 동영상 삽입
	현장검토	- 4주 신생아 기간에 주로 관찰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 지식 필요 예) 신생아 트림을 왜 시켜야 하는지, 눈꼽, 황달, 태열 등	반영	- 강의 시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전달
	시연회	- 배변 관리하는 곳(기저귀 교환) 관리방법 추가	미반영	- 환경관리 파트에 해당하는 내용임
	시연회	- 로타바이러스 설명에서, 접촉 질환 예방방법 내용 추가(일상적인 소독-문고리, 주변 닦이 등)	미반영	- 환경관리 파트와 중복되는 내용임
	시연회	- 로타 무증상 질환자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내용 추가	미반영	- 로타 무증상 환자에 대한 내용은 너무 광범위하여 다 다루기 어려움

차시	구분	검토 의견	반영 여부	수정 및 반영 사항 (미반영 시 미반영한 사유)
5차시 신생아 감염관리2	시연회	- 한 아기 당 하나의 대야를 사용하는 것이 지침임. 구체적으로 목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추가	미반영	- 3차시 감염관리실무2와 중복되는 내용
	시연회	- 건강관리인력이 감염병 의심 증상 진단 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개정 모자보건법 내용 추가	미반영	- 1차시 감염관리체계와 중복되는 내용
	현장검토	- 질환별 예방법을 조금 더 강조하면 좋을 듯함. 질환 발생 시 대응체계의 중요성 강조	반영	- 호흡기 감염질환 및 공기전파 감염질환 발생 시 대응 체계 및 대처 방안에 대해서 강의 시 강조
	현장검토	- RSV, 결핵, 인플루엔자 등 신생아 감염 시 위험성에 대한 중요성 강조	반영	- 강의 시 강조
6차시 산모 감염관리	시연회	- 산후조리원에서 RSV 예방을 위해서는 1차 감염자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 추가	미반영	- 1차 감염자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언급하기는 어려움
	시연회	- '전염병' → '감염병'으로 모두 수정	반영	- 해당 내용 수정
	현장검토	- 분만~분만 후 6주 동안 발생하는 생식기 감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나눠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듯 함	반영	- 감염 부위에 따라 산모감염을 나누어 설명 - 호흡기, 위장관, 피부, 안과 질환, 유방농양 등에 따른 관리 방법 내용 추가
	현장검토	- 'let-down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문장을 조금 더 쉬운 문장으로 제시	반영	-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감염 유방부터 수유하는 것이 사출반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로 수정 - 사출반사에 대한 설명 추가
	현장검토	- 좌욕 시 꼭 청결제를 사용해야 하는지, 사용한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 안내	반영	- '좌욕 시 반드시 청결제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미지근한 물로 좌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내용 추가
7차시 안전관리1	현장검토	- 시각자료를 보여주면 좋을듯함	반영	- 여성 생식기 구조 및 유선염의 증상에 그림 삽입
	현장검토	- 감염병 이환 및 치료시 직수와 관련한 내용 추가	반영	- 산욕기 감염 시 모유수유 기능 여부 및 방법에 대한 내용 추가
	시연회	- 산모 건강상태 확인사항 정리하여 제시 (입, 퇴실 시, 재원 시: 활력징후, 하혈 유무, 유방통증, 부종, 대소변, 산후우울 등 체크) - 산후우울증 평가 시 점수에 따라 의료기관 이송 권고	반영	- 산모 건강기록부에 포함된 사항임
	시연회	- 기록지가 크고 선명하게 보이도록 수정	반영	- 해당 내용 수정
	현장검토	- 저혈압 증상 발현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요령 제시	반영	- 해당 내용 추가('증상 발현 시 즉시 복대나 브래지어 등을 풀어주고 머리를 낮추고 자리에 눕힌다.)
	현장검토	- 오로 양상 내용 추가 - 하혈의 기준 제시(10분 이내에 패드가 젓는다)	부분 반영	- 오로 양상 추가 - 하혈의 기준이 '10분 이내에 패드가 젓는다'는 정의는 없음
	현장검토	- 부종에 대한 점검 내용 및 예방 방법 추가	반영	- 해당 내용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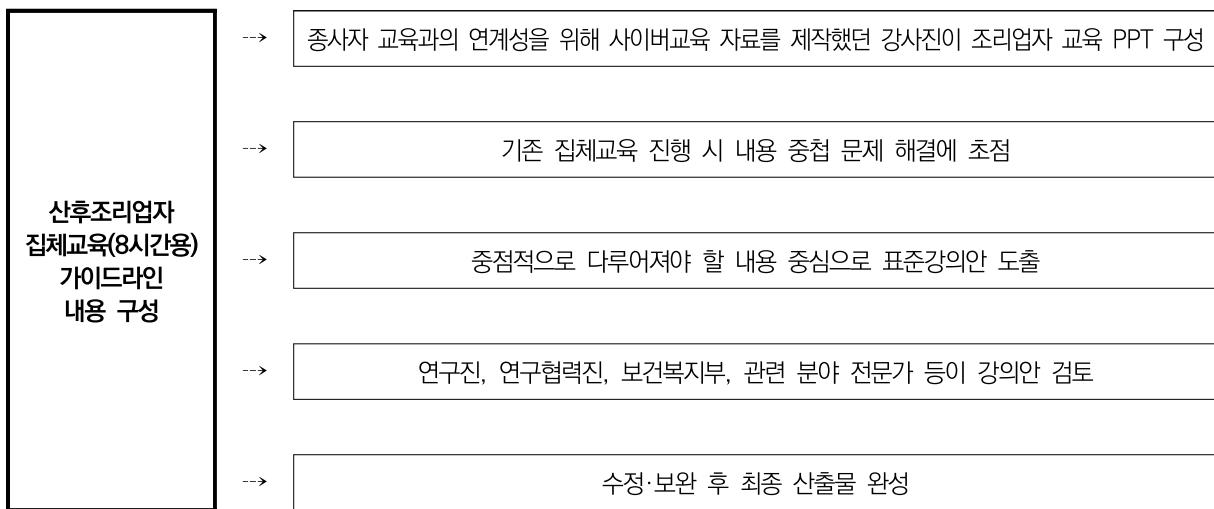
차시	구분	검토 의견	반영 여부	수정 및 반영 사항 (미반영 시 미반영한 사유)
8차시 안전관리2	현장검토	- 산모 고열의 원인 및 예방방법 추가	미반영	- 산모 고열 파트 삭제
	현장검토	- 내년부터 변경되는 임산부 건강기록부 양식에 대한 설명 추가. 의무적으로 매일 체크해야 하는 항목(출혈, 체온, 혈압, 유방통증, 부종)에 대해 안내하고 건강관리인력이 매일 기록하고 건강관리책임자가 확인 서명을 해야 하는 사항 설명	반영	- 2019년 산후조리원 관리운영편람에서 제시된 임산부 건강기록부에는 출혈, 체온, 혈압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것으로 제시됨. 특이사항에 유방통증이나 부종의 정도를 추가 기입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설명 예정
	현장검토	- 자동 혈압계 측정한 혈압의 결과치가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정 시간 후 재측정, 수은 혈압계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등의 안내가 있어야 할 것 같음. 혈압 측정값의 오류를 막기 위한 혈압 측정 시 주의사항 안내 필요	미반영	- 자동 혈압계를 측정한 혈압의 결과치가 이상 있을 경우에는 일정 시간 후 재측정은 강의 중 설명을 추가. 수은 혈압계로 다시 측정하는 여부는 산후조리원에서 수은혈압계 사용을 권고할 정도의 의료기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미반영
	현장검토	- 산모의 이송 기준 시점에 대한 정리 및 안내가 필요. 하혈이 지속될 경우 이송하는 것 이외에 다른 증상에서 이송 기준 시점이 정의되면 좋겠음	반영	-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의 규정에 있는 내용을 첨부
	현장검토	- 신생아 고열 시 따뜻한 물수건 → 미온의 물수건으로 수정	미반영	- 동영상에 제시된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 따뜻함으로 통일
	현장검토	- 역류와 구토의 기준을 설명 예) 역류: 잦은 역류의 양상 및 체중 측정, 관리 구토: 병원 방문 기준	반영	- 해당 내용 추가
	현장검토	- 이상변 예시 제시	반영	- 모유변, 설사 등의 예시 추가
	현장검토	- 영아 돌연사 예방에 관련된 교육 추가	반영	-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정의 및 예방방법 추가
	현장검토	- 신생아 탈수를 감지할 수 있는 증상 및 대처법, 이송 가이드라인 추가	미반영	- 구체적인 세부기준으로 제시 불가능하며 이는 의료기관을 준하는 것이 아니라 탈수가 발생할 수 있는 구토나 설사가 지속되는 경우 즉시 병원으로 이송조치해야 함 - 강의록에 신생아 구토 슬라이드에 '탈수주의!!'라는 설명 추가
	현장검토	- 하임리히법 영상 최신 자료로 변경 필요	반영	- 최신자료로 반영
	현장검토	- 신생아 및 산모의 낙상 시 응급처치 방법을 구분해서 설명	미반영	- 신생아 낙상은 즉시 이송조치해야 하고, 이는 강의 시 설명
8차시 안전관리2	현장검토	- 강의자료 초반에 통계치에 기반한 화재유형(부주의, 전기적화재, 기계적화재)이나 화재에 따른 상해유형 등(고온의 열, 연기, 유해가스 등)을 소개하여 경각심 유발 가능	반영	- 해당 내용 반영: 발화요인에 따른 화재건수 비교
	현장검토	- 화재유형(A, B, C, K급 정도)에 대한 교육이 추가하면 화재원과 소화방법을 차별화하여 언급 가능	반영	- 해당 내용 반영
	현장검토	- 불연, 난연재 등 산후조리원 방연재 사용 및 확인 방법 등을 교육 내용 추가	반영	- 해당 내용 추가(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

차시	구분	검토 의견	반영 여부	수정 및 반영 사항 (미반영 시 미반영한 사유)
	현장검토	- 용접 화재에 대한 부분은 산후조리원 종사자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내용으로 보여짐	반영	- 해당 내용 삭제
	현장검토	- 문어발식 유형 사진과 안전 스위치가 있는 콘센트 사용에 대한 사진 추가	반영	- 사진 추가
	현장검토	- 소화기 교체시기와 매월 점검 방법에 대한 사진 제시	반영	- 소화기 사용법 및 점검방법과 관련된 사진 추가
	현장검토	-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른 화재 발생 시 역할 별 담당자 지정과 해당 역할 수행에 대한 설명 보완	반영	- 해당 내용 추가(간호사 역할 등)
	현장검토	-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에서 산모, 신생아 대피 시 주의사항 추가(외부 환경으로의 노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쌔개 및 얼굴 가리개 조치 등, 거동이 불편한 산모의 경우와 거동 가능한 산모, 신생아 이송은 산모가 직접 이송, 신생아 이송 조끼 사용법 안내 등)	반영	- 산후조리원 안전 준수사항 및 화재 시 인명대피 유도요령 추가
	현장검토	- 산후조리원 평가(시설안정성_소방안전관리)에서 요구하고 있는 화재예방안전관리 점검표 내용 설명 추가	반영	- 시설 안전점검표 내용 추가
	현장검토	- 산후조리원 산모 및 방문객 입출현황, 소방시설 보유현황, 유지보수점검 내역 등 소방안전관리 자료 작성 및 보유에 대한 필요성 교육 추가	반영	- 강의 시 강조
	현장검토	- 산모 및 유아에 특화된 피난도구 및 장비(시설) 등을 소개	반영	- 산후조리원에 적용 가능한 승강식 피난기구 내용 있음
	현장검토	- 자위소방대 구성에 있어, 책임자와 종사자, 그리고 산후조리원 내 산모와 신생아까지, 대피과정에서의 역할 및 책임소재를 보다 산후조리원에 맞춰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대피매뉴얼을 개발(책임자 연락처 등 비상망, 환자주소록, 옥내외 방송 및 상황 전파, 대피지원, 피난확인 등)하고 수록하는 것이 요구됨	반영	- 자위소방대 편성표 및 조직, 임무 등에 대한 내용 추가
	현장검토	- 지진 대피요령을 산후조리원 특화 사례로 교체하는 것이 교육에 효과적으로 보임	반영	- 지진 행동매뉴얼 내용 추가
	현장검토	- 사진 중에 훈련 사진이라도 웃고 있는 사진은 부적절해 보임. 웃고 있는 사진은 삭제	반영	- 해당 사진 삭제

나. 산후조리원 조리업자 집체교육 가이드라인 자료 개발 과정

가이드라인 자료는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조리업자 대상 집체교육의 차시별 내용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기존 강사진의 자료를 토대로 조리업자 집체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표준강의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자료는 연구진, 연구협력진 및 감염 및 안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하여 최종 산출물을 완성하였다.

[그림 IV-2-2] 산후조리원 조리업자 집체교육 가이드라인 PPT 제작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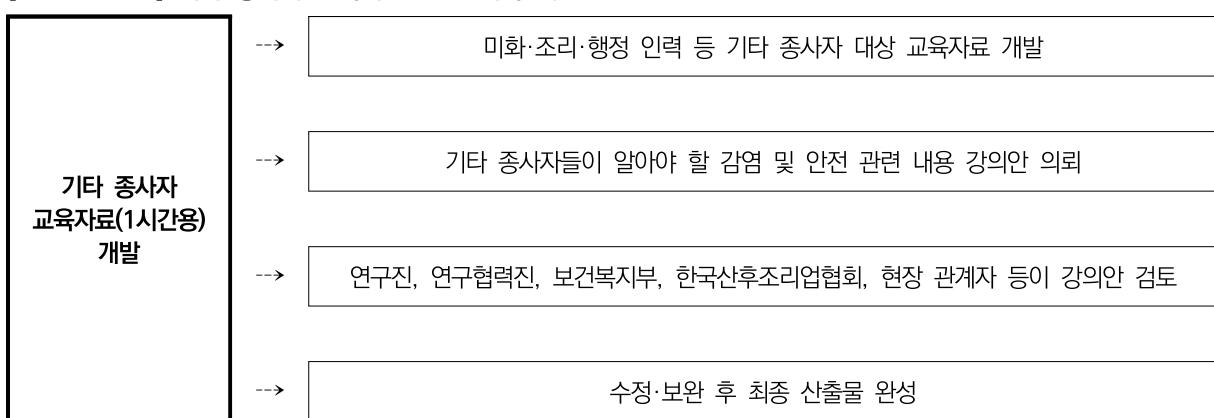


다. 기타 종사자 교육자료 개발 과정

1) 교육자료 제작 개요

미화·조리·행정 인력 등 기타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는 해당 종사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감염 예방과 안전관리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본 교육자료는 전국 산후조리원에 배포되어 산후조리원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과 이해를 돋는 이미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 종사자 교육자료 제작 개요는 <그림 IV-2-3>과 같다.

[그림 IV-2-3] 기타 종사자 교육자료 PPT 제작 개요



2) 교육자료 내용 관련 추가 및 삭제사항

기타 종사자 교육자료는 산후조리원 현장 사용의 실효성 및 편의성을 위해 현장 관계자의 검토와 수정 작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였다. 현장의 검토 의견 및 수정 사항은 <표 IV-2-2>와 같다.

〈표 IV-2-2〉 기타 종사자 교육자료 현장 검토 내용 및 수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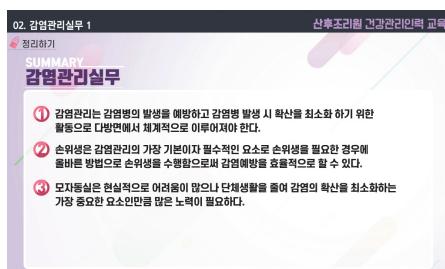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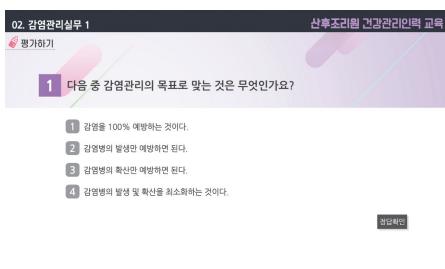
구분	검토 의견	수정 및 반영 사항
전체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본 교육 자료를 갖고 기타 종사자에게 교육을 할 때 강조할 부분 또는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표시 필요	- 필요한 경우, 슬라이드 노트에 강조할 사항이나 추가 설명 내용 추가
환경관리	- 염소계 표백제 희석 방법 및 원액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필요	- 락스는 찬물에 희석하고 원액과 희석액은 개봉일시를 적어서 관리한다는 내용 추가
화재 및 안전관리	- 화재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화재 및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화재 발생 시 신고 체계, 대응체계, 소화기구, 피난체계, 화재 대비 지켜야 할 사항, 낙상을 위한 안전관리, 시설 환경을 위한 안전관리) 추가
세탁물 관리	- 세탁물 운반 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필요	- 세탁물을 운반할 때에는 주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밀봉하거나 뚜껑을 덮어 운반한다는 내용 추가 - 세탁물 수집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세탁물을 분류하거나 털지 않는다는 내용 추가

3. 교육자료 예시

교육자료별 예시를 살펴보면 〈표 IV-3-1〉과 같다.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의 차시별 구성은 ‘인트로-동기유발/학습목표-학습내용-학습정리-평가’로 되어 있으며, 차시별 30분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 차시별 예시는 〈표 IV-3-2〉에 제시하였다. 산후조리업자 집체교육 가이드라인 자료는 각 차시별 중점 학습내용과 학습내용별 주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강조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해설 부분에 그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미화·조리·행정 인력 등 기타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는 산후조리원에서의 원활한 자체 진행을 위해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슬라이드 노트에 이해를 높기 위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표 IV-3-1〉 교육자료별 예시

교육자료	예시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	 인트로	 동기유발

교육자료	예시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정리	평가
산후조리원 조리업자 집체교육 가이드라인 자료	<p>산모 감염 예방과 관리</p> <p>학습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육기 감염의 특성 ◦ 산모교육 ◦ 유방관리 ◦ 회음부관리 <p>메모: 2018년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보건복지부) 중 산모 감염 예방과 관리 바드 부분 순서대로 구성함</p>	<p>산육기 감염의 특성</p>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육기 감염의 정의 및 역학 • 일반적인 산육기 감염 예방·방지 • 회음부 감염 • 제왕절개 수술상처 감염 • 자궁내막증 및 골반분비와 질염 • 혈전성 청색증 • 베노기개 감염 • 유방염 • 산육기 감염 치료와 모유 수유 <p>• 배경</p> <p>여기 산육기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산육기 감염 예방방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산육기 감염은 여성 골반 생식기의 해부학적 구조와 감염 부위에 따라 분류되며, 베노기개 감염과 유방염은 생식기 감염은 아닙니다만, 산육기 혼란 감염 중 하나입니다.</p>
기타 종사자 교육자료		<p>PART 1 감염의 정의 및 목적</p> <p>PART 2 환경관리</p> <p>PART 3 화재 및 안전관리</p> <p>PART 4 급식 관리</p> <p>PART 5 세탁물 관리</p> <p>CONTENTS</p>

〈표 IV-3-2〉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 차시별 예시

교육자료	차시	강의 제목	예시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	1차시	감염관리 체계	
	2차시	감염관리 실무 1	
	3차시	감염관리 실무 2	
	4차시	신생아 감염관리 1	
	5차시	신생아 감염관리 2	

교육자료	차시	강의 제목	예시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교육자료	6차시	산모 감염 예방과 관리	
	7차시	안전관리 1	
	8차시	안전관리 2	

V

향후 활용 방안

01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활용 방향

02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활용 방안

V. 향후 활용 방안

1.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활용 방향

본 연구에서 개발된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 자료는 모두 현장에서의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제작되고 개발되었다. 이에 향후 현장에서의 사용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있지만, 현장에서의 수용성 및 활용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활용 방향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가.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활용 방향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현장에서의 접근성과 활용 용이성을 위해서 중요한 필요 서식 및 점수 계산 등이 필요한 서식 등을 앱 개발을 통하여 발전시켜 나가기를 제안 한다.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사업 및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현장에서의 평가 인력 부재와 컴퓨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연령이 높은 인력이 많아서 산후조리원 규정, 지침 및 서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워드프로세서 사용의 어려움으로 이에 관한 작성 등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개발된 평가가이드라인 활용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서식 등을 쉽게 활용할 수 있고, 자료의 축적 및 저장 등이 용이한 방식의 앱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앱 개발을 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되는 서식으로는 종사자 관리 현황, 산후우울증 검사, 산후조리원 만족도 조사 등이 있다.

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활용 방향

본 연구에서 개발되었던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 자료의 경우에는 새로운 주제 발굴 등을 통하여 내용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개발된 교육 자료는 주로 감염과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향후 아버지 교육을 포함한 부모교육, 모아애착, 산모의 정신건강, 신생아 돌봄 및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조직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추가해 나감으로써 산후조리원에서 필요한 감염과 안전 이외의 주요 내용을 교육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신생아 학대 행위의 예방 및 신생아를 심하게 흔드는 행위 방지 등과 같은 신생

아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추가되면 좋을 것이다.

산후조리업자 PPT 교육 자료의 경우에는 감염과 안전 관련 내용 중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전달되어야 하는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음으로, 향후 산후조리업자 교육 전달자는 이를 감안하여 강의자가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추가해서 전달하면 될 것이다. 산후조리업자 교육 자료에서는 가능한 내용의 중복을 피하고자 하였고, 필요 내용 중심으로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여 교육자료 내에 포함된 내용 중심으로 교육 강사가 강의를 준비하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산후조리업자 교육은 그동안 의무교육으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던 바, 기존 교육 참여자들은 새로운 방식과 새로운 내용에 대한 기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2019년도에 기타 종사자 교육 자료로 개발된 PPT 교육 자료는 산후조리업자가 기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2019년도에 개발된 기타 종사자 교육 자료를 산후조리업자 교육에 포함시켜 진행하는 방향도 새로운 내용과 방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대상 8차시 동영상 교육 자료의 경우도 2019년도부터 의무교육으로 정해진 바로 모든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이 이수해야 하는 과정이다. 산후조리업자와 달리 동영상 자료임으로 인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주변의 다양한 환경적 자극으로 인하여 교육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산후조리업자가 교육 이수 내용에 관한 확인, 의문 사항에 대한 답변 및 논의 등을 통하여 산후조리업 건강관리인력이 교육을 효과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도 배려해주면 교육 효과가 더 상승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후조리원 기타 인력 대상 PPT 교육 자료 활용은 산후조리업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당 인력에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산후조리업자는 기타 인력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시기와 장소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진행하면 보다 효과적인 교육이 될 것이다. 산후조리원 기타 인력 대상 PPT 교육 자료를 건강관리인력 대상의 교육 자료와 마찬가지로 향후 동영상 자료로 개발되어 보급되면 보다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2. 향후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활용 방안

가.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산후조리원 평가 규정, 지침, 서식 사례집은 산후조리원 평가에서 필수적인 요인이다. 산후조리원에서 평가를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 두어야 하는 서류들로써, 현장에서 향후 본 평가 준비를 위해 매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보다 적절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산후조리원 측의 의견을 수렴해서 일부 수정 보완작업을 거치면 본 평가 수행 시에는 대부분의 산후조리원이 본 연구에서 개발되었던 평가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산후조리원 종사자 대상 교육자료 활용 방안

1)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대상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 방안

산후조리원 건강관리인력 대상 교육이 2019년도부터 의무화된 점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8차시에 걸친 동영상 자료는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잘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감염과 안전 관련 산후조리원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향후 산후조리 서비스 질적 향상과도 연계되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후조리원 건강 관리인력이 해당 의무교육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업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2) 산후조리업자 대상 PPT 교육자료 활용 방안

산후조리업자 대상 교육 자료의 경우에는 그동안 시행되어 왔던 집체교육 자료가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주요 내용이 배제된 경우가 있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산후조리업자 PPT 자료는 감염과 안전에 대한 주요 내용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가능한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목차가 구성되고, 개발된 교육 자료에 대한 전문가 및 현장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였음으로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인다. 이에 향후 집체교육을 진행하는 강사가 개발된 교육 자료를 토대로 강의를 진행하면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산후조리업 기타 종사자 대상 PPT 교육자료 활용 방안

기타 종사자 대상 교육 자료는 다른 교육 자료에 비해 그림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가능한 이해하기 쉽도록 개발되었다. 기타 종사자 교육 자료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숙지하여 미화원, 취사부(조리원), 행정인력과 같은 기타 인력 대상으로 전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데일리메디(2005.5.17.). 산후조리원 감염·안전관리지침 대폭강화.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657566&thread=22r01> (2019.10.1. 인출)
- 매일경제(2001.10.31.). 산후조리원서 신생아 3명 돌연사...관리·감독 '구멍' <https://mk.co.kr/news/society/view/2001/10/294141/> (2019.10.1. 인출)
- 메디케이트(2019.10.17.) 산후조리원 감염피해 증가 추세…지난해 320곳, 525명 집단 감염(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현황, 기동민 의원실). <https://www.medigatenews.com/news/2030757591> (2019.10.1. 인출)
- 보건복지부(2018). 산후조리원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9). 산후조리원 감염·안전 관리 매뉴얼.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9-733호,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2019. 10. 2)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9.1.16.). 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소방방재청(2014).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매뉴얼.
- 이정림·손인숙·최병민·엄지원·조미라·김희선(2018).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후조리서비스 발전 방안: 산후조리원 시범평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 정연이·이운규·이경립(2017). 산후조리원 시범평가 연구. 보건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 정인숙·조동숙·이주현·김지윤·송영호·이종호·이은주(2016). 산후조리원 평가 및 산후조리 실태 조사 시행방안 연구.
- 한국경제매거진(2008.12.). 산후조리원 과연 안전한가. http://magazine.hankyung.com/mobile/apps/news?popup=0&nid=03&nkey=2008112600031000133&mode=sub_view (2019.10.1.인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5).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현황.

부 록

**2019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



부록

2019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3)

본 산후조리원 규정 및 서식 사례집은 참고 자료로 제시된 것으로
산후조리원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시길 권고합니다.

3) 규정 및 서식 사례집에 포함된 모자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서식(2020년 1월 시행 예정)은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 등의 자료를 협조 받아 반영하였음.



목차

들어가며	93
------	----

I. 규정 사례	95
----------	----

(1) 산후조리원의 인력 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	97
(2) 인사관리 규정 예시	98
(3) 직원교육 규정 예시	103
(4) 근무교대 규정 예시	107
(5)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 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	108
(6) 설비 및 환경 안전 관리 규정 예시	110
(7) 소방안전관리 규정 예시	114
(8)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119
(9) 낙상 예방 규정 예시	122
(10) 입·퇴실 관리 규정 예시	125
(11) 의료기관 이송 연계 규정 예시	128
(12) 문서관리 규정 예시	132
(13) 방문객 관리 규정 예시	134
(14)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규정 예시	137
(15) 리더십 및 조직문화 규정 예시	139
(16) 손 위생 규정 예시	140
(17)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예시	144
(18) 세탁물 관리 규정 예시	146
(19) 물품 소독·관리 규정 예시	149
(20) 환경관리 규정 예시	155
(21) 급식관리 규정	158
(22) 종사자 관리 규정 예시	163
(23) 감염 관리 규정 예시	167
(24) 산모 건강평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173
(25) 모자동실 운영 규정 예시	174

(26) 부모교육 규정 예시	178
(27) 신생아 확인 규정 예시	180
(28) 신생아 건강평가 규정 예시	182
(29) 신생아 위생관리 규정 예시	184
(30) 신생아 수유 규정 예시	187
(31) 신생아 안전관리 규정 예시	191

II. 서식 사례 195

(1) 종사자근무표	197
(2) 종사자 관리대장	198
(3) 종사자 교육관리대장	199
(4)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200
(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201
(6) 종사자 보안각서	202
(7) 직무기술서	203
(8)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	207
(9) 연간교육계획서	208
(10) 교육일지	209
(11)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내용	210
(12)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211
(13) 근무교대 일지_1	212
(14) 근무교대 일지_2	213
(15) 시설 및 환경 안전 자체 점검표	214
(16)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215
(17) 낙상예방 점검표	216
(18)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217
(19) 입실 시 고객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218
(20) 의료기관 이송보고서	219
(21)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보고서	220
(22)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221
(23) 산후조리원 만족도 조사	222
(24) 신생아실 소독 점검표	223
(25)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224

(26)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225
(27) 입실 시 신생아 건강기록부(예시)	226
(28)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227
(29) 임산부(산모)·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결과	228
(30)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229
(31) 산후우울증 설문지	230
(32) 모아애착 증진 서식	232
(33)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233

‘산후조리’라는 개념은 여성이 아이를 낳은 후에 몸이 약화하여 있으므로 몸을 보살펴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이 임신 전의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산후조리를 하는 시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후조리를 잘 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평생의 건강 여부가 달려있다는 믿음이 전반적으로 퍼져있어 여성이 평생 건강하게 살기 위하여서는 산후조리를 잘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회적 풍조가 있으며 현재는 가족의 축소와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가정 내에서 가족의 돌봄으로 이루어지던 산후조리가 어려워져 이를 대신하여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가 보편화 되어 된 산후조리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 제2조 10호에 의해 분만 직후의 임산부와 출생 직후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 정의한다. 산후조리원은 법적으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면역력이 약한 산모와 신생아를 집단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의 신생아실과 산모실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감염과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차 제기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15년 12월 22일 모자보건법을 개정하여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 규정을 만들어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집단보호에 따른 감염·안전사고 규제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의 향상,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용역 과제를 2018년까지 진행하였다. 이에 해당 산후조리원들이 효율적으로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18년 도에 수행되었던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에 필요한 규정이나 서식을 마련하였다.

제1차 시범평가 시(2017년) 현장에서 평가를 위한 규정 및 지침, 공통 서식 등이 없어 해당 항목 점수가 부여되지 못하여 참여 기관의 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 가중치로 사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또한, 현장에서 평가 규정 및 지침, 관련 서류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평가 시간이 하루 이상이 요구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2차 시범평가(2018년) 시 일부 지침과 규정만 제공된 상태에서 평가가 진행되었고, 산후조리원에서의 규정 및 서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해당 서류 준비 미비로 인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 수행이 어려웠다. 현장에서도 평가 준비를 위한 가장 어려운 점 중의 하나로 평가를 위한 지침, 공통된 서류 양식 등이 없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본 평가 준비를 위하여 평가 규정 및 지침 개발, 공통 서식 등을 개발하여 이를 현장에 제공함으로써 평가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특히, 산후조리원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평가를 위한 지침, 공통된 서류 작성 양식 등이 없어 산후조리원의 평가 자체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고자 본 규정 및 서식

사례집을 제작하였다.

규정과 서식은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과 객관적 근거에 따라 개별 산후조리원 현장에서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부디 본 규정 및 서식 사례집이 현장의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본 사례집에서 제시하는 규정 및 서식은 예시이기 때문에 각 산후조리원 실정과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하기를 바란다.

규정 제목

'2018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에서 제시된 산후조리원 평가 기준에 맞추어 선정하여 기재하였으며, 관련 근거는 규정의 내용과 관련된 법 또는 관련 학회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기재하였다.

목적

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을 제시하였고, '2018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집'을 참조하여 산후조리원 상황에 맞게 적용하였다.

지침 및 절차

목적에 맞게 수행해야 할 구체적 과정이나 절차를 제시하였다. 추후 산후조리원의 상황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한 항목들이다.

☞ 가이드라인

규정 또는 지침에 근거한 사항 이외에 산후조리원에서 현실적으로 적용함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하기를 권장하는 항목들이다. 또한 각 산후조리원 규정을 만들 때 고려해야 하는 항목들로 작성되었다.

() 서식

규정 또는 지침에 근거하여 필요한 관련 서식을 마련하였다. 추후 산후조리원의 상황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한 항목들이다.

CHAPTER
I

규정 사례

(1) 산후조리원의 인력 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

[관련 평가기준: 1.1 인력의 적정성]

1. 인력기준

가. 건강관리 인력

- 1) 건강관리책임자: 임산부(산모)와 영유아(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둔다. 이 경우 2)의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 2) 간호사: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 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3) 간호조무사 : 해당 산후조리원의 전년도 1일 평균 입실 영유아 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은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 4)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하고,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영유아의 건강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한정한다.

나. 그 밖의 인력

- 1) 임산부(산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조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하고,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산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
- 2)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임산부(산모)실 및 영유아(신생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다.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특례

산후조리업자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거나 영양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정원에 포함할 수 있다.

(2) 인사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2.1 인력의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적격한 인력을 갖춤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사 정보를 관리한다.

지침 및 절차

1. 산후조리원 인력 기준

가. 건강관리인력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인력 및 시설기준)

1) 산후조리업자

업무 개시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 산부인과, 소아과, 분만실, 조산소에서 산모나 신생아를 직접 돌보는 업무에 종사, 관리자로서 행정적 업무만을 담당한 경우는 제외)

2) 건강관리책임자

가) 업무 개시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의료법 제 2조에 따른 의료인 1명을 건강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며, 이 경우 간호사가 겸임할 수 있다.

다) 산후조리업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둔 경우(채용된 간호자 중에서 겸임하는 경우 포함)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별지 제1호 서식).

3) 간호사

가) 업무 개시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를 7로 나눈 수의 간호사를 두되, 소수점을 올려서 산정 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간호사 정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 할 수 있다.

다) 근무 번마다 1명 이상의 간호사가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

4) 간호조무사

- 가) 업무 개시 전 2년 이상 산모 또는 신생아 관리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나) 전년도 1일 평균 입원 영유아수를 2.5로 나눈 수의 간호조무사를 두되, 소수점을 올려서 산정한다. 이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로 대체할 수 있다.
- 다) 간호조무사 정원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간호사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체 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정원에 해당하는 전체 수는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5) 겸임 금지

- 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산후조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산후조리원 근무시간에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

6) 신생아 건강관리 업무담당자 제한

신생아의 건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건강관리책임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인력

1) 취사부(조리원) 및 영양사

- 가) 취사를 담당하는 취사부(조리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나) 1회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연간 일평균 임산부수 30명 이상 기준).
- 다) 30명 이상의 임산부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 업체에 영양사가 있어야 한다.

2) 청소 및 세탁 담당자

산후조리원의 규모에 따라 산모실 및 신생아실의 청소 및 세탁을 담당하는 미화원을 둘 수 있다.

2. 인사 정보 관리

가. 직원 모집 및 선발

- 1) 종류: 공개채용 / 특별채용
- 2) 직원 모집의 규모는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계획된 정원 내에서 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모든 채용의 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의해 엄정하게 실시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역점을 둔다.
- 4) 산후조리원 종사자 결격 사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며, 즉시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모자

보건법 제 15조의2)

※ 외부 위탁업체 종사자는 결격 사유 조회 제외

- 가)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정신보건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 라)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 모자보건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바) 제15조의 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사)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아) 법에서 명시한 결격사유 이외에 결핵, 감염병 등 각종 감염성 질환 보유자
- 5) 인력 채용 지침에 따라 해당 분야 면허증과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경력자를 우선 채용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돌보는 산후조리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력 배치 및 직위 부여

1) 인력 배치 전 점검 사항

- 가) 신규 채용자는 입사 14일 이내에 구비 서류를 제출하며, 제출 받은 서류를 확인하여 서류 상 문제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채용 전 제출).
- 나) 산후조리업자는 채용 후 14일 이내에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를 관할보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구비 서류 목록 및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이력서(신상신고서)
 - ②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③ 개인정보 취급자 보안서약서(필요 직무의 경우)
 - ④ 근로계약서
 - ⑤ 주민등록초본(병역필자), 주민등록등본
 - ⑥ 직무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 ⑦ 건강검진진단서
 - ⑧ 기타 산후조리원이 필요로 하여 지정한 서류

(※ 건강검진진단서는 잠복결핵검사, 인플루엔자, 백일해 등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어야 함. 산후조리원 건강검진(보건증), 예방접종과는 구별됨)

다. 인력 배치 및 인사정보 관리

- 1)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고지사항을 준수하여 인력을 배치하도록 한다.
- 2) 인사 관리 규정에 따라 직원들의 인사정보(면허, 교육, 훈련 정보 등)와 예방접종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종사자별로 보관한다.
(※ 직원 건강 검진은 1년 주기로 기간 안에 실시함)
- 3) 직무 관련 보수교육 및 훈련 사항을 보관한다.
(※ 직원 교육 지침을 참조)
- 4) 산후조리원 모든 인력은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함부로 누설하지 않도록 채용 시에 보안각서를 받도록 한다.

라. 퇴직 및 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히 퇴직 또는 해고한다.

- 1) 본인이 퇴직을 원하고 조리원이 승인한 경우
-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 3) 형사 사건으로 소추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4) 연속하여 7 근무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 5) 신생아 학대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
- 6)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4. 직무기술서 작성 및 관리

- 가. 직무 내용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책임, 자격 요건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나. 직무기술서 작성은 산후조리원의 규정과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하고, 운영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다.
- 다. 설비/소방담당, 산모 교육 담당, 감염관리 담당, 급식관리 담당, 문서관리 담당, 자체 점검 담당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공공산후조리원은 아래의 지침에 따라 간호 인력은 간호사를 우대하나, 그 외 산후조리원은 지침을 참고하여 인력을 채용한다.

구분	기본 조건	우대 사항
간호사	임상 또는 산후조리원 근무 유경험 간호사	산부인과 및 신생아실 경력자 국제모유수유전문가 자격소지자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자격자	산부인과 및 신생아실 경력자 산후조리원 경력자
영양사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산후조리원 경력자 조리사 면허증 소지자
조리사	단체급식 가능한 자	단체급식소 또는 산후조리원 경력자
시설 소방담당자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자	기술/에너지/소방/조직/법정 규제 대상 시설 등 관련업무 경력자, 군필자 우대
상담 원무담당자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원활한 자	산후조리원 상담 경력자
미화원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는 자	

(3) 직원교육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체계적이고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직원 개인의 역량 및 전문성을 키우고 산후조리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침 및 절차

1. 교육 개요

- 가. 모자보건법 제15조의 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5. 12. 22., 2019. 1. 15.>

②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미리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중인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 전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후조리업을 시작한 후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④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15조의6제1항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0. 1. 16.>

1.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1년마다 1회 이상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 것

2. 별표 3 제1호가목의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3. 별표 3 제1호나목의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의 주요내용은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 16.>

- 나.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 종사자 및 직원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1)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 안내
- 2)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산모 및 신생아 돌봄 내용에 대한 지식 습득과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 습득
- 3) 산모와 신생아의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관리 능력 함양
- 4) 방화시설, 소방시설 등 안전 관리에 대한 지식 습득

2. 교육 기관

- 가. 교육 일정은 사전에 산후조리교육기관(現 인구보건복지협회) 및 각 지자체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며, 분기별로 집합 교육을 진행하며 교육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 나.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건강관리인력에 대한 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으로 실시하여 수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산후조리교육기관은 산후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고시)」 [별지 제 2호 서식]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교육 실시에 관한 기록을 2년 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 17조 제4항)
- 라. 산후조리교육기관은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산후조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교육 내용

가. 교육 구분

- 1) 신규 직원
 - 가) 업무 오리엔테이션: 산후조리원 일반현황, 인사규정, 교육 및 훈련, 안전관리, 감염관리, 환경 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나) 교육 시기: 업무 시작 1주일 이내
- 2) 건강관리인력 및 그 밖의 인력
 - 가) 필수교육: 감염관리교육, 소방안전교육(최소 연1회, 매년 2시간 이상)
※ 건강관리인력은 산후조리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을 통해 매년 1회 4시간 이상, 그 밖의 인력은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1시간 이상 자체교육
 - 나) 기타 직무교육
- 3)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가) 필수교육: 매년 1회 8시간 이상의 감염관리교육, 매 2년에 1회 이상의 소방안전교육
 나)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및 기타 직무교육

나. 교육 대상

1)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 건강관리책임자는 「의료법」 제2호 제1항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함)

2)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개설예정자)

3) 건강관리인력 및 그 밖의 인력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 외의 직원(간호사, 간호조무사, 취사부(조리원) 및 영양사, 청소 및 세탁담당자 등)의 모든 직원의 신규 채용 시에는 직무 관련 보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직무와 관련 교육 이수가 필요한 경우 산후조리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다. 교육 내용

1)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필수 교육

교육	근거 법령	주기	기타 세부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 1회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연 1회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장애인의무 고용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 징수 대상,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배포·게시하는 방법으로 인식개선 교육 실시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2년에 1회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관리하는 종업원 1명 이상 또는 「국민연금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이 대상임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연 1회	산후조리업자(건강관리책임자),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자: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을것 건강관리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을 것 그 밖의 인력: 1년마다 1회 이상 산후조리업자가 실시하는

교 육	근거 법령	주기	기타 세부사항
			교육을 1시간 이상 받을 것. 이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함
위생교육	식품위생법 제56조	2년에 1회 (조리사, 영양사)	집단급식인원 50인 이상(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 조리사 교육
실내공기질관리교육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신규: 1년에 1회 보수: 3년에 1회	(연면적 $500m^2$ 이상 규모의 산후조리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각 교육당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이므로 교육을 권장한다.

2) 감염 예방, 감염·안전 관리 등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항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가) 감염 관리 체계: 종사자의 책임, 교육, 건강관리 및 점검 등
- 나) 감염 관리 실무: 감염 예방, 시설 및 환경 관리, 예방 접종 등
- 다) 신생아 감염 예방과 관리: 감염 질환 관리, 신생아 수유 및 목욕 등
- 라) 산모 감염 예방과 관리: 산모 건강관리 및 산욕기 감염 등
- 마) 결핵 예방 교육, 소방안전관리 교육 등

3) 기타 산후조리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 가)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자체 시행하거나 직무 관련 내용 전문 강사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 나)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서비스 질 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의 기타 직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근무교대 규정 예시

[2.3 인력 전문성: 종사자간 의사소통]

목적

근무 교대 시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지침 및 절차

1. 근무 교대 시 산모와 신생아 상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2. 근무 교대 시간의 D(day), E(evening), N(night)에 해당하는 근무 시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 근무 교대 시 인계 시간을 통하여 산모 신생아의 관찰 내용 및 이상 증후에 대해 반드시 인계 하여 산모, 신생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또한 이를 근무교대일지에 기록한다.
4. 산모, 신생아 건강기록지 및 차트 등을 활용하여 인계하고 근무 교대 일지에 기록으로 남긴다.
5. 인계 시간 동안 산모와 신생아 관리에 소홀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 직원 이외 직원들은 기본 업무에 충실한다.
6. 교대 후 산모실 순화 시에도 신생아 돌보기에 차질 없도록 먼저 조치한다.
7. 인계 시, 산모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5) 산후조리원의 인력 및 시설 기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3)

[관련 평가기준: 3.1 시설 적정성]

1. 시설기준

가. 일반기준

- 1)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피난층에 설치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2) 시설의 구조 및 설비는 일조, 채광, 환기 등 임산부와 영유아의 보건위생 및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3)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4) 방문객을 위한 손 씻기 시설(싱크대 또는 손소독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추어야 한다.
- 5) 목욕탕은 샤워 및 세면 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6) 화장실은 수세식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7) 임산부실에서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엄마 젖을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모유 수유를 위한 편안하고 조용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8)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좌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9) 산후조리원의 시설은 산후조리업의 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업종의 용도와 겸하여 사용할 수 없다.

나. 임산부실

임산부실의 면적(면적의 측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 1) 임산부 1명을 수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
- 2) 임산부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경우: 임산부 1명당 4.3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이상

다. 영유아실

- 1) 공용면적(세면대, 목욕을 위한 곳, 수유를 준비하는 곳 등 영유아의 개인용 공간이 아닌 곳을 말한다)을 제외한 영유아실의 면적은 영유아 1명당 1.7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영유아실 입구에는 손 씻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세면대(싱크대)는 영유아의 목욕을 위한 곳과 수유를 준비하는 곳을 일정한 간격을 두어 구분하여야 하며, 영유아 침대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신규로 입실하는 영유아의 감염 여부 등 건강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이하 "사전관찰실"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관찰실은 투명한 벽체, 칸막이 등(커튼은 제외한다)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라. 급식 시설

- 1) 조리실은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조리·보관·식기 세정·소독 등 식품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 및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 2) 식품저장실은 환기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두되,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세탁실

- 1) 산후조리원에는 세탁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에 따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6) 설비 및 환경 안전 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4.1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목적

산모 및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최적화된 서비스를 위해 필수적인 전기 및 물 공급, 수질감시, 가스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 유지,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용어의 정리

전기설비 : 원내 전기와 관련된 설비를 의미하며, 조명설비, 전열설비, 배선설비 등 전기사용 시설을 통칭한 것

가스설비 : 원내의 가스와 관련된 설비를 의미하며, 가스배관, 가스미터기 등 가스사용 시설을 통칭한 것

급수설비 : 원내의 물을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설비를 의미하며, 급수설비와 급탕설비 시설을 통칭한 것

실내공기 : 원내 공기환경을 의미하며, 공기의 온열 및 청정도 조건, 공기 청정도 등을 통칭한 것

지침 및 절차

1.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계획

가.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계획 매년 수립해야 한다.

나.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계획은 전기, 가스 점검 및 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대략적인 시기와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전기

가. 산후조리원 개설, 증축, 개축 시에는 전기 설비에 대해서 전기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전기사업법 제66조의2).

- 나. 산후조리업자는 전기안전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및 특별점검에 응해야 하고 최근 점검 일자와 결과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다. 산후조리업자 혹은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 담당자는 전기안전공사 정기점검 이외에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라. 자체 점검은 자체 점검표를 근거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마. 자체 점검은 산후조리원 상황에 따라 횟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최소 연1회의 자체 점검은 실시해야 한다.

3. 가스

- 가. 산후조리업자는 가스안전공사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응해야 하고 최근 점검 일자와 결과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산후조리업자 혹은 시설 및 환경안전 관리 담당자는 가스안전공사 정기점검 이외에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다. 자체 점검은 자체 점검표를 근거하여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라. 자체 점검은 산후조리원 상황에 따라 횟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최소 연 1회의 자체 점검은 실시해야 한다.

4. 정수기

- 가. 정수기는 산후조리원에서 직접 관리보다 임대하여 사용할 것을 권고 한다.
- 나. 직접 관리할 경우 필터는 해당 정수기의 사용 방법 설명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환해야 하며, 6개월마다 1회 이상 고온·고압 증기소독방법, 약품과 증기소독 병행방법, 전기분해방법 등으로 소독·청소하여야 한다.
- 다. 정수기 관리카드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 라. 정수기를 임대할 경우 임대업체에게 정수기 관리카드 기록 유지를 요구해야 한다.
- 마. 정수기에 오염물질이 없도록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5. 실내공기질(연면적 500 m^2 산후조리원)

- 가. 연면적 500 m^2 이상의 산후조리업자는 2년 주기로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항목을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2020년 4월부터 기록·보존기간 3년에서 10년으로 증가).

- 나. 연면적 500m² 이상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 1)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거나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산후조리원,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산후조리원 실내공기질 교육에서 면제된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다. 신생아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는 환기·공조장치 또는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라. 환기·공조장치가 없는 신생아실은 하루에 20분 이상 시켜야 한다. 다만 기상청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가 나쁨일 경우에는 환기를 하지 않는다.
- 마. 신생아실 소독 후에는 반드시 환기시켜야 한다.

6. 에어컨

- 가. 에어컨은 매년 에어컨 사용 시기인 여름 전에 소독과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신생아실 에어컨 필터 청소는 2개월마다 실시해야 한다.

◀ 설비 및 환경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1. 설비 및 환경 안전관리 책임

- 가. 산후조리원이 소재한 건물의 저수조, 정화조, 승강기, 전기 수변전의 관리 책임은 건물관리자에게 있다.
- 나. 산후조리업자와 건물관리자가 동일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업자가 급수설비, 저수조, 정화조 점검 및 관리는 법적기준에 따라야 하고 관련기록을 법적기준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다. 건물관리자 혹은 산후조리업자는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를 설비 및 환경 안전관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라. 설비 및 환경 안전관리 업체에 위탁할 경우는 건물관리자 혹은 산후조리업자가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2.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 가.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
- 나. 산후조리원은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가스 사용구역, 소독제 등 화약약품 보관지역, 전열기 등 전력소모가 많은 전기기구가 설치된 지역, 에어컨, 정수기 등 구역이나 기구 별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다. 구역이나 기구별로 관리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을 경우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담당자는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할 경우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총괄 책임은 산후조리업자로 간주한다.

- 라.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환경안전관리 담당자는 가스 사용 구역(조리실 등), 소독제 등 화약약품 보관 지역, 전열기 등 전력소모가 많은 전기기구가 설치된 지역, 에어컨, 정수기 등의 관리 책임이 있고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각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3. 급수설비 및 수질 감시

- 가. 건물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며(수도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및 제7조) 최근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 나. 건물관리자는 저수조의 수질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한다(수도법 제33조, 수도시설 청소규칙 제6조)
- 다. 저수조가 없거나 있더라도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급수 받는 경우는 저수조 청소는 제외될 수 있다.

4. 정화조

- 가. 건물관리자는 연 1회 또는 2회 정화조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
- 나. 정화조 청소 규정은 다음과 같다.
- 1)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 2)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7) 소방안전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4.2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

목적

산모 및 신생아, 내원객과 직원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며 인화성 위험물질 등을 관리하여 화재 예방, 조기탐지와 진압, 안전한 대피로를 확보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용어의 정리

소화설비 : 원내 소화기, 옥내외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경보설비 : 원내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통합감시시설 등

피난설비 : 원내 피난 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및 유도표지 등

소화용수설비 : 원내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등

지침 및 절차

1. 산후조리업자의 책임

가. 산후조리업을 신고한 자(이하 산후조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1)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1항 3호, 제3조에 기술되어 있는 실내 장식물에 대한 안전관리
- 6) 산후조리업자는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가. 원장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소방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3.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가. 산후조리업자와 그 종업원 및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나.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소방훈련과 소방교육을 각각 연 1회(총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각 교육과 훈련은 2시간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4.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의 내용.

가.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은 다음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1) 화재 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 2) 산후조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3)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 4)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5.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가. 산후조리업자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 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6.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 안내 내용 전달

- 가. 산후조리업자는 신생아와 산모가 입실시 피난 안내에 관한 내용을 산모 및 보호자에게 안내 전달
- 나. 산후조리업자가 산모 및 보호자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피난안내도
 - 2) 피난절차
 - 3) 피난계단, 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의 위치
- 다. 산모 및 보호자가 피난 안내에 관한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피난계단·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배치해야 한다.

7.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 가.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원에 설치된 안전시설 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산후조리업자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 나. 산후조리업자는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8.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가. 산후조리업자 및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9. 산후조리원의 소방안전관리

- 가. 산후조리업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아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3) 화기 취급의 감독
- 4)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0. 비상대응체계 편성

- 가. 산후조리업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상대응체계(계획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나. 비상대응체계(계획서)에 담겨 있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관할소방서와 출동시간
 - 2) 구비된 소방시설
 - 3) 비상연락체계
 - 4) 피난조력 계획
 - 5) 총별 피난 안내도

☞ 소방안전관리 가이드라인

1. 자위소방대의 편성

- 가. 원장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 나. 자위소방대는 산후조리원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자위소방대에는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 다. 나항에 따른 각 반(班)은 산후조리원 직원의 수를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한다.

2. 자위소방대의 임무

- 가.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 나.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 다.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 라.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 마.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 바.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3. 산후조리원 안전관리기준

- 가.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 · 유지하여야 한다. 산후조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산후조리업자(산후조리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 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 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4.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에 대한 협조

가. 산후조리원이 위치한 지역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의해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할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협조해야 한다.

(8)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관련 평가기준: 4.1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안전시설 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1. 소방시설	
가. 소화설비	
1) 소화기 또는 자동화산소화기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2)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간이스프링클러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비상밸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비상밸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중 하나 이상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와 지구음향장치는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할 것. 다만, 영업장의 구획된 실에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가 설치된 경우 해당 실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영상음향차단장치가 설치된 영업장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 피난설비	
1) 영 별표 1의2 제1호다목1)에 따른 피난기구	4층 이하 영업장의 비상구(발코니 또는 부속실)에는 피난기구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피난유도선	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나) 전류에 의하여 빛을 내는 방식으로 할 것
3)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유도등,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중 하나 이상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4) 휴대용 비상조명등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2. 비상구	<p>가. 공통 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 위치: 비상구는 영업장(2개 이상의 층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층별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하되,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건물구조로 인하여 주된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중심선으로부터의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긴 변 길이의 2분의 1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 비상구 규격: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비상구 문틀을 제외한 비상구의 가로길이 및 세로길이를 말한다)으로 할 것 비상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상구는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할 것. 다만, 영업장 바닥에서 천장까지 불연재료(不燃材料)로 구획된 부속실(전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구는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을 경유하는 구조가 아

안전시설 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p>닌 것이어야 하고, 총별 영업장은 다른 영업장 또는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불연재료·준불연 재료로 된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영업소가 주방 외에 객실부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의 구조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 목5)다)에 따라 각 영업소와 영업소 사이를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려하지 아니하다.</p> <p>4) 문이 열리는 방향: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된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주된 출입구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동문[미서기(슬라이딩)문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화재감지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 나) 정전 시 자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다) 정전 시 수동으로 개방되는 구조 <p>5) 문의 재질: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가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防火門)으로 설치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나)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접하는 경우로서 화재의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경우 다) 비상구 또는 주 출입구의 문이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 계단의 설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문이 아니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설치되는 방화구획이 아닌 곳에 위치한 경우 <p>나. 복층구조(複層構造) 영업장(각각 다른 2개 이상의 층을 내부계단 또는 통로가 설치되어 하나의 층의 내부에서 다른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의 영업장을 말한다)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각 층마다 영업장 외부의 계단 등으로 피난할 수 있는 비상구를 설치할 것 2) 비상구의 문은 가목5)에 따른 재질로 설치할 것 3)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은 실내에서 외부로 열리는 구조로 할 것 4) 영업장의 위치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에도 불구하고 그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어느 하나의 층에 비상구를 설치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건축물 주요 구조부를 훼손하는 경우 나) 용벽 또는 외벽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등 <p>다.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의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00센티미터 이상인 난간을 말한다) 또는 부속실(불연재료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획된 실로서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50센티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2) 부속실을 설치하는 경우 부속실 입구의 문과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은 가목2)에 따른 비상구 규격으로 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있는 경우에는 발판 등을 설치하고 건축물 외부로 나가는 문의 규격과 재질을 가로 75센티미터 이상, 세로 100센티미터 이상의 창호로 설치할 수 있다. 3)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발코니 및 부속실 입구의 문을 개방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경보음 발생 장치를 설치하고, 추락위험을 일리는 표지를 문(부속실의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도 포함한다)에 부착할 것 나) 부속실에서 건물 외부로 나가는 문 안쪽에는 기둥·바닥·벽 등의 견고한 부분에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바닥에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가로로 설치할 것. 다만, 120센티미터 이상의 난간이 설치된 경우에는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p>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p>

안전시설 등 종류	설치·유지 기준
4. 창문	<p>가. 영업장 층별로 가로 5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열리는 창문을 1개 이상 설치할 것 나.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또는 복도에 바깥 공기와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구획된 실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p>
5. 영상음향차단 장치	<p>가. 화재 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음향 및 영상이 정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되, 수동(하나의 스위치로 전체의 음향 및 영상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수동차단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이 일정하게 거주하거나 일정하게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수동차단스위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영상음향차단스위치"라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과전류차단기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라.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작동으로 실내 등의 전원이 차단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할 것</p>
6.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개구부(開口部)에는 자동방화ダン퍼(damper)를 설치할 것

비고

- "방화문(防火門)"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를 말한다. 다만,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중 열에 의하여 녹는 퓨즈[도화선(導火線)]를 말한다]타입 구조의 방화문은 제외한다.
-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해당 영업장에 대해 화재위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화재위험유발지수가 영 제13조에 따른 기준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비상구 또는 그 밖의 안전시설등의 설치를 면제한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비상구의 크기, 비상구의 설치 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 구경(口徑) 등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의 설치·유지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9) 낙상 예방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4.3 시설 안전성: 낙상예방관리]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산후조리원의 특성, 시설 및 환경 등을 고려한 낙상 예방을 위한 규정을 개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리

낙상 :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가 조절되지 않아 갑자기 바닥이나 낮은 곳으로 비의도적으로 이동하는 것

정책 (Policy)

- 산모와 보호자 및 직원에게 낙상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 정기적으로 낙상 보고건수를 모니터링하여 낙상예방활동의 효과를 평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 활동을 수행한다.

지침 및 절차

1. 산모 및 보호자 교육

가. 일상생활 시 낙상 예방 수칙

- 호출 장치(또는 전화기) 도움이 필요할 때 직원을 부를 수 있도록 호출장치 사용법 설명
- 침상에서 내려올 때는 천천히 일어나 걸터앉은 후 천천히 내려오기
- 침대 위에서 일어서지 않기
- 수면 전 화장실 다녀오기
- 산모가 미끄럽지 않고 잘 맞는 신발을 사용하기
- 출산 이후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이동할 때 혼자 다니지 않고 보호자와 동행하기

나. 화장실 목욕탕 이용 시 낙상 예방 수칙

- 1) 바닥의 물기를 주의하여 미끄러지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하기
- 2) 도움이 필요할 때 호출장치 사용하기
- 3) 낙상사고의 위험성이 있거나 낙상 발생 시 바로 보고하기
 (※ 산모 및 보호자 교육은 산후조리원의 상황에 따라 입실생활안내문, 낙상예방활동지침, 산모실 내 게시판, 방송 등을 활용할 수 있음)

2. 직원교육

낙상 발생이 가능한 모든 장소나 상황에 따른 낙상 예방 지침을 만들어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은 이를 준수한다.

가. 낙상 예방 활동을 위한 지침

- 1) 입실 생활 안내 시 산모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해 낙상 가능성과 위험성 예방방법을 교육한다.
- 2) 활력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체위성 저혈압에 유의한다. 특히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할 때는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한다.
- 3) 산모실 바닥이나 복도는 보행 시 미끄러질 수 있는 물질이 없도록 순회하여 점검한다.
- 4) 낙상 예방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시행한다.
 (※ 산후조리원 사정에 따라 정기적 횟수는 조정할 수 있음)

3. 시설 및 환경관리

가. 시설관리

- 1) 원내 시설물 중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한다.
- 2) 산모실, 신생아실, 화장실 샤워실에 낙상주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 3) 침상 화장실 샤워실에는 산모의 손에 가까운 위치에 호출 장치를 부착한다(인터폰 정상 작동 여부는 상시 확인한다).
- 4) 산모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경로의 바닥은 턱이 없어야 하고 미끄럼방지 장판이나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며 필요 시 미끄럼방지 매트를 깔거나 미끄럼방지 테이프를 부착한다.
- 5) 복도 계단이 있는 경우 경사로에는 안전바를 설치하고 낙상주의 추락주의 등의 표지판을 부착한다.

나. 환경관리

- 1) 산모실이나 신생아실, 복도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에 물기나 미끄러운 용액이 없도록 한다.
- 2) 산모가 이동하는 통로에 불필요한 물건이 나와 있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원내 환경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 3) 산모실 및 복도 화장실 등의 조명은 활동시간에는 밝게 하고 야간에는 어둡지 않도록 한다
(공용 화장실을 사용할 경우).

(10) 입·퇴실 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5.1 운영관리: 입·퇴실관리]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입·퇴실 수속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입실 시점에 산모에게 감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제공한다.

입·퇴실 관리 규정

1. 산모 및 신생아 입·퇴실 관리

가. 입·퇴실 관리

- 1) 투어와 예약은 산후조리원과 산모의 사정에 따라 적정 시기에 시행한다.
- 2) 산후조리원 입실이 임박한 예약자는 예정일 2~3주 전에 미리 전화 통화하여 변동 사항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일정 조정을 통해 입소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3) 입·퇴실 수속 절차 및 지연 시 관리 방법: 입·퇴실 수속 절차 및 입·퇴실이 지연되는 경우 관리방법에 대하여 담당 직원 80% 이상이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입실 시 건강 사정

- 1) 입실하게 되면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사정을 실시한다.
- 2) 신생아 건강 사정 시에는 산모실 또는 별도의 공간에서 간호사가 산모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꼼꼼하게 건강사정을 실시하고, 특이 사항이 있을 시에는 구두로 확인하고 입실기록지에 자세히 기록한다.
(※ 산모의 건강기록부 또는 신생아의 건강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음)
- 3) 다음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문진과 건강 사정을 통하여 간호사가 입실 시 신생아 건강기록부에 직접 기록한다.
 - 가) 분만 정보 및 분만 전 투약 사항 등
 - 나) 신생아 정보: 입실 시 체온, 신체계측, 출생 시 건강문제, 첫 젖 물림 시도, 수유방법,

수유량, 배설, 예방접종, 기타 건강 관련 특이 사항

- 다) 산모 정보: 할력 징후, 수유계획, 산전교육, 산후교육희망, 입실 중 특이 사항, 과거병력, 산후관리자, 정서 상태, 배우자 및 산모 일반 정도

2. 입실 시 제공하는 정보

- 가. 입실 생활 안내, 요금 및 환불 체계, 서비스 내용 등: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입실 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요금 체계 및 중도 해약 시 환불 기준을 산후조리원(접수창구 등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16)
- 나.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화재배상책임 보험 가입 설명: 산후조리업자는 산후조리원 이용으로 인한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15, 다중이용업 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2)

3. 입실 시 산모 교육

※ 입실생활안내문은 산후조리원 실정에 맞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아래의 내용은 되도록 포함되어야 한다.

- 가. 시설안내: 층별 구조, 비상계단, 식당, CCTV 설치, 인터폰 사용 등
- 나. 시설 이용 안내: 면회, 입 퇴소 및 식사시간, 청소, 세탁물, 오염물처리, 젖병 소독 등
- 다. 산모와 신생아 관리 기본 정보
- 1) 산모: 유방울혈, 모유수유, 오로, 혈압, 체온 등
 - 2) 신생아: 황달 및 체중, 대변 양상 등
- 라. 보안계획: 소지품 분실 및 도난, 신생아 유괴, 산모와 신생아의 외부 출입 등
- 마. 소방 안전 및 대피 계획
- 바. 남편 입실 및 방문객 관리 계획
- 사.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
- 아. 감염 예방 관리 계획
- 자. 감염 또는 질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계획

4. 퇴실 시 산모 교육

퇴실 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는 퇴실 교육을 시행한다(퇴실 교육 체크리스트를 참조한다).

- 가. 아기돌보기
- 나. 진료가 필요한 아기 이상 증상
- 다. 신생아 안전점검
- 라. 기타 산후조리원에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

(11) 의료기관 이송 연계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5.2 운영관리: 의료기관 연계·이송]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 변화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안전하게 이송한다.

지침 및 절차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산모)나 영유아(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3호)

- 임산부(산모)나 영유아(신생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안전사고 포함) 보호자와 상의하여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만, 보호자가 즉시 이송에 동의하지 않거나, 퇴실을 원할 경우 건강기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고 보호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이송 여부 결정 기준 (※ 응급실, 외래 진료를 모두 포함함)

가. 임산부(산모) 이송 결정 기준

- 1) 원인을 알 수 없는 38도 이상의 고열
- 2) 비정상적인 오로: 자궁 수축과 동반되는 간헐적인 출혈이 아니라 10분 이상 출혈이 지속되는 경우
- 3) 활력 징후 측정 시 90/60 이하의 혈압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경우
- 4) 유방울혈이 심하여 통증을 동반한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는 경우
- 5) 가벼운 걷기, 모유수유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 6) 회음절개 부위나 제왕절개술을 받은 산모의 상처에서 발적을 동반한 통증이 있거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
- 7) 소변양이 적절하지 않으면서 배꼽 아래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

- 8)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거나 소변을 1시간에 한 번 이상으로 자주 보는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 9) 설사 등의 위장관 증세를 보이는 경우
- 10) 그 외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보이는 경우
- 11) 가슴에 뻐근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
- 12) 기타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신생아 이송 결정 기준

(※ 신생아의 다양한 질환은 증상과 징후는 매우 다양하고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신생아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고 기운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 1) 원인을 알 수 없는 38도 이상의 고열
- 2) 수면 시간의 증가
- 3) 불안정한 모습과 행동 (갑작스러운 변화나 평상시보다 활동이 쳐져 있을 때)
- 4) 수유 곤란, 잘 먹지 않고 자려고만 할 때
- 5) 울거나 먹을 때 입술이나 손발이 푸르스름해질 때
- 6) 호흡이 빠르거나 숨쉬기 힘들어 할 때
- 7) 매 수유 마다 토할 때
- 8) 수차례의 점액성이나 묽은 변을 볼 때
- 9) 대변 색이 선홍색(예, 붉은 피)이거나 검을 때
- 10) 황달이 가슴 아래로 진행 될 때
- 11)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 양상을 보일 때 (탈장, 복부 팽창 등 기형)
- 12) 평소와는 다르게 걱정스러운 증상이나 징후를 보일 때
- 13) 그 외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보이는 경우 (발진, 발열 등)

2. 이송 절차

가. 이송 방법

- 1) 모자보건법 제15조4 제3호에서 이송 시 이송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영유아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안전사고 포함)되는 경우 산후조리원 측에서 보호자, 영유아와 동행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 2) 다만, 동행이 불가피한 경우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자세히 설명하거나 메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3) 이송 수단은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자가 가장 빨리 의료기관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수단(산후조리원 또는 보호자 차량, 택시, 응급시 119 구급차 등)을 보호자 측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 4) 이송 전까지는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는 자를 별도 공간 또는 모자동실에 격리하여야 한다.

나. 이송보고

1) 시기

산후조리업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그 이송 사실 및 조치 내역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모자보건법 제15조의4 제5호)

2) 보고방법

- 가) 이송보고는 ‘의료기관 이송보고서’에 이송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이메일, 팩스 등)으로 보고하되, 접수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나) 지체 없이 보고하기 위해 전화 및 이송보고서 사진전송(SMS)으로 우선 보고하는 것도 지체 없이 보고하는 것으로 인정되며, 추후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보고 사항

- 1) 이송보고는 임산부(산모) 및 영유아(신생아)의 모든 의료기관 이송사실(입실 및 외래진료)을 보고해야 한다.
 - 가) 호흡기 질환의 경우 간이검사에서 진단된 경우, 그 외의 질환은 확진 검사에 의해 진단 된 경우
 - 나) 기타 질환으로 입실 치료를 하는 경우
 - 다) 예외사항: 황달이 의심되어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입실 치료를 권하지 않은 경우, 감염성 질병이 아닌 것이 명확한 경우 의료기관 이송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2) 산후조리업자는 이송 보고 후 감염병 진단 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진단명을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보고하고 24시간 이내 감염병 전파 예방조치 및 추가 발생 감시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3. 이송 이외의 경로를 통해 감염병 발생을 인지한 경우

- 가. 이송 이외의 경로를 통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임산부(산모), 영유아(신생아) 또는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에 유선으로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나. 이송 이외 감염병 발생 인지 경로 예시
- 1) 퇴실한 산모의 연락을 통해 감염병 발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단, 감염병 환자의 최초 증상발현일 또는 진단일이 퇴실일로부터 해당 감염병의 최장 잠복기 기간 내인 경우만 해당)
 - 2) 종사자 건강 진단 결과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 3) 로타바이러스 간이검사(진단키트) 결과 양성으로 나온 경우는 보건소로 보고 또는 확진 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12) 문서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5.3 운영관리: 문서관리]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문서 관리에 힘쓴다.

지침 및 절차

1. 산후조리원 자체 목록을 지정하여 문서 목록을 작성한다.

2. 신생아와 산모 관련 문서

가. 문서의 기록 및 수정

- 1) 건강기록부는 매일 기재하며, 항목별 사항도 누락 없이 모두 기재한다.
- 2) 신생아와 산모에 대한 기록지는 규정에 따라 기록, 수정한다. 수정 시 두 줄을 긋고 수정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하며 수정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나. 문서의 대출, 열람(사본발급포함) 절차

※ 건강기록부: 임산부(산모) 또는 영유아(신생아)의 법적대리인이 임산부(산모)/영유아(신생아) 기록부의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4항)

다. 문서의 보관 방법

- 1)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4항)
- 2) 문서의 접근 권한은 산후조리업자 및 지정된 종사자에게 있다.
- 3) 문서의 보관은 잠금 장치가 있는 장(실)에 보관한다.

3. 그 밖의 문서

- 가. 회계 서류 및 이용료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한다.
- 나. 소방시설 등 완비증명서, 소독 필증, 가스안전점검, 시설안전점검표, 실내공기질 측정 기록지와 교육 이수증 등을 함께 비치한다.

(13) 방문객 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5.4 운영관리: 방문객관리]

목적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방문객을 관리한다.

용어의 정리

- 보호자: 산모와 신생아를 보호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주로 산모나 신생아의 가족 중 함께 생활하는 자를 의미한다.
- 방문객: 직원 외 산후조리원에 출입하는 자로 주로 산모나 신생아의 면회객을 의미한다.
- 상시출입자: 위탁업체 직원, 산모관리사, 사진사 등 산후조리원 소속 직원은 아니나 업무 등으로 산후조리원에 자주 출입하는 자를 의미한다.

지침 및 절차

1. 방문객 관리

방문객은 보호자 1인과 그 외의 모든 방문객을 포함한다.

- 가. 방문객에게 출입제한 사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면회 전 출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출입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면회를 제한하다.
- 나. 방문객은 방문객 명부를 작성하고 산후조리업자는 이를 보관한다.
- 다. 방문객은 감염 관리에 준한 감염 교육을 실시하며, 손 위생 후 입실하도록 한다.
- 라. 방문객의 면회는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방문객은 가급적 면회실에서만 정해진 시간에 이용한다.

2. 보호자 및 상시출입자 관리

- 가. 산모실은 보호자 1인 외에는 입실을 금한다.

- 나. 상시출입자 중 산모나 신생아와 접촉이 가능한 자는 건강관리인력에 준하여 손 위생 및 개인 위생활동, 필요 시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감염관리를 적용한다.

3. 방문객 출입 제한

불가피하게 방문객의 면회를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한다.

- 가. 감기 등 호흡기 질환, 상기도(上氣道) 감염을 포함한 급성 열성 질환, 활동성 결핵 및 B형 간염, 설사 등의 증세를 동반한 위장 관계 질환, 개방성 상처, 전파될 우려가 있는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 다.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등 감염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최근 1개월 이내 홍역(紅疫) ·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풍진(風疹) 예방접종, 수두(水痘) 예방접종 및 폴리오 예방접종 등을 받은 아동을 동반하는 경우
- 마.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의 유행이 발생한 경우
- 바. 방문객에게 개방된 상처가 있는 경우
- 사. 방문객이 최근 1개월 이내 수두나 풍진 환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 아. 방문객에게 단순포진이 발생한 경우
- 자. 지역 사회에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 ※ 지역 사회의 호흡기 감염병 유행: RS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의 유행
- 차. 방문객이 만 6세 이하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4. 방문객 감염관리 안내 혹은 교육

- 가. 방문객에게 손 위생 방법과 기침 예절 방법, 개인 보호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올바르게 착용하는 방법 및 보호구를 벗고 버리는 방법에 대해 교육 혹은 안내한다.
- 나. 면회 대기 장소에 손 위생과 기침 예절, 개인 보호구 착용에 관한 안내 자료 나 포스터를 게시한다.
- 다. 손 위생 시설에 손 위생 방법에 대한 포스터를 게시한다.
- 라. 방문객을 대상 교육 혹은 안내를 실시한 후 교육 시행 여부를 작성하고 방문자 관리대장에 사인을 받고 이를 보관한다.

5. 보안사고 발생 예방 및 관리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하여 산후조리원에서 정해진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14)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6.1 질 관리: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목적

산후조리원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조사한 자료는 분석과 개선활동에 활용되어야 한다.

정책 (Policy)

질 향상에 대한 절차를 계획하고 모니터링하여 산후조리 서비스를 개선하고 고객만족을 높인다.

지침 및 절차

1. 주제별 질 관리 활동 계획

- 가. 모자동실시간, 신생아실 이용시간, 모유수유율, 손 위생 수행률, 감염발생양상, 안전사고 양상 등 중 2개 이상의 핵심지표(손 위생 필수)를 선정하여 분기별로 측정한다. (※ 원내 사정에 따라 평가 회수는 조정할 수 있음)
- 나. 선정된 핵심 지표의 측정방법과 기간(시기)은 산후조리원 특성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 다. 측정방법과 시기는 매 분기별로 동일해야 한다.
- 라.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핵심지표 관리 개선 목표를 수립한다.

2. 만족도 조사 지침

- 가. 만족도 조사 대상은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나. 조사는 분기별로 조사 기간을 설정하여 조사하며, 조사 기간에 퇴실하는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만족도 조사 횟수 및 대상자 수는 원내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다. 조사 항목은 산후조리원 경영철학 및 운영 목표에 따라 결정한다.
- 라. 만족도 조사 후 결과를 분석하여 질 개선 목표를 수립한다.

3. 불만 및 고충사항 접수 처리 지침

- 가. 산모 및 보호자가 불만 및 고충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 나. 고객으로 불만 및 고충처리 요구가 접수되었을 경우, 반드시 고객에게 수용여부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 고지해야 한다.
- 다. 접수된 불만 및 고충사항 처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관하여 관리한다.

(15) 리더십 및 조직문화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7.1 경영 관리: 리더십 및 조직문화]

목적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 및 조직문화의 개선과 재정의 투명성을 위하여 원장의 리더십 개선 활동을 수행하고,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직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 활동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지침 및 절차

1.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철학 및 핵심가치를 수립한다.
2. 산후조리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내용을 공유한다.
3. 산후조리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 공유는 사내 게시판 등 직원과의 소통 채널을 통해 전달한다.
4. 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모색한다.
5. 직원의 불만 및 고충사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와 관련 서식이 있어야 한다.
6. 법정 교육 외에 개별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리더십 및 조직문화 평가 비치 자료

1. 산후조리원 운영에 관한 철학 및 핵심가치가 담겨있는 운영계획
2. 사내 게시판
3. 직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예산서

(16) 손 위생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8.1 감염예방: 손 위생]

목적

감염관리에 필수적인 올바른 손 위생을 위해 손 위생이 필요한 상황과 손 위생 방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용어의 정리

- 손 위생(hand hygiene): 손 씻기, 물 없이 적용하는 손 소독, 수술 전 손 소독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용어
- 손 씻기(hand washing): 일반 비누 또는 항균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는 방법을 일컫는 용어
- 물 없이 적용하는 손 소독(antiseptic hand rubbing): 물 없이 손을 문지르는 피부 소독제를 적용하여 미생물을 감소시키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을 일컫는 용어
- 손 위생지표: 손 위생이 필요한 시점에 실제로 수행한 손 위생 수행률

$$\frac{\text{손위생수행건수}}{\text{손위생필요시점의 건수}} \times 100$$

지침 및 절차

1. 손 위생 관리체계

- 가. 손 위생과 관련한 내부 지침을 마련한다.
- 나. 산후조리원 입구와 신생아실 입구에 세면대를 설치하고 직원, 산모, 산후조리원을 출입하는 방문객이 손 위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홍보한다.
- 다. 손 위생을 수행하기 쉽도록 적절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손 소독제를 비치한다.
- 라. 손 위생 물품(예: 비누, 종이 타월, 알코올이 함유된 손 소독제) 등을 원활히 공급한다.
- 마. 직원은 정기적으로 손 위생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 바. 손 위생 수행 현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2. 손 위생이 필요한 상황

- 가. 손에 혈액, 체액이 묻었거나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 나. 화장실을 이용한 후에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 다. 눈에 보이는 오염이 없다면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손 위생을 할 수 있다.
- 라. 눈으로 보이는 오염이 없으나 기저귀 교환과 같이 체액, 분비물 등이 묻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 마. 다음 상황에서는 매번 손 위생을 하도록 한다.

1) 산모

- 가) 음식 먹기 전·후
- 나)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 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 후
- 다) 신생아 접촉 전·후
- 라) 모유/분유 준비 전
- 마) 수유 전
- 바) 기저귀 교환 전후

2) 직원

- 가) 근무 시작 전·후
- 나) 음식 먹기 전·후
- 다) 코를 풀거나, 재채기 배뇨, 배변 등 개인 위생 활동 후
- 라) 신생아 접촉 전·후
- 마) 모유/분유 준비 전
- 바) 수유 전
- 사) 기저귀 교환 전·후

3. 손 위생 수행방법

가. 기본원칙

- 1) 신생아를 돌보는 직원은 손톱을 짧게 유지하고 인조 손톱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 2) 장신구는 탈착 후 손 위생을 수행한다.

나. 물과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CNL향균 물비누]

- 1) 손에 물을 묻힌다.
- 2) 충분한 양의 비누를 손에 골고루 묻힌다.
- 3) 거품을 내어 손바닥을 서로 잘 비빈다.
- 4) 오른손바닥을 왼손 등에 올려 깍지를 끼고 문지른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반복한다.
- 5) 손바닥을 맞대어 깍지를 끼고 비빈다.
- 6) 손가락을 구부려 반대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반복한다.
- 7) 엄지를 잡고 돌려준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반복한다.
- 8) 손가락 끝을 반대 손바닥에 대고 문지른다. 양손을 번갈아 가며 반복한다.
- 9) 흐르는 물에 손을 헹군다.
- 10) 종이 수건으로 손을 완전히 말린다.
- 11) 수동 수도꼭지의 경우 사용한 종이 수건으로 수도꼭지를 잠근다.
- 12) 건조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소요시간은 40-60초 이상 수행한다.

다. 물 없이 적용하는 손 소독[에니오스겔(에탄올 70%)]

- 1) 물 묻히기와 헹구기를 제외한 절차는 물과 비누를 이용한 손씻기 절차와 같다.
- 2) 손이 마른 상태에서 손 소독제를 한쪽 손바닥에 따른 후 모든 표면을 다 덮을 수 있도록 충분히 적용한다.
- 3) 손의 모든 표면이 마를 때까지 문지른다.
- 4) 손 소독제의 사용량은 일반적으로 5~7ml(일반적인 1회 펌프 양)이지만 제조사의 권장 사항을 따른다.
- 5) 전체 소요시간은 20-30초 이상 수행한다.

4. 손 위생 촉진 홍보활동

가. 조리원 출입구

- 1) 방문객을 위한 손 위생 홍보자료 비치
- 2) 손 위생을 수행할 수 있는 세면대 및 손 소독제 비치.

나. 원내

- 1) 원내 게시판에 손 위생을 수행해야 하는 시점과 손 위생 방법 홍보자료 게시
- 2) 세면대 위에 손 위생 방법 홍보자료 게시

▶ 손 위생 가이드라인

1. 손 위생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액상비누 및 손소독제 종류

가. 비누

- 1)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액상비누를 손 위생 수행방법에 명시한다.
- 2) 액체비누는 내용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충하지 않으며 보충 전에 남아 있는 액체비누는 폐기한다.
보충 전, 용기의 세척, 소독, 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세척, 소독, 건조가 어렵다면 보충하는 제품보다 일회용 용기에 포장된 제품을 사용한다.
- 3) 고형비누를 사용할 경우 건조한 상태로 보관하도록 한다.

나. 손 소독제

- 1)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손 소독제를 손 위생 방법에 명시한다.
- 2) 효과적인 살균력을 갖추고 자극이 적은 것을 선택한다.
- 3) 내용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충하지 않으며 보충 전 남아 있는 소독제는 폐기한다. 보충 전, 용기의 세척, 소독, 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세척, 소독, 건조가 어렵다면 보충하는 제품보다 일회용 용기 에 포장된 제품을 사용한다.
- 4) 손 소독제는 알코올 함유가 60% 이상이어야 하며,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세면대 설치

- 가. 방문객을 위한 손 위생 시설과 신생아실 입구에 손 위생 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 나. 신생아실에 적어도 1개의 세면대가 설치한다. 신생아실의 손 씻기를 위한 세면대는 신생아의 목욕을 위한 곳 혹은 수유를 준비하는 곳과 일정한 간격을 둔다.

3. 손 위생 관리 체계

- 가. 종사자 손 위생 교육은 신규 고용 후 신규オリ엔테이션에서 반드시 시행하며, 직무 교육 중 감염 교육에서 수시로 추가 시행한다.
- 나. 손 위생 물품 관리 목록을 문서화하여 보관하거나 손 위생 물품 구매(입고)내역 균거서류를 보관한다.
- 다. 세면대 주변 또는 손 소독제 옆에 손 위생에 대한 홍보자료와 적절한 손 씻기 방법을 부착한다.

4. 손 위생 점검 및 개선활동

산후조리원에 맞게 점검주기를 정하여 손 위생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교육 및 물품지원 등의 개선활동을 수행한다.

(17)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8.2 감염예방: 개인보호구 착용]

용어의 정리

개인보호구: 산업재해 및 직업병,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해 개개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마스크, 보호의, 앞치마, 장갑, 보안경 안전화 등이 있다.

지침 및 절차

1. 개인보호구 착용의 일반원칙

- 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 나. 개인 보호구 관리 목록은 장갑, 마스크, 가운, 보안경이다.
- 다. 개인 보호구는 1회용 물품을 사용하고 개인별로 사용한다.

2.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

- 가. 업무 중 감염원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 나. 감염병이 의심되는 산모, 신생아를 의료기관에 연계·이송 시
- 다.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예: 소독제 희석 시)

3. 개인보호구 착탈의 방법

가. 착용방법

- 1) 개인보호구 착용 전 손 위생을 실시한다.
- 2) 착용순서: 앞치마나 가운 → 마스크 → 보안경 → 장갑

나. 탈의방법

- 1)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하는 업무가 종료되면 즉시 개인보호구를 탈의한다.
- 2)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탈의 후 재사용하지 않는다.
- 3) 탈의한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즉시 뚜껑이 있는 폐기물통에 버린다.
- 4) 탈의한 재사용 가능한 개인보호구는 뚜껑이 있거나 내용물이 노출되지 않은 세탁물 수집용 기에 넣는다.
- 5) 개인보호구에 화학물질이나 오염물이 묻은 경우, 손이나 몸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탈의 한다.
- 6) 탈의 순서: 장갑 → 보안경 → 가운 → 마스크

4. 개인보호구 물품 관리

- 가. 사용하지 않은 개인보호구는 물기와 먼지가 없는 장소에 보관한다.
- 나. 사용하지 않은 개인보호구가 젖어있다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 개인보호구 착용 가이드라인

1. 개인보호구 착용의 일반원칙

- 가. 업무 중 감염원에 노출될 수 있거나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위험이 있는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할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 나. 개인보호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수량을 마련한다.
- 다. 개인 보호구 관리 목록중 장갑, 마스크, 가운은 되도록 1회용 물품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 라. 산후조리원의 사정에 따라 린넨 가운을 사용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하여 착용한다.

2. 개인보호구 물품 관리

- 가. 일회용 개인보호구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 나. 린넨 가운을 사용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하여 사용하며, 이 경우 소독 내역을 문서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다. 위탁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근거 서류를 보관한다.

(18) 세탁물 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8.3 감염예방: 세탁물 관리]

목적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를 통해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여 감염예방을 도모한다.

용어의 정리

1. '세탁물'이란 산후조리원에 종사하는 자와 입소자(신생아, 산모 등)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침구류: 이불, 담요, 시트, 베개, 베갯잇 등
 - 나. 의류: 산모복, 신생아복, 유니폼, 가운 등
 - 다. 린넨류: 모자, 수건, 기저귀, 그 밖의 린넨류
 - 라. 기타 커튼, 씌우개류, 수집 용기 등
2.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 없게 된 물질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주로 생활 폐기물이다.

지침 및 절차

1.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체계

- 가. 세탁물의 수집, 운반, 세탁, 보관은 오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을 분리하여 시행한다.
- 나. 오염세탁물과 일반세탁물은 용기를 달리하며 오염세탁물은 반드시 오염세탁물임을 표기한다.
- 다. 세탁물의 수집, 운반, 세탁, 보관은 오염된 것과 세탁 완료된 것을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관리하며, 다른 시설과 구분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실시한다.
- 라. 폐기물통은 소독된 물건이나 정수기 등 청결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비치한다.
- 마. 오염세탁물이나 폐기물을 취급한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수행한다.

2. 세탁물 관리 방법

가. 세탁물의 수집 및 운반

- 1) 신생아 의류와 침구류는 매일, 그리고 오염 직후 즉시 교환한다.
- 2) 사용한 세탁물은 바닥에 떨어뜨리지 말고 수집 용기에 담는다.
- 3) 사용한 세탁물을 담을 시 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담는다.
- 4) 분비물이나 혈액 등으로 오염된 세탁물은 내용물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별도의 새지 않는 수집 용기에 담는다.
- 5) 세탁물은 수집 용기(แฮ퍼) 또는 뚜껑이 있거나 밀봉 가능한 위생적인 수집 용기에 넣어 운반 한다.
- 6) 세탁물 수집 용기 및 장소는 청결을 유지하고 주 1회 이상 소독하고 청소일지에 기록한다.

나. 세탁방법

- 1) 적절한 온도와 시간(섭씨 71도 이상에서 25분간)에서 세제로 세탁한다.
- 2) 물의 온도가 섭씨 71도 미만인 경우 세제에 가정용 표백제를 첨가하여 세탁한 후 헹군다.
- 3) 세탁된 세탁물은 건조기로 건조하며 장시간 세탁기나 건조기 안에 방치하지 않는다.

다. 세탁물의 보관

- 1)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다루는 종사자는 손 위생 후 세탁물을 다룬다.
- 2) 세탁 및 소독이 완료된 세탁물은 오염되지 않게 뚜껑이 달린 수집 용기에 넣어 운반하여 보관한다.
- 3)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은 청결 세탁물 전용 보관실에 종류별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3. 폐기물 관리 방법

- 가. 사용한 기저귀는 즉시 폐기물통에 버린다.
- 나. 폐기물이나 폐기물통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손 위생을 한다.
- 다. 기저귀를 버리는 폐기물통은 조유 공간에서 되도록 떨어져 위치하게 한다.
- 라. 폐기물통은 일 1회 이상 비운다.
- 바. 감염병 의심 신생아의 기저귀가 있는 폐기물통은 발생시마다 비운다.
- 사. 로타바이러스 등 위장관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의 기저귀는 비닐로 밀봉하여 버린다.

☞ 세탁물 관리 가이드라인

1.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체계

- 가. 신생아 물품(예: 매트리스 덮개, 속싸개 등)은 일회용 또는 세탁이나 소독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 나. 산후조리원 내에서 세탁하는 경우에는 각 산후조리원의 표준화된 지침에 따른다.
- 다. 세탁은 산후조리원 내 별도로 마련된 자체세탁실에서 하거나 외부기관에 의뢰한다.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를 비치한다.
- 라. 세탁실은 임산부실, 영유아실 및 식당 등 위생적 관리가 필요한 시설과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로부터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생아실, 산모실, 식당, 휴게실 등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 떨어져 있어야 한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 인력 및 시설 기준).

2. 세탁물 관리방법

가. 세탁물의 수집 및 운반

- 1) 분비물이나 혈액 등으로 오염된 세탁물은 별도의 새지 않는 수집 용기에 따로 운반하기 어려울 때는 내 용물이 묻어나오지 않도록 비닐로 밀봉하여 수집한다.
- 2) 세탁물 수집 장소에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세탁물의 분류방법 등을 게시할 것을 권고한다.
- 3) 세탁물을 운반할 때에는 주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나. 세탁방법

신생아용 세탁물은 독성이나 피부 자극이 없는 세탁용 세제로 세탁한다.

다. 세탁물의 보관

- 1) 전용 보관 장소는 신생아실, 산모실, 식당, 휴게실 및 종사자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와 떨어져 있는 것을 권장한다.
- 2) 세탁이 완료된 세탁물을 보관하는 전용 보관 장소를 마련한다.

3. 폐기물 관리 방법

- 가. 폐기물통은 폐달을 밟아 뚜껑을 열 수 있는 것을 사용하기를 권장한다.
- 나. 폐기물통은 가능하면 매 근무조마다 비우는 것을 권장한다.

(19) 물품 소독·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8.4 감염예방: 물품 소독·관리]

목적

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및 물품 관련 감염관리 활동에 필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용어의 정리

- 세척(Cleaning)은 물과 기계적 마찰, 세제를 이용하여 물품의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 오염제거(Decontamination)는 기계적인 마찰이나 화학적 제제를 사용하여 물품이나 환경, 인체 표면에 부착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말한다.
- 소독(Disinfection)은 물체의 표면에 있는 세균의 아포를 제외한 미생물을 사멸하는 과정을 말한다.
- 멸균(Sterilization)은 모든 종류의 미생물과 아포를 완전히 사멸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침 및 절차

1. 물품 관리체계

- 가. 물품의 세척, 소독, 멸균, 보관 과정에 대한 체계화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다.
- 나. 세척이나 소독과정에서 담당하는 종사자와 주변 사람 및 환경에 오염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공용물품의 경우 한 대상자에게 사용 후 다음 대상자가 쓰기 전 반드시 소독한다.
- 라. 오염된 물품과 깨끗한 물품은 반드시 분리하여 보관한다.
- 마. 물품의 세척, 소독, 보관 업무를 하는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한다.
- 바. 신생아 물품은 신생아마다 개별 보관, 산모 물품은 산모마다 개별 보관하여 사용한다.

2. 기구 및 물품 관리

수유물품(젖꼭지, 모유/분유병, 뚜껑 등)과 기타 물품(요람, 목욕대야, 유축기, 좌욕기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3. 물품 관리 방법

가. 오염 제거

- 1) 산모나 신생아가 사용한 일회용 물품은 사용 즉시 폐기하며 재사용하지 않는다.
- 2)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주기적, 또는 눈에 보이는 오염물이 있을 때 오염제거, 세척 후 소독 한다.

나. 세척

- 1) 사용한 물품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세척장소로 이동한다.
- 2) 물품은 사용 후 가능한 한 빨리 세척한다.
- 3) 세척을 위해 분해가 필요한 물품(예: 젖병 젖꼭지 등)은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분해하여 세척 한다.
- 4) 세척제는 물품의 재질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며 소독이나 멸균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헹군다.

다. 소독 시 주의사항

- 1) 오염물질이나 물기가 존재하면 소독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오염물질과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한다.
- 2) 소독제를 사용할 때에는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여 소독제 농도, 적용 시간, 유효기간 등을 준수한다.
- 3) 개봉한 소독제는 오염되지 않도록 뚜껑을 잘 막아 관리하며 개봉 날짜와 유효기간을 명시 한다.
- 4) 소독제는 재보충하지 않으며 소독제 용기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만약 용기를 부득이하게 재 사용하는 경우 세척 후 소독 혹은 멸균하여 사용한다.
- 5) 소독제는 국내외 인증기관의 등록 제품인지 확인하고 사용한다.

- 6) 소독제를 준비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적절한 개인 보호구(예: 장갑, 일회용 마스크, 눈 보호 안경, 가운, 장화)를 착용한다.

라. 소독 방법

- 1) 물품 소독은 비화학적 소독 방법(예: 자불 소독, 자외선 소독)과 소독제를 이용한 화학적 소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 소독제를 분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소독제 성분을 흡입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소독제를 분무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마. 보관

- 1) 물품 보관실은 먼지, 습기, 곤충, 온도 등에 보호되어야 하며 환기가 잘되어야 한다.
- 2) 포장하여 보관하는 물품은 포장이 손상(예: 구멍이 나거나 찢어지는 것)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 3) 깨끗한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주기적으로 청소 및 소독하고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바. 주요물품별 관리방법

- 1) 신생아 요람
 - 가) 사용 중인 신생아 요람은 매일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소독일지에 작성한다. 오염물이 있을 때 청결한 물걸레로 닦는다.
 - 나) 신생아 요람을 닦는 물걸레와 바닥 등 환경을 닦는 물걸레는 구별한다.
 - 다) 각 신생아 요람마다 다른 걸레를 사용하여 닦거나 일회용 소독 티슈 등을 이용하여 닦을 것을 권장한다.
 - 라) 퇴실하고 비어있는 신생아 요람은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 마) 요람에 신생아가 있는 상태에서 소독제를 이용하여 소독하지 않는다.
- 2) 신생아 목욕용품
 - 가) 신생아가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으면 목욕 대야는 개별 사용한다.
 - 나) 일반적인 경우에도 목욕 대야는 개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목욕 대야를 개별 사용할 수 없다면 각 신생아 목욕 후 세척 및 소독 후 사용하고 포개어 보관하지 않는다.
 - 다) 신생아가 설사 또는 소화기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신생아 목욕 대야를 사용한 후 신생아 요람 소독에서와 같은 기준으로 소독한다.
 - 라) 신생아 목욕 후 몸을 닦는 수건은 신생아마다 각각 새 수건을 사용한다.

- 마) 신생아 간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누는 신생아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펌프용 비누를 이용한다.
- 바) 고형 비누는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물에 불은 고형비누는 대장균(E. coli) 등의 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크므로 물이 잘 빠지도록 용기를 잘 관리하고, 가능한 작은 것을 사용 한다.
- 사) 위장관감염, 배꼽감염, 결막염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가장 마지막에 목욕한다.

3) 유축기

- 가) 유축기 깔때기는 산모마다 개별 사용한다.
- 나) 유축기 깔때기는 사용 후 물과 세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자불 소독한다.
- 다) 개별 사용하는 유축기 본체는 청결한 물걸레로 닦는다.
- 라) 사용하는 유축기 본체는 청결한 물걸레로 닦은 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4) 젖병

- 가) 소독된 젖병을 만지기 전 손을 깨끗이 씻는다.
- 나) 젖꼭지에 뚜껑을 씌워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 다) 오염되지 않도록 안전한 보관함에 건조하게 전용 보관함에 보관한다.
- 라) 사용한 젖병은 세척 후 자불소독 혹은 자외선 소독한다.
- 마) 젖병을 보관하는 장소에 먼지가 쌓이거나 물기가 남아 있지 않게 한다.

5) 좌욕 용품

- 가) 좌욕 대야는 산모마다 개별 사용한다.
- 나) 좌욕 대야는 사용 후 물과 세제로 깨끗이 세척한 후 충분히 건조한다.
- 다) 개별 사용하는 좌욕기 본체는 청결한 물걸레로 닦는다.
- 라) 공동 사용하는 좌욕기 본체는 매일 1회 이상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 물품 소독·관리 가이드라인

1. 기구 및 물품 관리

가. 일반적인 사항

- 1) 물품 소독제는 산후조리원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를 규정에 명시한다.
- 2) 특수상황의 소독방법은 가이드라인을 참고한다.

나. 신생아 용품관리

- 1) 목욕 대야는 개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목욕 대야를 개별 사용할 수 없다면 각 신생아 목욕 후 세척 및 소독 후 사용하고 포개어 보관하지 않는다
- 2) 신생아 간 교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비누는 신생아마다 개별적으로 사용하거나, 펌프용 비누를 이용 한다.

- 3) 고형 비누는 건조 상태를 유지한다. 물에 불은 고형비누는 대장균(E. coli) 등의 균으로 오염될 가능성이 크므로 물이 잘 빠지도록 용기를 잘 관리하고, 가능한 작은 것을 사용한다.

2. 주요물품별 적절한 소독 방법

가. 퇴실하고 비어있는 신생아 요람

- 1) 정상 신생아 혹은 일반 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사용한 요람: 염소계 소독제(유효염소 100~500ppm)나 4급 암모늄염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
- 2)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사용한 요람: 염소계 소독제(유효염소 800ppm 이상).
- 3)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가 사용한 요람: 염소계 소독제(유효염소 1000ppm 이상).
- 4)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씨(C. difficile)에 감염된 신생아가 사용한 요람: 염소계 소독제(유효염소 5000ppm). 유효염소 5000ppm의 염소계 소독제는 호흡기와 피부에 자극이 있으므로 장갑과 가운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소독하며 충분히 건조되고 소독제가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 사용한다.

나. 사용하는 유축기 본체

- 1) 일반적인 경우: 청결한 물걸레로 닦은 후 염소계 소독제(100~500ppm)에 3분간 담그는 것을 권장한다.
- 2) 로타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 염소계 소독제 1000ppm 이상 유지한다.

다. 공동 사용하는 좌욕기 본체

- 1) 매일 1회 이상 소독한다. 적절한 소독 방법으로는 100~500배 희석한 염소계 소독제(100~500ppm) 또는 4급 암모늄 소독제에 3분간 담그는 것을 권장한다.
- 2) 로타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 염소계 소독제 1000ppm 이상 유지한다.

3. 주요 물품 소독 방법

가. 자불 소독

- 1) 끓는 물을 이용한 물품 소독법이다.
- 2) 소독할 물품을 물이 들어있는 큰 통에 넣는다. 이때 물품은 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한다.
- 3) 물이 끓은 후 5분간 더 끓인다.
- 4) 소독 완료 후 소독된 집게로 물품을 건져낸다.
- 5) 소독된 물품은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완전히 건조 후 안전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나. 자외선 소독

- 1) 210~328nm의 파장은 미생물의 핵산을 파괴함으로써 소독 효과가 있으며, 흔히 240~280nm의 파장을 사용한다.
- 2) 산후조리원에서는 수유 물품인 젖병, 젖꼭지, 공갈 젖꼭지를 자불 소독한 후 자외선 소독을 병행할 수 있다.
- 3) 자외선 소독기의 소독 효과는 오염물이 있으면 감소하므로 반드시 오염물을 제거한 후 사용한다.
- 4) 자외선 소독기의 소독 효과는 습도가 높으면 감소하므로 물품을 세척하여 건조한 후에 자외선 소독기에 넣는다.
- 5) 자외선 소독기의 소독 효과는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다. 1m 이내 직선거리에서 가장 효과가 좋으므로 가능한 한 가장자리는 피한다.
- 6) 자외선 소독기에 물품을 넣을 때 겹치지 않게 한다.
- 7) 자외선 소독기에 수유용품이나 주방용 식기류를 넣을 때는 내면이 자외선램프 쪽을 향하게 넣는다.
- 8) 자외선 소독기의 소독 효과는 램프의 출력, 사용시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권장 소독 시간을 준수한다.
- 9) 자외선 방사 효율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자외선램프의 표면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 10) 자외선램프 출력은 일정 시점에서 급속히 감소하므로 자외선 출력이 초기값의 60%가 되는 시점에 램프를 교체하여 자외선 방출능력을 유지한다.
 - 11) 자외선 소독기 업체의 소독수준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고 관리한다.
- 다. 소독제를 이용한 소독
- 1) 알코올계 소독제는 의료용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예: 의료처치용 카트, 체온계, 줄자), 장난감, 그리고 수유 준비용 작업대 등의 소독에 주로 이용된다.
 - 2) 염소계 소독제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살균 효과가 신속하여 다양한 물품 소독에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성이 있어 쉽게 부식되는 물품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산후조리원에서 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는 소변기, 대변기, 좌욕기, 체중계 등이다.
 - 3) 염소계 소독제는 용액 내 유효염소(유리되지 않은 염소)의 양에 따라 소독 효과가 달라진다. 오염물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세균은 1ppm 미만, 결핵균은 1,000ppm에서 소독 효과가 있다.
 - 4) 염소계 소독제는 희석하여 사용하며 '염소 농도 측정지'를 사용하여 희석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구체적인 희석방법은 [부록]을 참조한다.
 - 5) 염소계 소독제는 찬물로 희석하며 온수나 열수를 사용하지 않는다.
 - 6) 희석된 염소계 소독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독력이 감소하므로 사용할 때마다 희석하고 기존에 희석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 7) 4급 암모늄염 소독제는 일반적으로 환경의 바닥이나 가구, 벽 등의 청소용 환경 소독제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컴퓨터, 자판기 등의 물품 표면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 8) 4급 암모늄염 소독제는 유기물의 존재 하에서는 살균력이 저하되므로 배설물 등의 소독에는 부적합하다.
 - 9) 4급 암모늄염 소독제는 세척제로는 우수하지만, 면이나 거즈를 사용하는 경우 흡수되어 살균력이 저하된다.
 - 10) 소독제의 구체적인 소독 대상과 희석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후조리원 감염관리 지침]을 참고한다.

(20) 환경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8.5 감염예방: 환경관리]

목적

산후조리원 내 감염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올바른 청소, 소독 등의 환경관리를 올바른 방법으로 적절히 시행함으로써 환경을 관리하기 위함이다.

지침 및 절차

1. 환경 관리체계

- 가. 환경청소, 소독의 영역, 절차에 대한 문서화된 지침을 구비한다.
- 나. 환경은 육안으로 깨끗해야 한다. 필요하지 않은 물품과 장비가 없어야 하며 환경의 표면에 먼지와 흙이 없도록 한다.
- 다. 환경청소와 소독은 정기적이고 지속해서 시행한다.
- 라. 청소 세제/소독제는 공인된 기관의 허가받은 제품으로 제품설명서를 확인하여 농도, 적용 시간, 유효기간 등 제조회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사용한다.
- 마. 청소 세제와 소독제는 독성 잔류물이 남지 않는 제재를 사용한다.

2. 환경관리 방법

가. 환경청소

- 1) 환경표면(예: 바닥, 책상 위, 컴퓨터 키보드 등)은 매일 또는 규칙적인 청소 일정에 따라 시행 하되, 오염물이 있을 때는 즉시 청소한다.
- 2) 접촉이 빈번한 환경 표면(예: 문손잡이, 전등 스위치, 침대 사이드 레일, 화장실 주변의 표면 들 등)은 근무조마다 청소한다.
- 3) 벽, 창문, 수납 선반은 병원균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구역은 일반 청소 과정에 포함하여 월 1회 환경소독제를 사용하여 닦는다.
- 4) 먼지의 분산을 최소화하며 청소한다. 먼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먼지떨이나 빗자루의 사용은

피한다.

- 5) 신생아의 소변이나 대변 등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였을 때는 주의하여 즉시 제거한다.
- 6) 감염 발생이 없는 평상시의 방이나 환경은 청소 세제와 물로 닦고 소독제의 사용은 자제한다.
- 7) 신생아 요람을 닦는 걸레와 바닥 등 환경을 닦는 걸레는 구별한다.
- 8) 화장실과 좌욕실은 매일 또는 규칙적인 청소 일정에 따라 시행한다.
- 9) 세면대는 세제/소독제로 매일 문질러 닦는다.
- 10) 산모실 침상 린넨은 주 2회, 오염물이 묻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산모가 입실하기 전 교환 한다.
- 11) 신생아 요람 린넨은 매일, 오염물이 묻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신생아가 사용하기 전 교환 한다.

나. 환경소독

- 1) 소독하고자 하는 환경의 모든 표면이 소독제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 2) 소독제를 분무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고 소독제 성분을 흡입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소독제를 분무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3) 신생아가 머무르는 동안에 신생아 요람을 소독하지 않는다.
- 4) 신생아와 밀접한 공간이나 물품을 소독할 때는 독성 잔류물이 남지 않는 제재를 사용한다.
- 5) 화장실과 좌욕실은 정기적으로 소독한다.
- 6) 감염병 발생 시 해당 미생물에 적합한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경소독을 한다.

다. 꽃, 화분, 조화 관리

- 1) 신생아실에는 꽃이나 화분을 놓지 않는다.
- 2) 산모나 신생아를 직접 접촉하는 종사자는 꽃, 화분 등을 만지지 않는다.
- 3) 꽃, 화분을 만진 종사자는 반드시 손 위생을 실시한다.

3. 환경 관리 물품

가. 청소용품

- 1) 사용한 물걸레는 사용 후 물과 세제로 세탁하고 행군 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 2) 청소 용액은 필요할 때마다 혹은 매일 준비하고 규정에 따라 깨끗한 청소 용액으로 교체한다.
- 3) 대걸레와 걸레는 사용 후 세탁하고 다시 사용하기 전에 건조한다.

나. 소독제

환경 소독제로는 식약처 승인을 받은 소독제를 사용한다.

4. 개인위생관리

- 가. 신생아와 접촉하는 종사자는 매 근무 시 청결한 유니폼을 착용한다.
- 나. 종사자는 근무복을 입은 채 산후조리원 외부 출입을 하지 않는다.
- 다. 산모는 주 2회, 또는 혈액, 분비물 등의 오염물이 묻었을 경우 의복을 갈아입는다.
- 라. 신생아는 매일 또는 혈액, 분비물, 대소변 등의 오염물이 묻었을 경우 의복을 갈아입힌다.

환경 관리 가이드라인

1. 환경관리 방법

가. 환경소독

- 1) 환경표면에 잔류하는 소독제에 신생아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피한다. 신생아실 혹은 신생아 요람 소독 후 충분히 환기시킨 후 신생아가 머무를 수 있게 한다.
- 2) 공용 화장실과 좌욕실은 매일 소독하되 낮은 수준의 소독제로 청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발생 시에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알코올(95% 에탄올, 70% 이소프로판올), 염소계 소독제(1000ppm 이상), 4급 암모늄제제 등이다.
- 4)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 발생 시에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알코올(75% 이상 에탄올), 염소계 소독제 (1,000ppm 이상, 나무나 흡수성이 있는 표면의 경우 5,000ppm 적용), 4급 암모늄제제 등이다.

나. 꽃, 화분, 조화 관리

- 1) 화병에 있는 꽃과 화분은 그람음성균과 진균 등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높으므로 가능하면 비치하지 않는다.
- 2) 조화는 먼지를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비치하지 않는다.

2. 환경 관리 물품

가. 청소용품

- 1) 사용한 물걸레를 소독할 때는 자불 소독 또는 염소계 소독제(유효염소 100–500ppm)를 이용한 소독을 권장한다. 만약, 로타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 염소계 소독제의 유효염소는 1000ppm 이상을 유지한다.
- 2) 염소계 소독제, 4급 암모늄제제와 같은 낮은 수준의 소독제는 일반 청소에 사용될 수 있다.

나. 소독제

- 1) 환경 소독제로는 염소계 소독제나 4급 암모늄제제 등이 흔히 사용될 수 있다.
- 2) 환경 소독제 승인 여부를 확인한다.
- 3) 폐놀계 소독제는 피부로 흡수되어 고빌리루빈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1) 급식관리 규정

[관련 평가기준: 8.6 감염예방: 급식관리]

목적

산모에게 위생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리장의 위생 상태를 관리하고, 식재료, 식기, 조리 기구를 점검하고 관리한다.

지침 및 절차

1. 조리원 위생관리

가. 건강검진 및 유증상자 관리

- 1) 조리원은 연 1회 이상 건강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보관한다.
- 2) 다음의 질병에 걸린 자는 취사 업무를 제한한다.
 - 가) 제1군 감염병(콜레라,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및 결핵(감염성)
 - 나)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자
 - 다) 열이나 설사, 구토 및 피부 배농 병소가 있는 경우
- 3) 손에 상처가 있는 조리원은 취사 업무를 제한한다. 취사 업무 제한이 불가능하다면 상치를 치료하고 밴드로 감은 후 고무 골무 등을 착용 후 고무장갑을 착용한다. 단,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에서는 제외한다.
- 4) 설사, 구토 등 위장관 감염질환 의심 증상이 있는 조리원은 취사 업무를 금한다.
- 5) 기침, 콧물 등 호흡기감염이 있는 조리원은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우면 취사 업무를 금한다.

나. 복장준수

- 1) 조리원은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2) 조리원은 급식 준비 중에 반지, 팔찌, 시계를 착용하지 않는다.

다. 조리원 손 위생

조리원은 다음의 상황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다.

- 1) 조리실에서 작업 시작 전·후
- 2) 세척 안 된 식자재 및 오물 취급 후
- 3) 각기 다른 종류의 식재료 취급 및 조리 전
- 4) 생선, 날고기 등 취급 후
- 5) 음식을 만지기 전
- 6) 기구나 설비 사용 전
- 7) 화장실 출입 후
- 8) 쓰레기 취급 후
- 9) 신체 부위나 몸을 만진 후
- 10) 작업 중에 전화를 받은 후
- 11) 소독제나 세척제를 만진 후
- 12) 청결 물품 보관실 관리 후

2. 조리장 위생상태 관리

가. 조리장 환경 및 구역관리

- 1) 조리실은 오염구역(식품 검수 구역, 전처리구역, 식기세척구역, 창고)과 위생구역(조리구역, 상차림 구역, 냉장고 및 냉동고)을 구분하여 관리한다.
- 2) 전처리구역, 세척구역, 국 조리구역 등 상시로 물을 사용하는 지역을 제외한 조리나 배식이 수행되는 공간의 바닥은 건조한 상태를 유지한다.
- 3) 음식물 쓰레기는 뚜껑이 있는 폐기물통에 보관하고 1일 1회 수거하며 음식물 쓰레기통은 매 일 세척한다.
- 4) 조리장 바닥은 매일 청소한다.

나. 식기 세정 및 소독 관리

- 1) 사용된 식기의 음식물 등 이물질은 음용수를 사용하여 1차 제거한다.
- 2) 세척 전 세정대에 적정량의 담금 세정제를 희석하여 충분히 담근다.
- 3) 세척제를 풀어 놓는 세정대 또는 수세미에 중성세제를 묻힌 후 세척한다.

- 4) 행굼 시 세척제가 잔류하지 않도록 음용에 적합한 물로 3회 이상 충분히 행군다.
- 5) 식기 세척과정에서 식기가 조리실 바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한다.
- 6) 식기 소독은 자불 소독 (100°C 이상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음) 하여 건조 후 전용 보관함에 보관한다.

다. 주방 물품 관리

- 1) 수세미는 식기세척용, 조리기구 세척용, 오염된 물받이통, 기타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 한다.
- 2) 도마와 칼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사용한다.(예: 육류, 생선류, 과일류, 채소류, 가공식품, 완제품)
- 3) 사용한 주방용품(수세미, 행주, 도마, 칼 등)은 세척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한다.
(가이드라인 참조)
- 4) 소독이 완료된 급식 용품(수세미, 행주, 도마, 칼 등)은 건조한 후 먼지와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3. 식재료 관리

가. 식재료 검수 및 보관

- 1) 식재료는 인수 즉시 식재료 군별로 분리 보관하며 검수일지를 작성한다.
- 2) 식재료 보관 창고 온도는 28°C가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 3) 식자재는 바닥의 습기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바닥에서 15cm 이상부터 쌓아둔다.
- 4) 부패 변질한 식자재 발견 시, 즉시 폐기하고 보관되었던 장소는 깨끗이 소독한다.
- 5) 밀봉된 식재료는 개봉 시 개봉 일자를 표기한다.
- 6) 식재료 유통기간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 7) 식품 상호 간의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처리 전 식품과 전처리된 식품, 조리된 식품과 조리되지 않은 식품은 분리 보관한다.

나. 조리 및 음식 보관관리

- 1) 냉장 또는 해동된 식재료는 신속히 조리한다.
- 2) 가열 조리 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가열한다.
- 3) 조리된 음식은 보냉(5°C 이하), 보온(60°C 이상) 유지 시 4시간 이내, 실온보관 2시간 이내 제공한다.

4) 제공 후 남은 음식은 전량 폐기한다.

다. 냉장고 및 냉동고 관리

- 1) 냉장고나 냉동고는 주 1회 서리를 제거 후 세척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 2) 냉장실과 냉동실 온도를 매일 점검하여 적정온도(냉동고 -18°C 이하, 냉장고 5°C 이하)를 유지하는지 확인하고 기록한다.
- 3) 냉장고에는 조리된 식품과 조리되지 않은 식품을 분리 보관한다.
- 4) 냉장고에는 식재료별 분리하여 포장하여 보관한다.
- 5) 식재료 포장 표면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둔다.

4. 식수 관리

- 가. 식수와 조리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 나. 식수와 조리용수로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가받은 업체로부터 주기적으로 관리를 받는다.(업체의 주기에 따름)
- 다. 식수를 보관하는 용기는 매일 세척하고 음용수에 맞는 관리 방법으로 소독한다.

▶ 급식 관리 가이드라인

1. 급식 시설

- 가. 조리실 내에는 조리용 싱크대와 손 씻는 싱크대를 분리하여 갖춘다.
- 나. 교차오염방지를 위해 전 처리 구역 내에서 채소류와 어육류 준비 작업은 구분된 작업대와 싱크대에서 실시 한다.
- 다. 조리장의 실내 온도는 섭씨 28도 이하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 라. 급식 시설은 청결 구역으로 별도의 공간에 있어야 한다.
- 마. 조리실과 식품 저장실은 분리한다.
- 바. 조리장에는 온도 및 습도 조절을 위하여 냉·난방 시설 또는 공기조화시설을 갖춘다.

2. 조리장 주방용품 관리

사용한 주방용품(수세미, 행주, 도마, 칼 등)은 염소계 소독제를 이용하는 경우는 유효농도 200ppm 하여 5분간 담가둔다. 단, 로타바이러스가 의심되는 경우 1000ppm 이상 유지한다.

3. 외부 위탁 시 관리

- 가. 위탁계약서 및 위탁기관 인증서 사본을 보관한다.

- 나. 위탁기관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한다.
 - 1) 급식관련 급식관련 인·허가 보유 현황 등
 - 2) 위생 및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및 운영 계획
 - 3) 급식 사고 발생 및 사고 보상에 대한 대책 등
- 다. 위탁 운영에 따른 급·퇴식 관리 규정을 확인하고 보관한다.
- 라. 위탁급식업자는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충분한 수량의 급식운반기구 등을 갖추어야한다.
- 마. 운영급식업자는 급식과 관련한 사고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용기, 가스, 전기설비 등의 취급주의와 관리에 대한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한다.
- 바. 운영위탁급식의 경우 산후조리원 급식 위생관리를 준수한다.
- 사. 외부운반위탁급식의 경우 원인규명을 위한 보존식을 철저히 한다(밀폐용기에 담아 5°C 이하로 72시간 보존).
- 아. 외부운반위탁급식의 경우 보냉탑 장착 차량을 이용하여 보온유지 가능한 용기에 급식품을 적재 운반한다.
- 자. 외부운반위탁급식의 경우 급식품 도착 공급시간을 준수하고 급식품 도착 즉시 배식 혹은 안전하게 보존 가능한 방법으로 보존한다.
- 차. 외부운반위탁급식의 경우 당일 조리된 급식품으로써 신선도 및 이상 유무를 철저히 확인 후 급식한다.

(22) 종사자 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8.7 감염예방: 종사자 관리]

목적

직원의 건강유지와 업무와 관련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직원 건강유지 및 감염성 질환 전파를 예방한다.

지침 및 절차

1. 신규고용 시 건강관리

가. 건강검진

- 1)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기 전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받는다.
- 2) 건강검진에는 장티푸스, 폐결핵, 잠복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감염병에 대한 평가를 포함 한다.
- 3)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 항 정신성 의약품 중독여부를 확인한다.

나. 예방접종

- 1) 건강관리 인력은 실제로 근무하기 2주 전까지 Tdap 접종을 완료한다.
- 2) 건강관리 인력은 산후조리원에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이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이라면 인플루 엔자 접종을 완료한다(접종 권장 시기: 10-11월).

다. 근무 제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기 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에서 감염병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그 질병의 증상 및 전파가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진단을 받은 날까지 격리 등 근무를 제한한다.

2. 근무 중 건강관리

가. 건강검진

- 1)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연 1회 건강검진을 받는다.
- 2) 건강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
- 3) 건강검진 항목에는 한센병 등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폐결핵 및 잠복결핵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예방접종

- 1) 건강관리 인력은 매년 1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는다(접종 권장 시기: 10-11월).
- 2) 건강관리 인력 중 만 11세 이후 백일해 접종력이 없는 자는 Tdap 접종을 받는다.

3. 감염 예방을 위한 점검 활동

- 가. 매 근무 시작 전 감염병 의심 증상 유무를 점검한다.
- 나. 모든 직원의 감염관리 교육은 연 1회 이상 시행한다.
- 다. 직원은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 1) 신생아실 근무자는 전용 근무복을 착용한다.
 - 2) 업무 중 감염원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 3) 소독제와 같이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 4)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은 [개인보호구 착용] 규정을 참고한다.

4. 감염 노출사고 및 감염병 발생시 대처방안

가. 감염 노출사고 및 감염병 발생시 보고

- 1) 직원이 감염병 산모나 신생아의 체액이나 혈액에 노출된 경우는 산후조리업자 혹은 건강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 2) 직원이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어 진단을 받은 경우 산후조리업자 혹은 건강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한다. (위반 시 행정처분: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1)

나. 감염병 발생시 근무 제한

1) 위장관감염 증상

- 가) 설사, 구토 등의 위장관감염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는 산모나 영유아와 접촉하는 업무, 수유 준비나 급식을 담당하는 업무는 제한한다.
- 나) 그 외의 업무는 근무 제한을 권고하나 만약 불가피하게 근무 제한을 할 수 없다면 손씻기를 철저히 한다.

2) 호흡기 감염증상

- 가) 기침, 콧물 등 호흡기 감염질환이 의심되는 종사자는 산모나 영유아와 접촉하는 업무를 제한한다.
- 나) 그 외의 업무는 근무 제한을 권고하나 만약 불가피하게 근무 제한을 할 수 없다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위생을 철저히 한다.

3) 전염성 피부질환 및 전염성 안질환

- 가) 유행 결막염 및 각막염 등의 전염성이 있는 안질환, 농가진 등의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이 있는 종사자는 산모나 신생아와 접촉하는 업무를 제한한다.
- 나) 그 외의 업무는 근무 제한을 권고하나 만약에 불가피하게 근무 제한을 할 수 없다면 손씻기를 철저히 하고 병변이 있는 부위는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되도록 병변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병변을 만진 후에는 오염물질이 묻었을 때에 준하여 손 위생을 시행한다(손 위생 참조).

다. 직원의 근무 제한 기간

직원 근무 제한* 권장사항

질환	근무제한* 대상	근무제한기간
결막염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종사자	눈곱 등의 급성 증상이 없을 때까지
설사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종사자, 취사 업무 종사자	증상이 없을 때까지
A형 간염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종사자, 취사 업무 종사자	횡달 발생 후 7일까지
B형 간염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급성기 간염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증상이 없고 B형 간염 표면 항원이 음성이 될 때까지
C형 간염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급성기 간염 증상이 있는 종사자	증상이 없을 때까지
단순포진 (입 주변 물집)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종사자	딱지가 앓을 때까지
풍진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종사자	발진 후 5일간

질환	근무제한* 대상	근무제한기간
결핵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종사자	감염성이 없을 때까지
수두, 대상포진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종사자	딱지가 앓을 때까지
인플루엔자 (독감)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종사자	발열 시작 후 5일이 경과하고 발열 소실 후 2일 경과 때까지
옴, 이	신생아, 산모와 접촉하는 종사자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기타 감염질환	의사의 진료를 받고 근무 제한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종사자	질환별로 결정

▶ 종사자 관리 가이드라인

1. 신규고용 시 건강관리

- 가. 건강검진
- 나. 예방접종
 - 1) 건강관리 인력 중 60세 이상은 대상포진 접종을 권고한다.
 - 2) 건강관리 인력 중 MMR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는 자는 접종을 권고한다.
- 다. 고용 제한

2. 근무 중 건강관리

- 가. 건강검진
- 나. 예방접종
 - 1) 건강관리 인력 중 60세 이상은 대상포진 접종을 권고한다.
 - 2) 건강관리 인력 중 MMR 접종력을 확인할 수 없는 자는 접종을 권고한다.
- 다. 근무 제한
- 라. 보호구 착용
 - 1) 신생아실 근무자는 전용 근무복을 착용한다. 전용 근무복은 신생아실 외부에서 오염원 등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감염관리에 효과적이므로 신생아실 외부 출입 시 덧가운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전용 근무복을 입고 산후조리원 내부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외부 출입 시 전용 근무복은 탈의한다.).

(23) 감염 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9.1 감염관리]

목적

신생아 및 산모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갖춘다.

용어의 정리

- 감염병 환자: 감염병이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기준에 따른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 감염병 의사 환자: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감염병 의심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중에서 임상 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 결과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 병원체 보유자 혹은 무증상 감염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감염의 유행: 평상시에 기대하던 수준 이상으로 감염질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침 및 절차

1. 감염병 환자군의 정의

- 가. 위장관 감염질환: 배변 횟수의 증가(24시간 내 3회 이상의 끓은 변 혹은 설사, 또는 일상적인 배변 횟수보다 증가한 경우)로 정의되는 임상 증후군이며 구토, 발열, 복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신생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 감염질환은 주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로타바이러스는 최근 우리나라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주요 병원체 중 하나이다.
- 나. 호흡기 감염질환: 일반적으로 감기와 같은 가벼운 증상으로부터 폐렴,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과 같은 중증 질환까지 넓은 범위의 임상 증상을 포함하는 호흡기계 감염병을 일컫는다. 영

아 및 소아의 호흡기 감염질환의 주요 감염원은 RS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이며 이 중 1세 미만의 영아에서 가장 흔한 감염원은 RS바이러스이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중 가장 흔한 감염원도 RS바이러스이다.

- 다. 전염성 피부질환: 주로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피부 감염증으로 신생아에서 호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농가진과 배꼽감염이 있다.
- 라. 전염성 안과질환: 주로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눈 구조물의 감염증으로 대표적인 질환으로 결막염이 있다.
- 마. 결핵: 결핵은 공기 전파에 의해 전염되는 질환으로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이며 증상은 기침, 객혈 등의 폐결핵 질환으로 생명의 위협을 주는 치명적인 증상을 보이는 결핵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신생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선천성 결핵은 사망률에 50%에 달하는 위험한 질환이므로 감별이 필요하다(자세한 내용은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참고).

2. 감염병 발생 시 관리체계

- 가. 유행 관리는 감염 유행 시 다른 산모나 신생아에게 감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나.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발생 시 감염관리지침을 문서로 만들어 보관한다.
- 다. 종사자들은 감염관리지침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받고 지침을 숙지한다.
- 라. 산후조리원의 산모와 신생아의 공동생활은 감염병의 전파에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감염병 발생 시 신생아의 공동생활을 제한한다.
- 마.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산후조리원 내에서 산모의 이동을 되도록 피한다.
- 바. 산후조리원 내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감염이 발생한 사실, 격리기간, 격리방법 및 발생감시 방법을 알리고 방문객을 제한할 수 있다.
- 사. 감염병 조치내역을 보고려하는 산후조리업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3. 감염병 관리 방법

가. 감염 사정

- 1) 종사자가 감염병별 의심 증상에 대하여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한다.

2) 감염병별 의심 증상은 다음과 같다.

가) 위장관 감염질환

- ① 산모, 종사자, 방문객 등의 성인의 경우, 설사, 구토, 오심, 복통 등의 위장관 감염 증상이 있을 때 의심 환자로 분류한다. 그 외에도 발열을 동반한 경우에는 감염병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신생아는 설사나 구토, 발열, 심하게 보챔, 힘이 없고 늘어짐, 수유 욕구 감소가 있을 때 의심 환자로 분류한다.

나) 호흡기 감염질환

- ① 산모, 종사자, 방문객 등의 성인의 경우, 발열, 오한, 기침, 가래, 콧물, 두통, 인후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을 때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신생아는 발열, 기침, 가래, 천명음(쌕쌕거림), 빠른 호흡, 심하게 보챔, 힘이 없고 늘어짐, 수유 욕구 감소 등이 있을 때 의심 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

다) 전염성 피부질환

발진, 수포, 농포, 땁지, 진물, 고름 등의 증상을 보이면 전염성 피부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신생아는 심한 경우 발열, 늘어짐, 보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라) 전염성 안질환

결막 부종, 안검 부종, 결막 충혈, 눈 분비물, 눈 주위 발적 등의 증상을 보이면 전염성 결막염과 같은 전염성 안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마) 결핵

- ① 산모나 종사자의 경우 2주 이상 기침을 지속하면 결핵을 의심할 수 있다.
- ② 신생아는 호흡곤란, 발열, 보챔, 식욕부진, 황달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 ③ 최소 2주간의 항결핵제 치료를 받지 않은 활동성 호흡기 결핵을 진단받은 종사자나 산모가 돌본 신생아는 밀접접촉자로 접촉자 검진의 대상이 된다.

바) 수두

- ① 산모나 종사자는 특징적인 발진을 있을 때 수두를 의심할 수 있다. 발진은 두피, 얼굴, 몸통부터 시작하여 전신으로 퍼지고 가려움증을 동반한 붉은 발진부터 시작하여 수포를 거쳐 2-3일 후 가피 (부스럼딱지)가 생긴다.
- ② 신생아도 수두 발생 시 특징적인 발진이 있을 수 있으며 접하는 부위에 더 많이 생긴다. 그 외 발열, 늘어짐, 수유 곤란 등의 전신적인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 ③ 입실 시 신생아는 가급적 일정기간 동안 모자동실하여 감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평가 한다. 모자동실이 불가능하다면 사전관찰실에서 관찰한다.
- ④ 재실 시 신생아는 근무 번마다 감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평가한다.

- ⑤ 신생아가 모자동실 중이라면, 산모에게 감염병 의심 증상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알려주고 증상 발생 시 건강관리 인력에게 알려주도록 교육한다.

나. 감염병 의심 환자 관리

- 1) 감염병 의심 환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감염 의심이 발생한 사실, 격리기간, 격리방법 및 발생감시 방법을 알려야 한다.
- 2)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없다면 퇴소를 권장한다.
- 3) 의료기관 이송 혹은 퇴소할 수 없다면 산모는 산모실에 격리하고 산후조리원 내 이동을 제한 한다.
- 4) 의료기관 이송 혹은 퇴소할 수 없는 감염병 의심 신생아는 산모실에 모자동실하여 격리한다.
- 5) 모자동실이 불가능한 감염병 의심 신생아는 별도의 공간에 격리한다. 이때 감염병 의심 신생 아가 둘 이상이라면 요람 사이 간격은 1미터 이상 유지한다.
- 6)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나 산모를 돌보는 종사자는 감염병 위험이 없는 산모나 신생아를 같이 돌보지 않는다.
- 7)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를 돌볼 때에는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한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착용한다.
- 8) 결핵, 수두 의심 환자는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거나 퇴소한다.
- 9) 농가진 환자는 약 복용 24시간 동안 격리한다.
- 10) 배꼽감염, 결막염 환자는 접촉주의에 준하여 관리한다.

다. 감염병 의심 환자 보고

- 1)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건강관리 책임자 혹은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한다.
- 2) 감염병 의심 환자 이송 시 관할 구역 보건소장에게 보고한다.
- 3) 관할 보건소에서는 필요한 경우 감염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산후 조리원에서는 이러한 역학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한다.

라. 2차 감염 가능성 환자 관리

- 1) 감염병이 확진된 신생아와 잠복기부터 확진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확 진된 신생아를 돌본 종사자가 함께 돌본 신생아는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
- 2)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는 무증상 감염 혹은 잠복기 상태일 수 있으므로 해당 질병의 잠복기에 해당하는 동안 모자동실할 것을 권장한다.

- 3)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들을 모자동실을 할 수 없을 때는 2차 감염 가능성이 없는 신생아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관찰한다. 이때 신생아 요람의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 4) 로타바이러스 감염과 같이 특정 소독이 필요한 감염병의 경우,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들을 별도의 공간에서 관찰할 때에는 확진된 신생아가 있던 공간이 충분한 시간 동안 충분한 횟수로 소독되지 않았다면 그 공간에 두지 않는다.
- 5)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가 해당 질병의 잠복기에 해당하는 동안 해당 감염병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격리를 해제할 수 있다.
- 6)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가 감염병 증상을 보이면 즉시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그 이송 사실을 보건소장에 보고한다.
- 7) 결핵은 제3군 전염병으로 접촉자는 접촉자 검진을 받는다. 최소 2주간의 항결핵제 치료를 받지 않은 활동성 호흡기 결핵을 진단받은 종사자나 산모가 돌본 신생아는 밀접접촉자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접촉자 검진을 받는다. 결핵이 확진된 신생아와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결핵 확진 신생아를 돌본 종사자가 함께 돌본 신생아는 밀접접촉자로 접촉자 검진을 받는다.
- 8) 결핵 밀접접촉자인 신생아는 퇴소한다.
- 9) 결핵 밀접접촉자인 신생아가 퇴소가 불가능할 시에는 모자동실하여 결핵 환자와 접촉한 적이 없는 신생아들과 분리한다.
- 10) 공기 전파 감염질환의 경우,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 중 이미 퇴소한 신생아는 산모에게 감염질환 발생 사실을 알리고 잠복기 동안 해당 감염병 발생 여부를 관찰하게 한다.

마. 감염병 발생 시 환경 및 물품 관리

- 1) 감염병 의심 환자 발생 시 평소보다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한다.
- 2) 위장관 감염질환 환자가 있었던 곳은 청소용액 등으로 더러워진 곳을 닦은 후 소독제를 뿌린 후 10분 후 물로 씻어낸다.
- 3) 위장관 감염질환 발생 시 화장실 및 기저귀 폐기물통은 소독제를 종이타월 등으로 묻혀 닦고 10분 후에 물 혹은 깨끗한 물걸레로 닦아낸다.
- 4) 위장관 감염질환이 발생한 신생아의 구토물이나 분변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소독제를 이용하여 종이타월, 일회용 물수건, 걸레 등으로 닦아내면서 제거한 후 쓰레기봉투에 넣고 소독제를 뿌린 다음에 버린다.
- 5) 로타바이러스는 환경표면에서 최소 10일간 생존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알코올(95% 에탄올), 염소계 소독제(1000ppm 이상, 4급 암모늄제제 등)이 유효하므로 환경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용한다.

- 6) 노로바이러스는 증상이 발생하기 전부터 감염력이 있으며, 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2주 또는 그 이상 바이러스가 변에서 분리될 수 있으며, 효과적인 소독제로는 알코올(95% 이상 에탄올), 염소계 소독제(1,000ppm 이상, 나무나 흡수성이 있는 표면의 경우 5,000ppm 적용), 4급 암모늄제제 등이 유효하므로 환경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여 사용한다.
- 7) 호흡기 감염환자 발생 시 특별한 소독 방법은 현재까지 없다. 취약지역(신생아실, 화장실, 급수장, 쓰레기장, 하수도, 조리실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평소보다 더 자주 청소하고 소독 한다. 책상, 계단 난간, 문손잡이, 컴퓨터 키보드, 수도꼭지 손잡이, 전화기 및 장난감 등 자주 접촉하는 표면이나 물건은 소독제를 적신 천이나 소독용 티슈 등으로 닦아 소독한다.
- 8) 호흡기 감염질환 환자 및 공기감염질환(결핵, 수두) 환자가 있었던 공간은 확실하게 환기한다.
- 9) 전염성 피부질환 및 전염성 안질환 의심 환자의 물품을 공용으로 쓰지 않는다. 감염 의심 신생아는 목욕 대야를 따로 사용하고 목욕 대야는 사용 후 즉시 세척 및 소독하여 따로 보관 한다.

▣ 감염관리 가이드라인

1. 유행 관리체계

기본원칙은 가능하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은 일상 중에도 공동생활을 최소화한다.

2. 유행 관리 방법

가. 감염 사정

입실 시 신생아는 당일은 모자동실하여 감염병 의심 증상 여부를 평가한다. 모자동실이 불가능하다면 사전 관찰실에서 관찰하는 것이 감염관리에 효과적이다.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수 시간 관찰에서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감염병 발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할 수 있다.

나. 감염병 의심 환자 관리

- 1) 이송, 퇴실, 모자동실이 불가능한 감염병 의심 신생아는 별도의 공간에 격리한다. 이 때 감염병 의심 신생아가 둘 이상이라면 요람 사이 간격은 1미터 이상 유지한다. 이는 같은 증상을 보이는 신생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시행할 것을 권장한다.
- 2)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를 돌볼 때에는 손 위생을 철저히 하고 가능한 한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착용 한다. 개인 보호구는 가능한 일회용을 착용하고 착용한 개인 보호구는 돌봄 직후 폐기할 것을 권장한다.

다. 2차 감염 가능성 환자 관리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신생아들을 모자동실을 할 수 없을 때는 2차 감염 가능성이 없는 신생아들과 분리 하여 별도의 공간에서 관찰한다. 이때 신생아 요람의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RS 바이러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여야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24) 산모 건강평가(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관련 평가기준: 10.1 산모 건강평가]

제16조(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① 법 제15조의4제1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임산부 건강기록부와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유아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상태 등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1. 16.>
- ② 법 제15조의4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별표 4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0. 1. 16.>
- ③ 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이송 사실 및 조치내역을 보고하려는 산후조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 16.>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기록부, 감염·질병 예방 조치 결과,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는 1년간 보관·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0. 1. 16.>
- ⑤ 산후조리업자가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의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건강기록부 등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5. 1. 6., 2020. 1. 16.>

[전문개정 2009. 7. 8.]

[제목개정 2020. 1. 16.]

(25) 모자동실 운영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11.1 모아애착: 모자동실, 모유수유]

목적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와 신생아가 한방에 머무르는 모자동실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통하여, 산모의 모유 수유 및 신생아 돌보기 역량 증진과 모아 애착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며, 나아가 신생아 감염 예방과 신체적, 심리적 발달증진 등과 같은 모아 관리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함이다.

지침

1.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의 역할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는 모자동실의 필요성과 유익성을 산모와 가족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모자동실에 대한 산모의 인식을 개선하고, 모자동실 선택과 운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 가. 모자동실 운영의 장점 홍보
- 나. 모자동실 운영의 기본원칙(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 다. 모자동실 촉진 활동 수립 및 운영
- 라. 모자동실 환경 관리 원칙 수립 및 운영
- 마. 모자동실 운영 시 주의사항 수립 및 운영
 - 1) 모자동실 운영의 장점 홍보
 - 가) 모자동실은 산모와 신생아 간의 물리적 근접성을 향상시켜 모아 상호 작용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모아 애착의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나) 산모가 신생아의 정상적인 울음과 비정상적인 울음의 의미를 구분하기가 쉬워진다.
 - 다) 산모의 산후 우울 발생을 예방하고, 어머니 역할의 전환과 적응 과정을 돋는다.
 - 라) 신생아의 집단생활을 최소화하여 감염전파의 가능성을 낮춘다.
 - 마) 산후조리원 내 감염 질환 발생 시 2차 감염 신생아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바) 신생아의 생존과 바람직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

- 사) 신생아는 수면 패턴의 안정, 울고 보챔의 감소 등의 장점이 있다.
- 아) 가족중심적 산모와 신생아 체계 안에서 아버지도 모자동실 환경에 함께 거주하게 됨으로서, 아버지 됨으로의 전환과 적응도 촉진된다.

2) 모자동실 운영의 기본원칙

- 가) 임산부실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모자동실로의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산모와 신생아에게 건강문제가 없다면 24시간 모자동실(완전 모자동실)을 권장한다.
- 나) 만약 완전 모자동실이 불가능하다면 최대한 모자동실을 사용하도록 격려하며, 최소 6시간 이상을 유지하도록 격려한다.
- 다)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감염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모자동실과 신생아와의 접촉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라) 감염병이 아닌 건강 상의 이유로 모자동실이 어려운 산모의 경우는, 애착 증진을 위하여 하루 중 아기와 접촉하는 상호작용 시간을 가지도록 한다.
- 마) 산모가 모자동실 환경에서 모유 수유와 신생아 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육과 상담을 포함하는 다양한 모자동실 촉진 활동을 산모와 가족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3) 모자동실의 촉진 활동(교육)

- 가) 산후조리원 입실 전 임산부에게 산모실을 모자동실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미리 알리고, 모자동실 운영 규정을 안내 교육하여야 한다.
- 나) 입실 당일, 모자동실 산모가 모유 수유와 신생아 돌봄에 익숙해지도록 입실 교육을 제공하고, 모자동실을 실시한다. 특별히 감염 예방과 모아 애착 증진을 위해서 입실 당일은 24시간 모자동실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이를 지원한다.
- 다) 산후조리원 입실 중 모자동실 산모가 신생아 돌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유 수유, 기저귀 교환, 목욕, 배꼽 관리, 트림시키기 등의 신생아 돌봄 내용을 산모에게 교육하고, 가능하면 모자동실을 하는 임산부실에서 직접 개별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 라) 산후조리업 종사자는 매 근무 시작 시 모자동실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 상태를 확인하고, 산모의 신생아 돌봄 및 모유 수유 관련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개별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 마) 산후조리 종사자는 모자동실을 선택한 산모가 신생아 돌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모자동실 기반의 모유 수유와 신생아 돌보기 교육을 필요시마다 제공한다.
- 바) 모자동실에서의 모유 수유는 산모의 유방을 신생아에게 직접 물려서 수유하는 직접 모유 수유를 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신생아 목욕을 임산부실에서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며, 최소 1회 이상

남편이 교육 및 실제적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가능하다면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신생아 목욕을 가능한 산모실에서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아) 산모가 아기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신생아 돌봄을 지원하는 인력 외의 단순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도록 하며, 단순 방문객의 경우는 방문객 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자동실의 환경관리

- 가) 산모실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6.3m^2 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나) 신생아실 온도 24~26도, 산모실 26도를 유지하여 산모와 신생아에게 땀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다) 산모실에는 방충, 방서시설, 냉난방 및 환기시설, 가습기, 응급벨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라) 산모실에는 가족(남편)이 취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마) 산모실의 부대시설로 목욕시설, 화장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바) 모자동실하는 산모실의 청소 및 소독의 원칙은 일반 산모실과 같다.

5) 모자동실 운영 시 주의사항

- 가) 산모에게 신생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 의심 증상이나 아픈 증상들을 알려주고, 신생아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직원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 나) 산모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 의심 증상 등을 교육하고, 증상이 있을 때 즉시 직원에게 알리도록 교육한다.

2.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역할

산후조리원에서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산후조리업 종사자들은 모자동실 선택을 위한 산모의 결정을 권장하고, 모자동실 시 모유수유와 신생아 돌봄의 어려움이 없도록 산모를 지원 및 교육하여야 한다.

3. 모아애착 증진 활동을 위한 교육 및 서식 작성

산후조리업 종사자는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활동, 즉 모자동실 운영 및 모유수유 실태를 서식 작성을 통해 파악할 것을 권고하며(산후조리원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모자동실 사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가. 모유 수유 촉진 활동 교육

- 1) 산모의 건강상 등의 이유로 모자동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루 8회 이상 수유실에서 모유수유를 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 2) 수유실에서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들에게 모유수유 장점 및 방법 등에 대해 개별교육 및 집단교육을 통해 모유수유 촉진 활동을 수행한다.

(26) 부모교육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12.1 부모교육]

목적

출산 이후 산모의 적절한 건강 관리 및 안전하게 신생아를 돌보기 위해 산모뿐 아니라 아버지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건강한 산후관리는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지침

1. 교육 개요

- 가. 교육대상: 산후조리원 입실 부모
- 나. 교육 주체: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를 포함하는 산모 및 신생아 업무를 보는 산후조리원 종사자
- 다. 교육 방법: 1:1 교육, 책자교육, 사이버 교육 등 산후조리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라. 교육 시기: 입실 후 시행하고 반드시 교육자 및 부모의 서명을 받는다.

2. 교육 내용

가. 산모건강관리 방안

- 1) 산모 위험상황(감염, 출혈, 우울 등)의 증상과 대처방법
- 2) 산욕기 감염성 질환 예방관리(회음부 감염, 수술부위 감염, 자궁내막염, 복막염, 혈전성 정맥염 등의 예방방법 등)
- 3) 회음패드 교환 방법과 좌욕 방법
- 4) 유선염의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 5) 영양섭취 기준

나. 신생아 건강관리

- 1) 신생아 응급상황(구토, 설사, 발열, 황달, 무호흡 등)과 대처방법
- 2)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 3) 모유수유 중요성과 모유수유방법
- 4) 모유수유의 어려움과 해결방법
- 5) ~~분유수유~~ 하는 방법, 주의사항
- 6) 수유자세, 트림방법 등
- 7) 신생아 목욕방법
- 8) 신생아 기저귀 교환방법, 배꼽관리
- 9) 신생아와의 상호작용 촉진 방법
- 10) 영아돌연사 위험요인과 예방방법

다. 아버지 교육

산모 및 신생아 돌봄 교육을 부모 동시 시행한다.

(27) 신생아 확인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13.1 신생아확인]

목적

신생아 안전을 위해 정확하게 신생아를 식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지침 및 절차

1. 신생아 식별 방법

가. 신생아 식별의 위해 인식표를 착용한다. 사용할 수 있는 인식표의 종류를 다음과 같다.

- 1) 팔찌
- 2) 발찌
- 3) 네임스티커

나. 1개 이상의 팔찌 혹은 발찌를 착용한다.

다. 네임스티커 부착 시 신생아의 몸에 부착한다.

라. 신생아 인식표에는 다음 식별 정보 중 두 가지 이상을 기재하고 모든 상황과 장소에서 일관된 방법으로 신생아 식별방법을 적용한다.

- 1) 이름
- 2) 성별
- 3) 출생일자
- 4) 출생시 몸무게

마. 산모에게 신생아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산모와 함께 신생아 확인을 수행한다.

바. 동명 2인의 산모가 재실하는 경우 구분을 위해 (임산부명) 아기, (성별), (출생일자), (출생시 몸무게) 순으로 이용하여 구분한다.

2. 신생아 식별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가. 입·퇴실 시

나. 신생아실 면회

다. 모자동실 이용 시, 수유 전(등과 같이 산모에게 인계 시)

라. 목욕 시

마. 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약품 투여 전

바. 의료기관 연계·이송 시



신생아확인 가이드라인

1. 신생아 식별 방법

가. 산모의 위치(산모실 번호), 신생아의 태명 등은 신생아 식별에 이용할 수 없다.

나. 위의 식별 정보로도 동명 2인의 신생아를 구분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아버지 성명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하여 구분한다.

다. 신생아의 의류 혹은 침구에 네임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으나 이는 인식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신생아 건강평가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14.1 신생아 건강평가]

목적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충실히 기록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지침 및 절차

1. 입실 시 사정

- 가. 건강관리 인력은 신규 입실하는 신생아의 출생력과 감염병 의심 증상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사정한다.
- 나. 감염병 의심 증상에 대해서는 [9.감염예방: 감염관리]를 참고한다.
- 다. 신규 입실하는 신생아는 일정기간에는 산모실에 모자동실하여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이를 ‘입실 시 신생아 기록부’에 작성한다.
- 라. 모자동실을 하는 경우에는 산모에게 신생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 의심 증상을 알려주고, 신생아에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건강관리 인력에게 알려주도록 교육한다.
- 마. 모자동실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생아실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하 ‘사전관찰실’)에서 가급적 적어도 입실 당일 동안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입실시 신생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한다.
- 바. 입실 후 관찰 시간 중, 만약 신생아에게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보호자가 즉시 이송에 동의하지 않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 건강 기록부에 ‘기타’란을 만들어 동의하지 않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보호자 서명을 받는다.

2. 재실 중 사정

- 가. 건강관리 인력은 근무시간 동안 ‘신생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

지 확인한다.

- 나. 신생아가 산모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산모에게 신생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감염병 의심 증상을 알려주고, 근무 번마다 감염병 의심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 기록한다.
- 다. 건강관리 인력은 신생아에게 감염증상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건강관리책임자 또는 산후조리업자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에 의뢰 및 이송한다. 보호자가 즉시 이송에 동의하지 않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 건강 기록부에 ‘기타’란을 만들어 동의하지 않거나 퇴소를 원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고 보호자 서명을 받는다.

3. 퇴실 시 사정

퇴실 시 퇴실 체크리스트의 사항들을 교육하고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부모에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 신생아 건강평가 가이드라인

1. 입실 시 사정

- 가. 신규 입실하는 신생아는 가급적 적어도 입실 당일에는 산모실에 모자동실(산모방) 혹은 별도의 공간(사전관찰실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고 이를 ‘입실 시 신생아 건강기록부’에 작성한다. 감염병 증상 확인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 시간보다는 입실 당일은 관찰할 것을 권장한다.
※ 사전 관찰은 산모실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되도록 입실 시 사정은 산모실에서 시행하기를 권장 한다.
- 나. 의료기관으로의 즉시 이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다른 산모와 신생아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산모실 혹은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 격리한다.
- 다. 재실 중 감염병 발생 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함을 입실 시에 알릴 것을 권장한다.
- 라. 산후조리원 내 감염병 유행 시 전파 예방을 위해 무증상 신생아라도 2차 감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모자동실, 격리조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퇴소할 수 있음을 알릴 것을 권장한다.
- 마. 감염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생활을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지내는 동안 모자동실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신생아가 신생아실에서 다른 신생아들과 공동생활 시 감염의 위험이 증가함을 알리고 모자동실을 권장한다.

(29) 신생아 위생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15.1 신생아 위생관리]

목적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수행한다.

지침 및 절차

1. 신생아 위생관리 체계

- 가. 신생아의 피부는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
- 나. 신생아에게 오염물이 묻은 경우 즉시 제거한다.
- 다. 건강관리인력은 적어도 근무번마다 신생아의 배꼽, 눈, 피부 상태를 관찰한다.

2. 목욕관리

- 가. 신생아는 정기적으로(하루 한번) 목욕한다.
- 나. 감염병 의심 신생아, 피부나 눈 등의 분비물이 있는 신생아는 가장 마지막에 목욕시킨다.
- 다. 감염병 의심 신생아의 목욕대야를 다른 신생아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라. 목욕대야는 개별 사용을 권장한다.
- 마. 비누 등의 세정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에게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바. 비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형비누보다는 액상비누를 권장한다.

3. 배꼽관리

- 가. 신생아의 배꼽은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게 관리한다.
- 나. 신생아의 배꼽은 자연 건조한다.
- 다. 신생아 배꼽의 일반적인 관리에 국소 소독제나 항생제의 사용을 피한다.
- 라. 신생아 배꼽 관리 후 항상 손 위생을 실시한다. 분비물 등이 묻은 경우에는 즉시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씻는다.

- 마. 신생아 배꼽에서 냄새가 나거나 분비물, 출혈 등이 있을 때에는 병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되도록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4. 눈 분비물 관리

- 가. 눈곱 등의 분비물이 없는 일반적인 신생아의 눈은 별도로 닦아주지 않는다.
- 나. 일반적인 신생아의 눈 관리 시 국소 항생제 등의 사용을 피한다.
- 다. 눈곱 등의 분비물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

5. 피부 관리

- 가. 기저귀 발진이 생긴 경우 깨끗한 물로 씻기고 기저귀를 자주 교환한다.
- 나. 기저귀 발진이 생긴 경우 기저귀 교환 시 엉덩이에 물기가 남은 채로 교환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다. 기저귀 발진 부위가 점차 확대되거나 진물 등 소견이 있을 시에는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안내 한다.

6. 물품관리

- 가. 전염성 피부질환 및 안질환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신생아가 사용한 세탁물은 눈으로 보이는 분비물이 없다 하더라도 ‘오염세탁물’로 간주한다.
- 나. 감염병 의심 환자의 물품을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다. 전염성 피부질환, 전염성 안질환 등이 의심되는 신생아는 맨 마지막에 목욕하도록 하며 목욕 대야를 따로 사용하고 목욕대야는 사용 즉시 세척·소독하여 자연건조한다. 소독 전에 다른 목욕 대야와 섞이지 않도록 한다.

7. 배설물 처리

- 가. 신생아의 기저귀 교환 즉시 폐기물통에 버린다.
- 나. 위장관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의 기저귀는 비닐로 이중 밀봉하여 버린다.
- 다. 위장관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버리는 폐기물통은 더 자주 비운다.

☞ 신생아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1. 목욕관리

신생아의 탯줄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통목욕보다는 부분목욕이 권장된다.

2. 배꼽관리

신생아의 탯줄이 생후 3주 이내 떨어지지 않으면 진료를 본다.

3. 눈 분비물 관리

눈곱 등의 분비물을 닦아 주는 경우에는 멸균된 거즈와 멸균된 식염수를 사용한다. 이때 식염수는 렌즈세척용 식용수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4. 물품관리

가. 분비물이 묻은 세탁물은 비닐에 넣어 다른 세탁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나. 전염성 피부질환과 전염성 안질환 의심 환자의 옷과 린넨은 따로 세탁, 소독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배설물 관리

위장관 감염병이 의심되는 신생아의 기저귀를 버리는 폐기물통은 적어도 매 근무번마다 비운다.

(30) 신생아 수유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15.2 신생아관리: 신생아 수유]

목적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적절하게 수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지침 및 절차

1. 수유 관리체계

- 가. 조유실과 수유실 등 수유와 관련된 공간은 매일 청소하고 늘 청결하게 유지한다.
- 나. 수유와 관련된 공간에 물이 고여 있거나 먼지가 쌓여있지 않도록 한다.
- 다. 수유 후 남은 모유와 분유는 버린다.
- 라. 소독되지 않은 젖병을 사용하지 않는다.
- 마. 조유 전과 수유 전에는 손 위생을 비롯한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한다.
- 바. 수유 후 물품이 깨끗이 세척되지 않았거나 물이 오염되었을 때 감염병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수유 물품(젖꼭지, 우유병, 뚜껑 등)을 깨끗이 세척하고 철저히 소독한다.

2. 보관 방법

가. 모유 보관 방법

- 1) 유축 직후 모유는 상온(16~29°C)에서 최대 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수유하지 않는다면 냉장 혹은 냉동고에 보관한다.
- 2) 냉장고에서 해동한 모유는 먹기 전에는 24시간까지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냉장고에서 해동한 모유는 가능한 빨리 수유할 것을 권장한다.
- 3) 모유 보관 냉장고는 냉장고 안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문을 여는 횟수를 최소화한다.
- 4) 냉장고에서 꺼낸 모유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여 (1~2)시간 이내 수유한다.

- 5) 유축 모유를 보관할 때에는 라벨에 (임산부명)아기, 신생아 이름, 유축 날짜와 시간을 기재하여 다른 산모의 모유와 구분되게 분리 보관한다.
- 6) 모유를 외부에서 운반할 때에는 아이스팩이나 아이스박스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만삭아	미숙아
실온보관 (20°C)	4~8시간 이내	1시간 이내
냉장보관 (4°C)	48시간~72시간	48시간
해동한 경우	24시간	24시간
냉장고 냉동실 (-20°C)	3~6개월	3개월
단독 냉동고 (-20°C)	6~12개월	6개월

나. 분유 보관 방법

- 1) 개봉하지 않는 분유통은 서늘하고 건조한 실내 식품저장실에 청결하게 보관하며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사용한다.
- 2) 개봉한 분유통은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 3) 유효기간이 지난 분유는 사용하지 않으며 즉시 폐기한다.
- 4) 온전한 분유통이 아닌 찌그러지거나 부풀어 있거나, 녹이 들어있는 분유통에 담긴 분유는 사용하지 않고 즉시 폐기한다.
- 5) 차량, 차고, 외부에 보관된 분유는 사용하지 않고 즉시 폐기한다.
- 6) 개봉한 분유는 다음 시간까지 사용 완료한다.
 - ① 분말분유: 3주 이내
 - ② 액상분유: 반드시 밀봉하여 냉장(0~10°C) 보관하고 제조사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급적 빨리 사용

3. 조유 방법

- 가. 조유 전 조유대를 소독한다.
- 나. 조유하기 전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씻기를 한다.
- 다. 조유 중에는 외부의 출입을 차단한다.
- 라. 분유와 모유는 각각 따로 준비한다.
- 마. 분유는 수유 직전에 준비하여 바로 수유한다.
- 바. 따뜻한 모유/분유를 원하는 신생아의 경우 수유 직전에 병을 따뜻하게 데우며 중탕 시간은 1시간을 넘기지 않는다.

- 사. 분말분유를 탈 물을 100°C 이상 완전히 끓여서 70°C 이상으로 식힌 후 조유하며 조유한 분유를 40°C 정도로 식혀 수유한다.
- 아. 정수기의 뜨거운 물은 100°C 이상 끓인 물이 아니므로 100°C 이상 끓여서 사용한다.

4. 수유 방법

가. 직접 수유

- 1) 모유 수유는 신생아실과 구분된 수유실 또는 산모실에서 하며, 신생아실 내에서 수유하지 않는다.
- 2) 개인 위생이 잘 되어있다면 수유 전에 유두를 별도로 닦을 필요는 없다. 유두 주변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하다면 깨끗한 물로 씻거나 물수건으로 닦아낸다.
- 3) 수유하기 전에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는다.

나. 젖병 수유

- 1) 소독되지 않은 젖병을 사용하지 않는다.
- 2) 수유 전에 손 위생을 실시한다.
- 3) 유축 모유를 젖병으로 수유할 때에는 모유가 보관 중에 분리되므로 수유 직전에 병을 흔들어 준다.
- 4) 수유 도중 잠시 멈출 때는 젖꼭지가 오염되지 않게 뚜껑을 씌워둔다.
- 5) 수유 후 남은 모유나 분유는 재사용하지 않고 즉시 버린다.

5. 조유실 관리

- 가. 조유실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나. 조유용 싱크대는 조유 전용으로 사용하고 목욕 싱크대 또는 기저귀 교환대로 공동사용하지 않는다.
- 다. 조유실을 매일 청소하며 조유대와 조유용 싱크대는 자주 문질러 닦는다.
- 라. 조유대와 조유용 싱크대에 모유, 분유, 오염물질이 묻은 경우, 즉시 제거한다.
- 마. 조유용 싱크대와 조유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조하게 유지한다.
- 바. 조유실이나 모유와 분유 보관용 냉장고에 모유와 분유 이외의 다른 음식물을 두지 않는다.

6. 수유실 관리

- 가. 수유실은 매일 청소하며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 나. 수유실에 먼지나 물기가 없도록 유지한다.
- 다. 수유실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산모가 동시에 수유하지 않도록 한다.
- 라. 수유실에서 수유 전후로 손 위생을 할 수 있도록 손 위생 시설을 갖춘다.

7. 냉장. 냉동고 관리

- 가. 모유와 분유 전용 냉장. 냉동고는 그 용도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나. 냉장. 냉동고는 내일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한다.
- 다. 냉장고는 2~8°C, 냉동고는 -18~-20°C를 유지하며 매일 확인하고 기록한다.

(31) 신생아 안전관리 규정 예시

[관련 평가기준: 15.3 신생아관리: 안전관리]

목적

신생아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한다.

용어의 정리

영유아돌연사: 자세한 병력, 부검 소견, 사망 현장의 조사로 설명이 안 되는 영아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말한다.

지침 및 절차

1. 신생아 안전관리 체계

- 가. 신생아의 이동시 신생아 요람이나 신생아 침대를 이용하여 이동하여야 하며, 신생아의 출생 정보(산모이름, 성별, 출생 날짜)를 확인 후 산모에게 인계한다.
- 나. 신생아의 영유아돌연사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 다. 산모 및 보호자에게 재실 중 신생아 낙상 및 영유아돌연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 라. 신생아 응급 상황에 대한 직원 교육을 수시로 실시한다.

2. 영유아돌연사의 출생 후 위험요인

- 가. 옆드려 자는 자세
- 나. 일부자리가 너무 부드러운 경우
- 다. 너무 덥게 감싸주는 것
- 라. 최근의 발열 질환
- 마. 남아
- 바. 미숙아(<37주, <2,500g)

사. 연령(특히, 생후 2-4개월)

아. 추운 계절

3. 영유아돌연사의 예방방법

- 가. 산모실에서 신생아 수면 시 반드시 신생아 요람 혹은 아기 침대에서 취침하도록 하고 산모 침대에서 산모와 함께 취침하지 않도록 한다.
- 나. 신생아 요람, 신생아 침대의 시트는 단단한 것을 사용하고 푹신한 베개나 인형을 두지 않는다.
- 다. 신생아 취침 시 신생아의 얼굴이 속싸개, 거즈 등에 덮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 라. 영유아돌연사 예방을 위해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
- 마. 영유아돌연사 예방방법에 대하여 산모에게 교육한다.
- 바.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돌봄 시 정기적으로 신생아의 호흡 상태, 피부색 변화 등을 관찰한다.

4.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가. 영아 기도 폐쇄 시 응급처치

- 1) 등 두드리기 5회
- 2) 흉부 압박 5회
- 3) 구강 내 이물질 확인(눈에 보이는 이물질 제거)
- 4) 기도 확보
- 5) 인공호흡
- 6) 회복되지 않을 시 응급처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

나. 영아 심폐소생술

- 1) 의식 확인 후 도움 요청 -119신고
- 2) 호흡 양상 관찰
- 3) 가슴압박
- 4) 기도유지
- 5) 인공호흡
 - 가) 가슴 압박:호흡=30:2, 5회 반복 후 호흡 확인
 - 나)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

4.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

건강관리인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신생아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교육 또는 자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CHAPTER

II

서식 사례

(1) 종사자근무표

[관련 기준: 1.1 인력의 적정성]

구분	일 0시	20 년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간접관리 책임자																																
간접 관리 인력																																
간호사																																
간접 관리 인력 무사																																
주방 관리자																																
미화 담당자																																
기타																																
특이 사항																																

- 1) 요일 기입
2) 상근(낮에 근무), 교대근무(D / E / N / Off: 3교대 근무 기준), Day / Evening / Night / 근무없음, 근무 시간 명시

(2) 종사자 관리대장

198

1. 종사자 채용/유지 관리(연도별 _____년)

구분	이름	면허(자격) (하단번호기입)	채용구분 (하단번호기입)	입사일	퇴사일	입사 전 관련 경력	담당업무 (하단번호기입)	건강검진	점복결핵	정신건강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일	백일해
산후조리업자						년 월							
건강관리 책임자						년 월							
간호사						년 월							
간호 조무사						년 월							
영양사						년 월							
취사부(조리원)						년 월							
미화원						년 월							
기타 부서						년 월							

1) 면허(자격): ① 의사 ② 혈액의사 ③ 치과의사 ④ 조산사 ⑤ 간호사 ⑥ 간호조무사

2) 채용구분: ① 정규직 ② 계약직 ③ 임시직(3개월 이상 연속 근무하는 임시직의 경우에는 종사자 관리 현황에 그 외에 경우에는 종사자 관리 현황에 그 외에 경우에는 방문객관리대장 형태로 관리)

3) 담당업무: ① 설비/소방 ② 산모교육 ③ 감염관리 ④ 신생아 돌봄(건강관리 인력), ⑤ 기타인력

4) 기타 부서: 상담, 행정, 관리 영역은 부서에 맞게 기록

[관련 기준:1.1 인력의 적정성]

(3) 종사자 교육관리대장

[관련 기준: 1.1 인력의 적정성]

2. 종사자 교육관리(연도별)

구분	신입*	이름	입사일	퇴사일	김영관리*	소방안전*	성희통 예방*	교육 내용 (교육날짜 / 교육 시간 기록 / 자체 또는 외부 주최기관 작성)	교育 내용 (교육날짜 / 교육 시간 기록 / 자체 또는 외부 주최기관 작성)		
									산모 산생이 안전관리	장애인 인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 교육
산후조리업자 건강관리 책임자											
간호사											
간호 조무사											
영양사											
취사부(조리원)											
미화원											
기타 부서											

<작성방법>

- 현재 재직 중인 종사자 대상으로 작성
- 신입*직원의 경우 Y(예) 표시
- 교육내용: 해당하는 교육내용에 Y(예) 표시(중복표시 가능)
- 주최기관: 자체/외부교육 여부를 표시하고, 외부교육일 경우 주최 기관명까지 기재
- 기타 부서: 상담, 행정, 관리 영역은 부서에 맞게 기록
- * 법정 필수교육: 직장 내 성희통 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소방안전교육,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위생 교육

(4)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관련 평가기준:2.1 인력의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산후조리업자			
성명		생년월일	
산후조리원 명칭		사업자 등록번호	
산후조리원 주소	(☎)		
<input type="checkbox"/> 건강관리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책(위)·자격		면허번호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책임자로 지정한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산후조리업자) : (서명 또는 날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관련 평가기준:2.1 인력의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산후조리원 직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경력, 면허(자격증)번호	채용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감염질환,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수형사실	채용절차 진행,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면허(자격증)번호, 주민등록번호	채용절차 진행	「채용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개인정보 제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법 제 15조의 2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 조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직책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산후조리원장 귀중

(6) 종사자 보안각서

[관련 평가기준:2.1 인력의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개인정보 취급자 보안 서약서

본인은 () 산후조리원에서 개인 정보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정보 취급자¹⁾로서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이용, 제공, 관리 또는 파기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염숙히 서약합니다.

1. 개인 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 주체의 동의
2. 고유 식별 정보²⁾ 및 민감정보 원칙적 수집 금지
3. 개인 정보 취소 수집
4. 수집 ·이용 목적 외 이용 금지
5. 처리 목적 및 보유 기간 내 이용
6. 개인 정보 파일은 반드시 암호화하여 관리
7. 보유 기간의 경과 또는 수집 목적 달성을 즉시 개인 정보 파기
8. 기밀 누설 방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산후조리원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산후조리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 관련 규정

- 가. 개인정보보호법
-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 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20 년. 월. 일.

서약자 : (인)

() 산후조리원장 귀하

- 1)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 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기관장)⁰⁾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2)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7) 직무기술서

[관련 평가기준:2.1 인력의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직무기술서(건강관리책임자)

직무명	건강관리책임자 - 원장
직무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실 사정 및 관리, 건강기록지 작성 및 보관 ○ 산모의 입실 사정 및 건강기록지 작성 ○ 신생아실 환경 및 감염관리, 안전 관리 ○ 신생아 응급 대응 및 의료기관 이송 지원 ○ 산모 산전교육 및 상담 ○ 신생아실 직원, 팀장, 실장 교육 및 업무 감독 ○ 신생아실 직원 인사고과 및 채용, 관리 ○ 신생아실 조직 관리 및 재난 대응 훈련 계획 및 지도 ○ 신생아실 risk 관리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돌봄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 이상 징후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 ○ 산모의 산전 산후 관리에 관한 지식 ○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 ○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
필수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면허 ○ 조리원 또는 신생아실 근무 경력이 있는자 ○ 채용시 건강 검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 직무 관련 자격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산사 ○ 모유수유 관련 자격 소유자 ○ 산후조리원 근무 경력자 ○ 신생아실 또는 분만실 근무 경력자 ○ 모유수유 서포트 가능자

직무기술서(신생아 건강관리 업무담당자)

직무명	신생아 및 산모 건강관리 업무담당자 – 신생아실 및 산모실 팀원
직무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목욕, 기저귀교환, 수유 등 신생아와 직접 접촉하는 업무 ○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기록 ○ 분유 조제, 젖병 및 수유용품 소독 등을 관리하는 업무 ○ 신생아 및 산모 입실 준비 ○ 신생아 돌봄 관련 기구 및 물품의 청결 유지 및 소독 ○ 신생아실 내부 및 모유수유실 청결 유지 및 소독 환기 ○ 산모응대 및 수유도움
필요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생아 돌봄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 ○ 감염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 신생아 및 산모의 건강 이상 징후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 ○ 유방관리 및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 ○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
필수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조무사 자격 또는 간호사 면허 ○ 채용시 건강 검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 직무 관련 자격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산사, 간호사 ○ 모유수유 관련 자격 소유자 ○ 산후조리원 근무 경력자 ○ 신생아실 또는 분만실 근무 경력자 ○ 모유수유 서포트 가능자

직무기술서(소방, 가스, 전기, 안전 담당)

직무명	소방, 가스, 전기, 안전 담당
직무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 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 일반 현황 및 비상연락체계, 비상대응조직의 편성 및 운영 ○ 종사자에 대한 소방 교육·훈련 및 모니터링 ○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 열원설비, 공조설비, 자동제어 설비를 최적상태로 유지관리 ○ 소방시설 및 대피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관리 ○ 가스의 안전한 공급을 위하여 정압시설 및 가스누설 예방관리 ○ 승강기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 ○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물탱크 및 급수펌프 청소 및 유지관리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물 관계법령에 대한 지식 보유 ○ 시설물 구조 및 점검에 대한 지식 보유 ○ 사고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위험요소에 관한 지식 보유 ○ 다중 이용시설 시설물 소방안전관리 지식 보유
필수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능사, 보일러기능사, 가스기능사, 전기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기계) 이상
기타 직무 관련 자격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활용능력(1급/2급), 워드프로세서, 전기 공사, 배관 공사, 용접 가능자

직무기술서(영양사)

직무명	급식관리 담당 - 영양사
직무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증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 식품영양정보의 제공 ○ 식단작성, 검식(檢食) 및 배식관리 ○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의 신선도, 함유열량 등을 계산 섭취 영양소의 양을 분석하는 지식 보유 ○ 식단에 필요한 양을 산출하여 재료를 구입하고, 재료의 품질 상태 및 조리방법을 확인할 줄 아는 지식 보유 ○ 조리 담당자의 조리, 위생 상태를 관리, 감독하며, 조리된 음식을 평가하기 위한 검식능력 보유 ○ 급식대상자의 나이, 성별, 활동에 맞는 영양 권장량을 파악하는 지식 보유 ○ 비용을 고려하여 식단작성 지식보유
필수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시험의 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영양사 면허와 국가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기타 직무 관련 자격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양사면허증, 위생사자격증, 한식조리사자격증, 양식조리사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

직무기술서(조리사)

직무명	급식관리 담당 - 조리사
직무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한 재료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가해서 음식을 만듬 ○ 주문서나 식단 계획표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고, 식료품의 상태를 검사하고 관리함 ○ 재료를 손질해서 보관하고 식기, 조리기구, 조리실 안을 정리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에 대한 지식 및 그에 따른 과학적 조리법, 영양과 맛의 조화 등 조리사로서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리학·영양학·식품학 등 관련학문을 전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필수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사 자격증 1개 이상 보유
기타 직무 관련 자격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조리사자격증, 양식조리사자격증, 일식조리사자격증, 중식조리사자격증, 복어음식조리사자격증

직무기술서(미화부)

직무명	신생아실 및 산모실을 포함한 산후조리원 위생 환경 업무
직무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의 세탁물과 폐기물 관리, 환경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 14조) ○ 법정 규제 적용 대상여부 및 규제 기준의 신설, 개정 여부에 대한 적법 시행여부를 정기검토하고 검사일정 및 검사필증 관리를 한다. (사업주 업무) ○ 고객만족 실현을 위하여 선제적 예방관리를 시행한다. ○ 정기적 점검으로 시설물을 최상의 상태로 개선, 보존되도록 관리한다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후조리원 환경의 위생 상태를 관리한다. ○ 세탁물 관리 규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 폐기물 관리 규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 환경 위생 관리 규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한다. ○ 미화부의 개인 위생 관리를 점검한다. ○ 외부 위탁시 위생관리 계획 및 위탁기관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 대·내외적 수검을 사전에 준비하고 수행한다.
필수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시 건강 검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자보건법 제15조의 2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자
기타 직무 관련 자격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화부 관련 경력자

직무기술서(산모실담당 관리자)

직무명	객 실
직무수행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 관리 활동 및 만족도 조사계획 ○ 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 활동 근거 자료 관리 ○ 객실 환경 및 감염관리 안전관리 (세스코 점검확인) ○ 객실 미화 세탁직원 인사고과 및 채용, 관리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실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특징 ○ 입실 기간에 따른 특징 ○ 입실 기간 생활 (식사, 청소, 빨래) ○ 입실기간 산모관리 ○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지휘에 관한 실무적인 지식 ○ 감염관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필수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 건강 검진을 통과 한 자(보건증, B형간염, TDAT, 독감, 잠복결핵, 정신약물) ○ 서비스 마인드 보유자
기타 직무 관련 자격 (우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간호조무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 능력(1급/2급), 고객 관리 지도사

(8)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

[관련 평가기준:2.1 인력의 전문성: 종사자 채용·유지]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산후조리원용)

문서번호 : 제 호

시행일자 : 20 . . .

발 신 : () 산후조리원

수 신 : () 보건소

제 목 : 신규 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

1. 모자보건법 제15조의2에 따라 아래의 신규 채용 직원의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합니다.

○ 조회 요청 사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수형사실

2. 인적사항 등

연번	이름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등록기준지 (구. 본적지)	직책/자격

()산후조리원장 (인)

(9) 연간교육계획서

[관련 평가기준: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교육일시	교육 과정명 및 내용	강사	교육방법	교육대상	교육인원	교육예산	비고(교육기간, 교육시간 등)

- 1) 교육일시: 수시, 연내, 혹은 시행 월을 작성할 수 있음(ex: 5월)
- 2) 교육과정: 신입직원 교육, 산후조리교육, 소방안전교육 및 훈련, 감염관리교육, 기타 직무 교육
 - *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필수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소방안전교육,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생 교육, 실내공기질관리법
 - * 기타 직무 교육: 산모신생아 안전관리, 개인정보보호교육, 서비스질 개선교육 등
- 3) 교육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훈련

(10) 교육일지

[관련 평가기준: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교육일시		
교육기관 또는 강사		
교육대상		
교육제목		
교육 내용		
참석자 확인서명	이름	서명

(11) 신규 직원 업무 오리엔테이션 내용

[관련 평가기준: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목 차

- | | |
|----------------|----------------------|
| I. 일반현황 | III. 교육 및 훈련 |
| 1. 조직도 | 1. 연간 교육계획 |
| 2. 운영 목표 | 2. 교육 대상자별 교육 |
| 3. 시설 현황 및 배치도 | 3. 교육의 종류 |
| 4. 업무 정의 및 지침 | |
| 1) 업무 범위 | IV. 안전관리 |
| 2) 세부 업무 | 1. 신생아·산모 안전관리 |
| 3) 업무 대상 | 2. 물품, 환경과 관련된 안전관리 |
| 4) 인력 | 3. 업무상 감염 노출사고 처리절차 |
| 5) 근무일정표 작성 원칙 | 4. 전기 · 소방 안전관리 |
| 6) 야간근무 매뉴얼 | 6. 직원건강 유지 및 안전관리 활동 |
| 7) 업무 지침 | |
| 8) 보고체계 | V. 감염관리 |
| II. 인사규정 | |
| 1. 직원인사규정 | 1. 법정감염병 산모 · 신생아관리 |
| 1) 채용 | 2. 격리: 격리실 운영, 격리 방법 |
| 2) 복무 | 3. 면회객 관리 |
| 3) 안전과 보건 | |
| 2. 복무규정 | VII. 환경관리 |
| 1)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 1. 폐기물 관리 |
| 2) 근무수칙 | 2. 시설물 관리 |
| 3. 복장지침 | 3. 세탁물관리 |
| | 4. 청소관리 |

(12)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관련 평가기준: 2.2 인력 전문성: 종사자 교육·계발]

산후조리원 자체 교육 보고서	
1. 산후조리원 명칭:	
2. 교육일시: 20	
3. 교육장소:	
4. 교육인원: ○○○ 외 ○명	
5. 교육내용	
작성방법	
현장사진 및 교육참석자 서명을 증빙자료로 첨부합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신설 2020. 1. 16.>

(13) 근무교대 일지_1

[관련 평가기준: 2.3 인력 전문성: 종사자간 의사소통]

근무교대일지		____년 ____월 ____일
근무시간	인계 내용	서명
Day 재실인원 산모: 신생아:	산모	인계자: (인)
	신생아	인수자: (인)
Evening 재실인원 산모: 신생아:	산모	인계자: (인)
	신생아	인수자: (인)
Night 재실인원 산모: 신생아:	산모	인계자: (인)
	신생아	인수자: (인)

- 1) 근무시간: Day, evening, Night는 시간 표기
- 2) 근무 교대 시 특이 사항 없을 시 '이상 없음'으로 표기 가능

(14) 근무교대 일지_2

[관련 평가기준: 2.3 인력 전문성: 종사자간 의사소통]

근무교대일지		____년 ____월 ____일
근무시간	인계 내용	서명
Day 재실인원 산모: 신생아:	산모	인계자: (인)
	신생아	인수자: (인)
Evening 재실인원 산모: 신생아:	산모	인계자: (인)
	신생아	인수자: (인)
Night 재실인원 산모: 신생아:	산모	인계자: (인)
	신생아	인수자: (인)

(15) 시설 및 환경 안전 자체 점검표

[관련 평가기준: 4.1 시설 안전성: 설비관리]

점검항목	중점점검사항	이상 유무 확인	
		충족여부	조치결과
전기	1.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히터, 난로) 사용 유무 및 사용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2. 전기시설 사용 적정여부(문어발식 사용금지)		
	3. 전선의 피복상태		
	4. 플러그, 콘센트, 스위치 등 손상여부		
가스 시설	1. 가스시설 사용 적정 여부		
	2. 가스사용 구역 가스 누설 유무		
	3. 가스누설 경보 자동 차단장치 상태		
급수	1. 정수기 오염상태 확인		
	2. 정수기 기록 유지관리 확인		
실내 공기	1. 실내공기질 측정 및 법적 관리기준 준수		
	2. 에어컨 오염상태 확인		
	3. 환기시설 오염상태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공기청정기가 있을 경우는 점검사항에 추가함.

※ 에어컨과 공기청정기의 오염 상태 점검 및 조치는 제조회사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16) (소방)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2])

[관련 평가기준: 4.2 시설 안전성: 소방안전관리]

1. 점검대상

대상명		전화번호	
소재지		주용도	
건물구조		대표자	소방안전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기의 외관점검 - 구획된 실마다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 약제 응고상태 및 압력계이지 지시침 확인 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작동기능점검 - 시험밸브 개방 시 펌프기동, 음향경보 확인 - 헤드의 누수·변형·손상·장애 등 확인 ③ 경보설비 작동기능점검 - 비상밸설비의 누름스위치, 표시등, 수신기 확인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확인 - 가스누설경보기 정상작동여부 확인 ④ 피난설비 작동기능점검 및 외관점검 - 유도등·유도표지 등 부착상태 및 점등상태 확인 - 구획된 실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치 여부 - 화재신호 시 피난유도선 점등상태 확인 - 피난기구(완강기, 피난사다리 등) 설치상태 확인 ⑤ 비상구 관리상태 확인 ⑥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관리상태 확인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상 물건 적치 등 관리상태 ⑦ 창문(고시원) 관리상태 확인 ⑧ 영상음향차단장치 작동기능점검 - 경보설비와 연동 및 수동작동 여부 점검 (화재신호 시 영상음향차단 되는지 확인) ⑨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확인 ⑩ 피난안내도 설치 위치 확인 ⑪ 피난안내영상을 상영 여부 확인 ⑫ 실내장식물·내부구획 재료 교체 여부 확인 - 커튼, 카페트 등 방염선처리제품 사용 여부 - 합판·목재 방염성능확인 여부 - 내부구획재료 불연재료 사용 여부 ⑬ 방염 소파·의자 사용 여부 확인 ⑭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 분기별 작성 및 1년간 보관여부 ⑮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및 계약기간 확인		

점검일자 :

점검자 :

(서명 또는 인)

(17) 낙상예방 점검표

[관련 평가기준: 4.3 시설 안전성: 낙상예방관리]

No.	점검사항	점검결과		비고
		날짜	장소	
1	실내바닥 물기가 없고 미끄럼지 않은가?	산모실 신생아실 수유실		
2	잘 맞는 신발을 착용했거나 바닥이 미끄럼지 않은 신발을 착용했는가?	직원 산모		
3	낙상예방 안내문은 부착되었는가?	산모실 신생아실 수유실		
4	어린 조명등으로 조절 힘든가?	산모실 점검자 사인		

(18)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관련 평가기준 5.1 운영관리: 입·퇴실관리]

퇴실 교육 체크리스트									
이름 : _____ 성별/나이 : _____ 생년월일 : _____ 교육일시 : _____		날짜	교육방법			교육자 서명	퇴실시 아기상태	이상유무	비고
			설명	시범	기타				
아기 돌보기	<수유> 수유준비 수유시행 트림시키기 수유후자세					머리 (함몰, 부종) 얼굴(눈,코,입,목)			
	아기 목욕					가슴			
아기의 이상 증상 진료 필요	제대 관리				팔, 손				
	기저귀교환				다리, 발				
체온 관리				배꼽상태					
모유수유 (관리, 저장, 수유)				기저귀발진					
신생아 안전 점검	황달				피부상태				
	청색증 수유시·증상악화				황달				
열				기타					
설사				기타					
구토				기타					
기타	아기훈자 두지 않기 아기자세- 옆드리지 않기 집안 환경- 적절온도, 습도제공 흡연자유무 간접흡연방지				부모 서명	부			

(19) 입실 시 고객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관련 평가기준 5.1 운영관리: 입·퇴실관리]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법규에 의거하여 () 산후조리원에서는 고객님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혹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공된 개인정보는 () 산후조리원의 아래 항목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

개인정보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목적	<p>[개인정보 수집 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선택항목: 생년월일, 이메일주소</p> <p>[개인정보 이용 목적] () 산후조리원의 새로운 서비스 및 행사 정보 동의 안내 ()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개선 향상 활동을 위해 정보 수집</p>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고객명 (인)

(20) 의료기관 이송보고서

[관련 평가기준: 5.2 운영관리: 의료기관 연계·이송]

의료기관 이송 보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보고시설 이송현황	산후조리원명	전화번호	
	주소지		
	이송일시 예) 2020년 1월 16일 14:30		
	이송 대상자 예) 임산부 1명, 영유아 3명		
	사고 유형	[] 감염병 ([] 호흡기, [] 위장 관계, [] 접촉형, [] 그 밖의 질환) [] 질병 [] 안전사고	
	증상 예) 설사, 고열, 기침		
	이송의료기관 예) 기관명		입원/외래
진단명 예) 로타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진단일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산후조리원장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귀하			
유의사항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작성방법			
<p>[증상] 설사, 고열, 기침, 청색증, 호흡 곤란 및 화재로 인한 연기흡입 등의 증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p> <p>[진단명 및 진단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송 보고 전 확인된 경우에는 진단명을 적습니다. - 이송 보고 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남기되, 이송 보고 후 임산부나 보호자로부터 진단명 및 진단일자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유선으로 보고합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신설 2020. 1. 16.>

(21)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보고서

[관련 평가기준: 5.2 운영관리: 의료기관 연계·이송]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 보고서									
보고 시설	산후조리원 명칭			전화번호					
	주소								
이송 현황	이송 일시 예) 2020년 1월 16일 14:30								
	이송 대상자 예) 임산부 1명, 영유아 3명								
	진단명 예) 로타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 의심 [] 확진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감염 또는 질병의 종류 를 통보받은 일시 예) 2020년 1월 16일 14:30					
조치 결과	임산부 및 보호자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실, 격리기간, 격리방법 및 발생감시 방법 등을 알린 일시 예) 2020년 1월 16일 14:30								
	소독								
	일시		방법	약품명	장소				
	격리(완전 모자동설 권장)								
	전체 영유아 (A+B+C+D)	모자동설(A)			퇴원(B)	기타(C)	미실시(D)		
		소계	완전	부분					
	발생감시								
	조사대상자(A+B)			증상이 없는 사람(A)			증상이 있는 사람(B)		
소계	임산부	영유아	종사자	소계	임산부	영유아	종사자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산후조리원장							(서명 또는 인)		
○○○ 보건소장 귀하									
유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이송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로부터 그 감염 또는 질 병의 종류를 통보받아 확인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한 소독 및 격리 등의 결과를 적습니다.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 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제출합니다. 영유아를 이송한 경우 영유아실 전체를, 임산부를 이송한 경우 임산부실 전체를 소독합니다. 									
<p>■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신설 2020. 1. 16.></p>									

(22)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관련 평가기준: 5.4 운영관리: 방문객관리]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방문객 위생관리 결과					
날짜 월/일	시간	방문객 이름	임산부 이름	관계	방문객 연락처

작성 시 참고사항

[작성인] 임산부 또는 영유아와 접촉할 사람이 작성합니다.

[날짜, 시간, 방문객 이름, 임산부 이름, 관계, 방문객 연락처]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등을 위해 작성합니다.

[안내사항 및 방문객 서명] 호흡기 질환 등의 유무와 방문객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O' 또는 'x'로 표시하고, 방문객이 안내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인지 여부를 작성하여 신후조리원 내 감염병을 발생하게 했을 경우 민사상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 16.>, 감염 질병 예방 조치

(23) 산후조리원 만족도 조사

[관련 평가기준: 6.1 질 관리: 질 관리 및 만족도 평가]

산후조리원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각 항목 만족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항 목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거의 만족	매우 만족
신생아실	1. 수유 및 목욕을 포함한 신생아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2. 신생아실 직원의 전문성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3. 산후조리원의 신생아 건강 및 감염예방 활동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산모실 서비스	4. 산모실 환경 및 청결도는 만족하셨습니까?					
	5. 산모 건강관리 서비스(유방관리, 모유수유)는 만족하셨습니까?					
식사	6. 식사(배식 포함)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7. 식단 구성에 대해 만족하셨습니까?					
기타	8. 전반적인 산후조리원 직원의 친절도에 만족하셨습니까?					
	9.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한 신생아 돌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10. 산후조리원 비용 대비 전반적인 서비스 수준은 몇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최고 10점)?					

(24) 신생아실 소독 점검표

[관련 평가기준: 8.4 감염예방: 물품 소독·관리]

구분	물품	월 일(일)		월 일(월)		월 일(화)		월 일(수)		월 일(목)		월 일(금)		월 일(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근무 마다	포셉 및 의료기기														
	젖병, 모유 워머기														
	전화기, 실내화														
	쓰레기통, 소품정리통														
매일 소독	신생아 침대, 처치대	/	/	/	/	/	/	/	/	/	/	/	/	/	/
	자불(열탕) 소독기, 모유 유죽기	/	/	/	/	/	/	/	/	/	/	/	/	/	/
	자외선 소독기	/	/	/	/	/	/	/	/	/	/	/	/	/	/
	신생아실, 수유실	/	/	/	/	/	/	/	/	/	/	/	/	/	/
주 2회	냉장고														
월 1회	물품 수납장, 환풍기														
검사자															

(25)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관련 평가기준: 8.5 감염예방: 환경관리]

소독 등의 환경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영유아실 관리								
2	영유아 요람 관리								
3	영유아 용품 관리								
4	영유아 의류 및 침구류 관리								
5	수유물품 관리								
6	공용 좌욕기 본체 관리								
7	세탁물 수집 장소 및 용기 관리								
8	주방용품 관리								
9	냉난방 및 환기 시설 관리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 16.›, 감염·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26)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관련 평가기준: 8.7 감염예방: 종사자 관리]

종사자 위생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손 위생 관리								
2	영유아실 전용 근무복 착용								
3	취사자 위생 관리								
4	질병 확인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 ‘×’ 또는 ‘측정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 16.›, 감염·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27) 입실 시 신생아 건강기록부(예시)

[관련 평가기준: 9.1 감염관리]

입실시 신생아 건강기록부(예시)						
이름	(임산부(산모)명) 아기		입실일	년	월	일
작성자						
1. 산모 면담						
※ 산모와의 면담을 통해 신생아의 출생 후 지금까지의 건강상태에 대해 간략히 조사합니다.						
1) 아기 출생정보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출생일	년	월	일
재태기간(주+일)			출생시 체중 (g)			
분만형태	<input type="checkbox"/> 자연분만 <input type="checkbox"/> 제왕절개					
2) 아기의 지난 건강정보						
○ 열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설사가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다른 건강문제가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수유 방법은 어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완전모유		<input type="checkbox"/> 혼합수유		<input type="checkbox"/> 완전분유	
2. 아기 관찰						
시간	입실 당시 (:)	입실 후 1시간째 (:)	입실 후 2시간째 (:)	입실 후 4시간째 (:)	입실 후 8시간째 (:)	입실 후 ()시간째 (:)
체중(g)						
체온(°C)						
대변/설사(회)						
구토(회)*트림제외						
호흡기 증상						
결막염 증상						
피부, 배꼽감염증상						
그 외 특이사항*						
작성자 서명						

※ 산모실 혹은 신생아실의 별도의 공간에 아기를 두고 입실당일 관찰합니다.

(28) 영유아(신생아) 건강기록부

[관련 평가기준: 9.1 감염관리]

영유아 건강기록부								
임산부 이름		영유아 이름		성별		임산부실 번호		
분만일		출생 시 체중		분만장소		분만형태		[]자연분만 []체왕절개
20 년 월 일(입원 일 째) 출생 ()일 째, 체중: kg				20 년 월 일(입원 일 째) 출생 ()일 째, 체중: kg				
시간		먹는 양		배설		기타		
시	분	직모유	병모유	분유	소변	대변	체온	구토
7								
8								
9								
10								
11								
12								
pm1								
2								
3								
4								
5								
6								
7								
8								
9								
10								
11								
12								
am1								
2								
3								
4								
5								
6								
합 계								
질환		D(낮 근무)	E(저녁 근무)	N(야간 근무)				
호흡기 증상								
결막염 증상								
배꼽·피부 증상								
황달								
그 밖의 증상								
담당자								
확인자								
작성방법								
<p>[먹는 양] '수유량(cc) / 수유시간'을 적습니다. [배설] 기저귀를 긴 시간대를 기록합니다. 설사나 물은 변이 있을 경우 추가로 적습니다. [호흡기 증상] 기침, 콧물 및 심한 코 막힘 등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결막염 증상] 결막 충혈, 눈꺼풀 부종, 화농성 눈곱 등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배꼽, 피부 증상] 발적, 발진, 부종, 분비물 등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그 밖의 증상] 힘없이 치지거나, 수유량이나 빠는 힘이 줄어들거나, 심하게 보채거나, 그 밖의 증상이 있을 경우 적습니다. ※ 영유아 건강기록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강기록부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p>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 16.>

(29) 임산부(산모)·영유아(신생아) 건강관리 결과

[관련 평가기준: 9.1 감염관리]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결과

연번	점검사항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월/일
	담당자								
	확인자								
1	입원 관리								
2	영유아 관리								
3	영유아 수유관리	냉장 보관 모유							
		분유 유통기한							
		수유 방법							
4	손 위생 관리								
5	감염·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사항에 대한 격리								
작성방법									

[담당자] 매일 근무순서를 정하여 점검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한 후 '○', '✗' 또는 '측정 수치'로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기록합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 16.>, 감염·질병 예방 조치(제16조제2항 관련)

(30) 임산부(산모) 건강기록부

[관련 평가기준: 10.1 산모 건강평가]

임산부 건강기록부

이름 (영유아)		임산부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분만일	.	산후조리원 입원일	.
분만형태			
월	일		
출혈			
체온			
혈압			
유방통증			
부종			
담당자			
확인자			
특이사항	재원 기간 중 이상 증상		
	기왕력(既往歴)		
	주의관찰 필요사항		
	입원 시 정서상태		
	퇴원 시 정서상태		

임산부 확인사항

「모자보건법」 제15조의4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임산부 또는 보호자는 감염 또는 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그 진단결과를 산후조리원에 알려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았습니다.

임산부 또는 보호자 이름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이름] 임산부의 이름을 적고, 괄호 안에 영유아의 이름을 적습니다.

[출혈] 동전 크기일 경우 '+', 손바닥 크기일 경우 '++', 속옷을 흠뻑 적실 정도일 경우 '+++'로 기록합니다.

[담당자] 출혈, 체온, 혈압, 유방통증 및 부종 등에 대해 임산부에게 질문하고 관찰하여 확인한 사람이 기록합니다.

[확인자]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책임자가 작성합니다.

[특이사항] 재원 기간 중 이상 증상, 임산부의 기왕력, 분만 전후 주의관찰이 필요한 사항(예: 다태아 여부, 산후출혈, 임신 중독증, 고혈압 및 당뇨 등), 입원·퇴원 시 임산부의 정서상태 등을 기록합니다.

* 임산부 건강기록부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건강 기록부에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1. 16.>

(31) 산후우울증 설문지

[관련 평가기준: 10.1 산모 건강평가]

**한국어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검사
(Korean version of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 최근 출산을 하셨다면, 출산 후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느끼시는 오늘이 아닌, 최근 일주일 간의 감정과 가장 가까운 항목에 표시하십시오.

질 문	총 점 ()			
	①	②	③	④
지난 7일 동안에:				
1. 나는 사물의 재미있는 면을 보고 웃을 수 있었다.	예전과 똑같았다. <input type="checkbox"/>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2. 나는 어떤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다.	예전과 똑같았다. <input type="checkbox"/>	예전보다 조금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줄었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3. 일이 잘못될 때면 공연히 자신을 탓하였다.	대부분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4. 나는 특별한 이유없이 불안하거나 걱정스러웠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거의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5. 특별한 이유없이 무섭거나 안절부절 못하였다.	꽤 자주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거의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6. 요즘 들어 많은 일들이 힘겹게 느껴졌다.	대부분 그러하였고, 일을 전혀 처리할 수 없었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러하였고, 평소처럼 일을 처리하기가 힘들었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았고, 대개는 일을 잘 처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그렇지 않았고,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잘 처리하였다. <input type="checkbox"/>
7. 너무 불행하다고 느껴서 잠을 잘 잘 수가 없었다.	대부분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진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8. 슬프거나 비참하다고 느꼈다.	대부분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9. 불행하다고 느껴서 울었다.	대부분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자주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10. 자해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다.	자주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가끔 그랬다. <input type="checkbox"/>	거의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전혀 그렇지 않았다. <input type="checkbox"/>

한국어판 에딘버러 산후우울 검사 (K-EPDS) 채점가이드

- 총 10문항으로 각 문항별 0~3점(①:0점, ②:1점, ③:2점, ④:3점)으로 구성
 - 점수 범위는 0~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상이 심함을 의미
- 1, 2, 4 문항 제외한 문항의 경우 역채점
 - 역채점 방법 : 3, 5, 6, 7, 8, 9, 10번 문항은 1번~4번 보기 순서의 점수를 3, 2, 1, 0점으로 역순 적용
- 위험군 선별 기준점 : 9/10점
 - 총점 10점 이상인 경우 우울위험군으로 분류
 - 우울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는 본인 동의 하에 정신보건센터 의뢰 또는 정신건강 의학과 상담 안내

* 예시 ‘아이사랑’사이트 산후우울검사 결과 메시지

- 총점 9점 이하
“산후우울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기와 엄마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 총점 10점 이상
“산후우울이 염려됩니다. 가까운 정신보건센터 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32) 모아애착 증진 서식

[관련 평가기준: 11.1 모아애착: 모자동실, 모유수유]

모아애착 증진 서식																		
이름(산모)			생년월일															
분만일			산후조리원 입실일															
향후 모유수유계획			분만형태	자연분만 / 제왕절개 / 자가분만														
입실 시 모유수유 상태	<input type="checkbox"/> 완전 모유수유 <input type="checkbox"/> 주로 모유수유 <input type="checkbox"/> 혼합수유 <input type="checkbox"/> 주로 분유수유 <input type="checkbox"/> 완전 분유수유																	
재원일(월/일)	입실																	퇴실

모자동실 현황

모자 동실 이용 시간	Day (총시간)																	
	Evening (총시간)																	
	Night (총시간)																	

모유수유 현황 및 촉진 활동

모유수유횟수 (직접/유축)																		
분유수유횟수																		
모유수유의 주된 어려움 (기술)																		
어려움해결방안 (촉진활동번호)*																		

* 촉진활동: 1) 개별교육, 2) 집단교육, 3) 부부교육, 4) 개별상담, 5) 부부상담, 6) 신생아 돌보기 시범, 7) 직접간호 제공, 8) 기타
(_____)

* 모유수유 촉진활동의 적극성에 기산점을 준다: 5점

(33) 부모 교육 체크리스트

[관련 평가기준: 12.1 부모교육]

교육내용		교육방법		
		설명	시범	기타
산모 건강 관리	산모 위험 상황의 증상과 대처방안 *위험상황: 감염, 출혈, 우울			
	산욕기 감염성 질환과 예방 관리			
	회음 패드 교환 방법과 좌욕 방법			
	유선염 증상과 유방마사지 방법			
	영양 섭취			
신생아 돌봄	신생아 응급 상황 대처 방법	구토		
		설사		
		발열		
		황달		
		무호흡		
	신생아 올바르게 안는 방법			
	모유수유 중요성과 방법			
	모유수유의 어려움과 해결 방법			
	분유수유 하는 방법, 주의사항			
	신생아 수유 자세, 트림 방법			
	신생아 목욕 방법			
	신생아 기저귀 교환 방법			
	신생아 배꼽 관리 방법			
	신생아 상호촉진방법			
	영아돌연사 예방 방법			
부	산후 돌봄 및 신생아 돌봄 방법			

날짜	교육자 서명	부모 서명	

산후조리원 평가가이드라인 및 교육자료 개발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